

2008년

제 1회 한국 제노사이드 연구회 국제학술대회

극복되지 않은 전쟁

동아시아의 경험에  
대한 성찰과 전망

- 일시 : 2008년 9월 27일(토) 10:00-17:00
- 장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극복되지 않은 전쟁,

동아시아의 경험에 대한

성찰과 전망

# 국제학술회의 프로그램

- ◎ 행사명 : 한국 제노사이드연구회 제 1회 국제학술회의
- ◎ 주 제 : 극복되지 않은 전쟁 - 동아시아의 경험에 대한 성찰과 전망
- ◎ 일 시 : 2008년 9월 27일(토) 10:00 - 17:00
- ◎ 장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7동 3층 교수회의실
- ◎ 후 원 : 동북아 역사재단

## ■ 일정

09:30-09:50 등록

09:50-10:00 개회사 : 홍순권(동아대)

### 제 1부 : 극복되지 않은 과거, 전쟁과 수용소

사회 : 정근식(서울대)

발표 :

10:00-10:25 전갑생(제노사이드연구회), '한국전쟁기 오무라수용소(大村收容所)의 재일조선인 강제추방에 관한 연구'

10:25-10:50 김학재(제노사이드연구회), '한국전쟁기 봉암도 수용소 사건 이후의 유엔군 포로정책'

10:50-11:30 도리야마 아쓰시(류큐대) '오키나와(沖縄)전에서의 민간인수용소'

11:35-12:40 토론

서 승(리츠메이칸대), 최정기(전남대), 김귀옥(한성대)

### 제 2부 : 과거사 극복의 현재와 전망

사회 : 한정숙(서울대 서양사학과)

발표 :

14:00-14:25 정호기(성공회대) - '한국 과거청산의 사회적 효과와 재인식'

14:25-15:05 마루카와 데쓰시(메이지대) : '개조'와 '인죄':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전범관리소'의 기원과 전개

15:05-15:45 Jörn Rüsen(뤼젠)(Kulturwissenschaftliches Institut) : 어떻게 과거사를 극복할 것인가? - 독일의 경험에 대한 성찰과 전망

15:50-17:00 토론

김동춘(성공회대), 김일수(친일진상규명위원회), 전진성(부산교대)

## 韓国ジェノサイド研究会 第一回国際学術会議

### 克服されていない戦争：東アジアの経験への省察と展望

日時：西暦2008年9月27日（土）10：00～17：00

場所：ソウル大 学校人文大 7棟 3階 教授會議室

日程

09：30～09：50 受付

09：50～10：00 開會辭：（東亞大）

#### 第一部：克服されていない過去、戦争と収容所

司會：정근식（ソウル大）

報告

10：00～10：25 진갑생（ジェノサイド研究会）：「朝鮮戦争期の在日韓国人の送還と處理についての研究：大村収容所を中心に」

10：25～10：50 김학재（ジェノサイド研究会）：「朝鮮戦争期の蜂巖島収容所事件を通して見た國連軍の捕虜政」

10：50～11：30 鳥山淳（琉球大）：「沖縄戦における民間人収容所」

11：35～12：40 コメントおよび討論

コメンテーター：서 승(立命館大) 최정기(全南大) 김귀옥(漢城大)

#### 第二部：過去克服の現在と展望

司會：한정숙（ソウル大）

報告

14：00～14：25 정호기（聖公會大）：「韓國過去清算の記憶の政治と展望」

14：25～15：05 丸川哲史（明治大學）：「改造」と「認罪」：中華人民共和國における「戦犯管理所」の起源と展開」

15：05～15：45 イェルン・リュゼン（Jörn Rüsen, Kulturwissenschaftliches Institut）：「いかに過去を克服すべきか：ドイツの経験への省察と展望」

15：50～17：00 コメントおよび討論

コメンテーター：김동춘（聖公會大） 김일수（親日反民族行爲真相究明委員會） 진진성（釜山教育大）

<1부>

극복되지 않은 과거,

전쟁과 수용소

# 한국전쟁기 오무라수용소(大村收容所)의 재일조선인 강제추방에 관한 연구

전갑생(제노사이드연구회)

1. 머리말
2. 해방직후 조선인 밀항자 수용소 정책과 강제추방
  - 1) 일본의 밀항자 수용소 설치에 따른 법령과 정책
  - 2) 재일조선인 강제추방과 한국정부의 대응
3. 한국전쟁기 오무라수용소(大村收容所) 정책과 강제추방 반대투쟁
  - 1) 오무라수용소(大村收容所)의 설치와 정책
  - 2) 수용소의 생활과 강제추방
4. 맺음말

## 1. 머리말

한국전쟁 전후 재일조선인<sup>1)</sup>이 일본에 있는 가족·친척들을 만나기 위하여 밀항했다는 이유로 강제추방 되었다. 또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64여만 명의 재일조선인들도 외국인으로 취급받거나 ‘범죄자’로 몰렸다. ‘해방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재일조선인들은 조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일본정부에 의하여 탄압과 반인권적인 대우를 받아야 했다.

1945년 12월 선거법 개정에 의해 재일조선인의 피선거권·선거권이 정지되었고, 1947년 5월 2일 발표된 「외국인 등록령」의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아래 재일조선인은 관리대상자에서 억압과 탄압의 대상자로 바뀌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이 외국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범죄자로 취급하였으며, 강제퇴거 또는 추방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였다.<sup>2)</sup> 또한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

1) 여기서 재일조선인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과 그 자손을 총괄하는 개념이며, 1945년 해방직후 가족 또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재입국하거나 밀항한 한국인을 포함한다. 또한 ‘조선적’, ‘한국적’, ‘일본국적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일본으로 밀항했거나 강제추방당한 한국인도 조선인으로 지칭하였다(서경식, 『난민과 국민사이 - 재일조선인 서경식의 사유와 성찰』, 돌베개, 2006; 「재외 한국인의 고민과 선택 '재일조선인'의 위기와 기로에 놓인 민족관」, 『역사비평』 1996년 여름호(통권 35호), 1996. 5).

화조약의 발효에 따라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의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입안과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연합국총사령부(GHQ)<sup>3)</sup>는 일본과 협력 아래 재일조선인들을 외국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탄압 정책을 1946년 이후부터 1953년 한국전쟁기 동안 계속 추진하였다.

GHQ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정책을 1946년 이후 귀환을 포장한 강제추방으로 획일화시켰다.<sup>4)</sup> 초기 강제추방 정책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 외국인 등록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는 1946년 11월 30일 오사카부령 제109호 「조선인 등록에 관한 건」을 발표하고, 재일조선인들을 대상으로 「거주지증명제도(居住地證明制度)」를 시행하였다. 이 부령은 오사카부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 거주증명을 교부하고 거주증명이 없으면 불법 밀항자로 간주하여 강제추방을 하는 정책이었다. 또한 오사카부령을 원형으로 삼아 일본은 1947년 5월 2일 「외국인등록령(外國人登録令)」(칙령 207호)을 공포하게 되었다.<sup>5)</sup> 그리고 외국인등록령을 거부한 재일조선인들은 ‘불법입국자수용소’를 거쳐 강제추방 되기에 이른 다.<sup>6)</sup>

또한 1948년 4.3항쟁과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남한에서 사회주의자 또는 보도연맹원이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이들도 GHQ와 일본정부의 협의 하에 전부 오무라수용소(大村收容所)를 거쳐 강제추방 되었다.<sup>7)</sup>

오무라수용소는 무국적에 따른 난민수용소라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한국적을 가진 조선인들은 한국으로, ‘조선적’을 가진 조선인들은 북한으로, 무국적자는 양

2) 서경식, 1996. 5, 앞의 논문, 68~69쪽.

3) GHQ는 1945년 8월 요코하마(横浜)에 설치하였다가, 9월 15일 본부를 도쿄(東京) 히비야(日比谷)로 옮겼다. 이 조직은 인사·정보·작전·후방 4개부로 이루어진 참모부(소위 G 1·2·3·4 각부)와 민정국·천연자원국·경제과학국·민간정보국 등으로 이루어진 특별부문을 근간으로 하며 극동국제 군사재판소도 그 관할 하에 있었다. 이 기관은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폐지되었다.

4) 이 글은 재일조선인들의 귀환과 관련된 기술은 논외로 한다.

5) 외국인등록개정법은 유효기간 3년, 전국 일련 번호제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외국인등록령은 전체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GHQ와 일본정부에 의해 실시된 반인권적인 정책이라고 하겠다. 특히 재일조선들을 강제퇴거 또는 강제추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홍인숙, 2001. 3, 「제2차 세계대전 직후, GHQ의 재일조선인정책」, 『한일민족문제연구』 창간호, 한일민족연구회, 170~174쪽; 外務省特別資料課編, 1951, 『日本占領及び管理重要文書集』第6卷 外國人編 I, 102~119쪽).

6) 1949년 한 해만 불법입국한 조선인은 8,302명, 송환자 7,709명에 이르렀다(姜徹, 1987, 『在日朝鮮人の人權と日本の法律』, 雄山閣, 56쪽).

7) 일본 오무라수용소에서 한국전쟁 기간 중 한국으로 강제추방된 통계를 보면, 1950년 12월말 현재 밀항자 2,434명 중 송환 1,058명, 1952년 12월말 현재 밀항자 3,503명 중 송환 2,173명, 1952년 밀항자 2,628명 중 2,320명이다.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국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동안 수용소에서 생활하였다. 특히 한국은 무국적자에 대하여 다시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등 마찰을 일으켰으며, 일본도 비슷한 처지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오무라수용소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1950년대 이후 오무라수용소의 설치, 수용소 내의 생활, 수용소 내의 주요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sup>8)</sup> 요시도메(吉留路樹)는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오무라수용소의 역사, 주요 사건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강제추방을 거부하는 한국인들의 증언들을 담고 있다. 또한 오카다타시(岡正治)는 수용소에 수용된 피폭자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김흥곤(金興坤)은 『분노하는 해협』(和光大學綜合文化研究所)을 통하여 직접 경험한 오무라수용소를 수기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첫째, 해방 직후 GHQ와 일본정부에 의하여 설치된 밀항자 수용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에 대해 각종 법령과 정책을 동원하여 불법체류자 혹은 밀항자로 둔갑시켜 강제추방하였다. 이에 한국전쟁 직전까지 실시된 일본정부가 시행한 법령과 정책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일본 국회에서 정부와 의원들이 재일조선인의 강제추방을 놓고 어떻게 격론을 벌였는지도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둘째, 1946년 사세보(佐世保)에 설치된 ‘불법입국자수용소’에 수용된 조선인들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강제추방 되었는지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오무라수용소에 수용된 재일조선인에 대한 처리와 강제추방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해방직후 조선인 밀항자 수용소 정책과 강제추방

### 1) 일본의 밀항자 수용소 설치에 따른 법령과 정책

여기에서는 1946년 ‘사세보불법입국자수용소(佐世保不法入國者收容所)’의 설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방 직후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 밀항자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짚어보고자 한다.

일본은 조선인 밀항자에 대하여 이미 1919년 4월 19일 경무총감부령 제3호 「조선인의 여행취체에 관한 건」을 시행하면서 밀항자 또는 불법체류자들을 감시하거나 제한하였다. 또한 1925년 10월부터 일본 내무대신이 조선총독에게 3가지의 이유를 내세워 입국하지 못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sup>9)</sup>

8) 吉留路樹, 『오무라수용소(大村收容所)』, 二月社, 1977; 岡正治, 『오무라수용소(大村收容所)와 조선인피폭자(朝鮮人被爆者)』(1981)

이러한 일본의 밀항자 정책은 1945년 해방 직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고 1945년 8월 21일 연합군정이 실시되면서 모든 업무가 GHQ로 이관되었다. GHQ는 조선인에 대하여, 첫째 귀환정책, 둘째 외국인등록령에 위반한 조선인들을 일정한 장소에 수용했다가 본국으로 강제추방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였다.

우선 귀환정책은 1945년 9월 1일부터 강제연행된 노동자들을 먼저 귀국 조치하도록 하였다.<sup>10)</sup> 또 하나, GHQ는 해방 직후 귀환했다가 일본에 거주하는 친인척 또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재입국하는 조선인과 밀항자들을 처리하고자 조건 없는 강제추방을 실시하였다. 귀환항으로 지정된 사세보항은 귀환자와 강제추방되는 조선인들로 연일 혼잡하였다.

그럼 재일조선인들의 강제추방과 밀항자에 대한 정책을 보여주는 주요 법령과 일본 국내의 여론을 차례대로 살펴보자.<sup>11)</sup>

### (1) 외국인등록령과 강제추방을 위한 법령 제정비

한국전쟁 이후 일본은 밀항자와 외국인등록령을 위반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법령들을 제정비하기에 이른다. 앞서 언급한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수용소에 입감했다가 강제추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또한 가족을 상봉하기 위해 건너온 사람들마저 ‘불법입국자’로 낙인찍어 수용소에 감금할 수 있는 법령도 제정되기에 이른다.

1946년 2월 17일 GHQ는 「朝鮮人, 中國人, 류큐인 및 臺灣人の 등록에 관한 각서」에 따라 1946년 3월 18일부터 본국으로 귀국을 희망하는 자들을 등록시켜 귀환항을 통하여 귀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가사키현(長崎縣) 사세보(佐世保) 우라가시마(浦頭)를 비롯한 3개 지역에 귀환항을 지정하였다.<sup>12)</sup>

9) 일본은 다음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조선인들을 입국금지시켰다. 첫째, 취직이 확실하지 않은 자, 둘째, 준비금 100엔 미만의 자, 셋째, 국어(일본어) 사용불가자 등을 입국 금지하도록 하였다(樋口雄一, 2002, 『日本の朝鮮·韓國人』, 同成社, 41~44쪽).

10) 「移入華人及朝鮮人勞務者ノ取扱ニ関スル件」, 『戦後補償問題資料集』第7集, 戦後補償問題研究会 1992. 9, 48~50쪽. 해방 직후의 재일조선인 귀환정책은 홍인숙, 2001. 3, 앞의 논문을 참조하되, 여기서는 귀환정책보다 강제송환 부분만을 다루고자 한다.

11) 여기서 1945년 이후 귀환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부터 실시된 일본의 밀항자에 대한 방지정책과 강제추방에 대한 법적 내용만 정리하였다.

12) 귀환정책은 조선인들을 일본에서 쫓아내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겠다. GHQ는 1946년 2월 17일 「조선인·중국인·류큐인과 대만인의 등록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SCAPIN 746)」을 발표하여 송환을 위한 등록을 실시하였다. 같은 해 3월 16일 「引揚에 關한 覺書(SCAPIN 627)」에 의해 본격적으로 송환계획을 실시하였다. 이 귀환정책에 따라 재일조선인의 79%가 귀환을 희망한다고

이 각서에 따라 3월 18일까지 외국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귀국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등록한 자는 귀국의 권리를 상실”(제3항)하며, “등록의 통고를 받고 지정일 혹은 그 이전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귀국의 희망이 없는 자로 간주하고 귀국의 권리를 상실한다(제4항).”<sup>13)</sup>며 이를 재일조선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귀환한 일부 재일조선인들은 1946년 4월 1일~6월 3일까지 화물 등을 싣고 귀환하였다.<sup>14)</sup>

그러다가 1946년 3월 19일 38선 이북에 본적을 둔 재일조선인의 귀환을 정지하였고<sup>15)</sup>, 6월 12일 「일본의 불법입국의 방지」 각서를 발표하면서, 재입국하고자 하는 재일조선인들을 본격적으로 검거하여 수용소로 보내게 되었다.<sup>16)</sup>

일본은 남북한이 분단체제로 전환된 1949년 8월 10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정령」(정령 제299호)을 공포하였다.

또한 일본과 GHQ는 1950년 8월 29일 「출입국관리기관설치(出入國管理機關設置)에 관한 건」을 발표하고, 한국전쟁 중에 일본으로 밀입국하는 한국인들을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7)</sup>

(전략) (3) 출입국 관리청은 불법 입국의 혐의자들을 수용하여 그 심사를 실시하며, 강제송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송환 명령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중략)

(5) 불법 입국 및 외국인 등록령 위반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체포는 종래대

등록했으나, 조선으로 귀국한 조선인이 82,900명에 그쳤다(홍인숙, 2001. 3, 앞의 논문, 156~165쪽 참조). 실제 재일조선인은 64만 7천 6명 중 귀국 희망자 51만 4천 6명으로, 약 80%가 귀국을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GHQ는 1946년 3월에 38도선 이북의 본적을 둔 재일조선인의 귀환을 정지하고, 남한에 본적을 둔 재일조선인만 “인양을 희망하는 재일조선인을 일본정부의 지시에 따라 출발”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4월 2일 「일본 내에 있는 비일본인의 입국 및 등록에 관한 각서」를 발표하여 일본 내무성을 중심으로 외국인등록과 재입국하는 조선인들을 강제추방 업무를 개시하였다.

13) 外務省, 1994, 「朝鮮人、中国人、琉球人および台湾人の登録」(SCAPIN746), 『GHQへの日本政府對應文書總集成』1권, 엠테이출판, 1102쪽.

14) 강철, 앞의 책, 57쪽.

15) 외무성, 1994, 「北部朝鮮居住の朝鮮人の日本からの送還の停止」(SCAPIN829), 앞의 책, 1330쪽.

16) 일본정부는 조선인의 일본 입국을 방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라고 말했지만, 재입국하는 재일조선인들을 강제 막는데 활용하였다(외무성, 1994, 「日本への不法入国の阻止」(SCAPIN1015), 앞의 책, 1980쪽). 또한 1946년 6월 12일 사세보귀환원호국(佐世保歸還援護局) 내에 ‘불법입국자수용소’를 개설하여 재일조선인들을 강제추방을 담당하는 업무를 위임하고 밀항자와 외국인등록령위반자 등을 수용하게 되었다. 수용인원은 5천명이었다(「日本への不法入国の阻止」(SCAPIN1391), 앞의 책, 2894).

17) 行政管理庁管理部, 1951, 『行政機構年報』第2卷, 29~30쪽.

로 경찰관 경찰 관리 또는 해상 보안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그 수용소까지의 호송은 출입국 관리청의 직원이 맡는다.

(중략) (7) 출입국 관리청에 内部 部局으로서 2부를 두어, 한편 필요한 지역에 출장소(4개소를 예정) 및 수용소(수용인원 1,600명)를 둔다.

(8) 출입국 관리청의 직원 중 필요가 있다면 무장을 인정한다.

출입국관리청 개청에 따라, 1950년 10월에 일본 정부는 「퇴거강제수속에 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밀항자들을 비롯한 외국인등록령을 위반한 자들을 수용소에 구속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sup>18)</sup>

### 政令 要旨

#### 目的

外國人登錄令 또는 北緯30度 以南의 南西諸島에 本籍을 둔 자에 대한 渡航制限에 관한 臨時措置令에 의한 行政處分을 적절히 실시한다(제1조). (중략)

#### 起訴收容

등록령 제16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임시조치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유죄라 결정한 경우는 형기만료, 집행유예 언도 등에 의해 석방되기에 이른 때에는, 검찰관은 該當入國審査官에 대하여 제2조의 행정처분을 결정하기까지 收容令書의 발부를 청구한다(제4조)

#### 收容令書

입국심사관이 제3조 및 제4조 기재한 상황 하에 있어서 收容令書의 발부를 필요로 한다고 결정한 경우는, 장관이 정한 규칙에 의해 정당한 이유의 증거에 기반하여 收容令書를 발부하고, 14일 이내에 해당인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제5조). (중략)

#### 退去強制令書의 執行

1. 입국경비관은 退去強制令書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고 해당인에게 퇴거강제의 이유를 고한 후 그 자를 入國者收容所에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경찰관 또는 警察吏員 혹은 海上保安官은 입국심사관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上司의 허가를 얻어 退去強制令書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3. 入國者收容所에 수용된 해당인은 가능한 속히 본국에 送還되지 않으면 안된다(제14조).

---

18) 『毎日(東京)新聞』, 1950. 12. 5.

이 정령은 외국인등록령 위반자 또는 밀항자에 대하여 강제 퇴거조치와 수용소에 수감하여 강제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법령들을 재정비하였으며, 대규모로 재입국하는 조선인들을 막기 위하여 경찰과 군함까지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 (2) 일본의회에서의 재일조선인 정책에 대한 논쟁

일본의 재일조선인 정책의 강경기류는 국회에서도 감지되었다. 일본 국회는 해방 직후 한국인의 ‘불법입국’에 대하여 전면전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재일조선인의 귀환 문제와 함께 긴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떠오른 외국인등록령과 밀항자 문제에 대하여 GHQ의 지령에 의하여 일본은 강제추방이라는 강경책만 내세웠다.

이러한 일본과 GHQ의 정책은 비인도적이며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재일조선인 단체, 일본공산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으나 계속 추진되었다.

그럼 귀족원과 중의원 등에서 전개된 재일조선인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먼저 일본 귀족원의 일부 의원들은 한국인의 밀항을 방지할 대책이 없는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정부를 압박하였다. 1946년 9월 11일 귀족원 식량긴급조치령특별위원회에서 이마키(今城定政, 자작)는 “최근 조선인들이 대거 밀입국하고 있다. 그 상황에 대하여 말해 주시오.”<sup>19)</sup>라고 정부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정부위원인 쿠스미(楠見義男) 농림차관은 “조선인의 밀입국은 조선 내부의 실정과 맞물려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밀입국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조선 내부의 교통사정이 복구된다면 바로 송환할 예정이며, 현재 약 8천명이 나가사키의 一區에 억류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조선인들을 바로 강제추방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귀족원의 강경기류는 중의원에서도 감지된다. 중의원에 출석한 일본 국무대신인 오무라(大村)는 “최근 들어서 밀입국자들이 격증하고 있는 경향이다. 7월 조사에 의하면, 나가사키(長崎)부터 츠루카(敦賀, 福井縣)까지 연안 각지에 밀입국자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달에만 8천명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일부 밀항자들은 진주군(군정청)에게 인도하여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는 “전국의 경찰력을 다 동원하여 밀입국자들을取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해안선의 경비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다. 진주군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밀입국자들을 근절하는데 심분 노력하겠다.”<sup>20)</sup>라며,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9) 『帝國議會會議錄』, 1946. 9. 11, 第90會 貴族院 食糧緊急措置令承諾を求むる(件)特別委員會(4回).

20) 『帝國議會會議錄』, 1946. 9. 12, 第90會 衆議院 臨時物資需給調査委員會(7回).

그러나 일본의회는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후쿠오카현에서 야마구치현까지의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여 밀항자들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1947년 3월 13일 중의원 이시자키(石崎千松, 후쿠오카 4구 출신, 무소속)는 “내 생각은 후쿠오카에서 야마구치현(山口縣)에 이르기까지 조선인의 밀입국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정부는 경비력을 증강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다나카(田中樞一, 警保局長, 大阪副知事)는 “경비력의 증강 문제는 진주군의 지령을 받아야 할 문제이며, 경찰관뿐만 아니라 보조원까지 동원하고 밀항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방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sup>21)</sup>는 기존의 입장만 내세웠다.

1950년 11월 1일 제8회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水島 委員長은 수용소 내의 반인권적인 대우에 대한 비판여론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리오수용소(針尾收容所)를 폐쇄할 수는 없다”며 미군정의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문제도 있고 하니 “하나의 큰 수용소를 설치하여 거기에 모으고 그리고 배를 구하여 돌려보내면 된다”며 기존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정책을 그대로 진행할 것을 역설하였다.<sup>22)</sup> 또한 GHQ와의 협조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결국 조선인 강제추방정책은 GHQ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수용소 내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중의원 내의 공산당 소속 의원 등이 재일조선인의 국적과 강제퇴거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미군정의 정책 등을 내세워 기존 정책을 유지하였다.

## 2) 재일조선인 강제추방과 한국정부의 대응

한국전쟁 이전부터 일본으로 재입국하는 조선인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앞서서도 지적한 대로 일본으로 밀항한 조선인들이 귀환했다가 가족과 친인척을 만나기 위하여 일본에 재입국하였다. 물론 밀항자 중 소수는 구직을 위해 일본으로 가는 자들도 있었다.

국내의 정부와 언론사 등은 ‘그렇게 일본이 그림든가’<sup>23)</sup>라고 하며 재입국하는 조선인들을 ‘매국자’ 혹은 ‘배신자’들로 몰아세웠다. 이러한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본다면 정부가 재일조선인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본으로 재입국하는 조선인들의 재입국 사유는 주로 자신의 재산반입의 제한, 이전의 사업에 대한 미정리, 가족관계, 해방된 조선내의 혼란과 물가폭등, 실

21) 『帝國議會會議錄』, 1947. 3. 13, 第92回 衆議院 豫算委員會(1回).

22) 『衆議院會議錄』, 1950. 11. 1, 第8回 衆議院 外務委員會(7號).

23) 『동아일보』, 1949. 1. 14.

업, 주거불안, 식량난 등이 심각한 것 등이었다.<sup>24)</sup>

밀항자들은 한국전쟁 전후로 부산, 목포, 여수, 거제 등지와, 북한의 해주, 나진, 청진 등지에서 출발하여 쓰시마(對馬島), 가고시마(鹿兒島) 등의 큐슈지방 해안선을 통하여 밀항하였다.

해방 직후 일본으로 밀항하는 조선인들은 정부에서 집계한 언론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46년 4~7월까지 일본 야마구치(山口)·야마네(山根)현 해안과 기타큐슈(北九州) 해안으로 밀항한 자들이 각각 4월 488명, 5월 1,357명, 6월 752명, 7월 7,378명이었다.<sup>25)</sup> 또한 같은 해, 8~9월 동안 1만5백명이 밀항하였다가, 쓰시마를 초계하던 미·영함선에 걸려 사세보수용소에 억류되었다가 끌려가 9월말에 전원 송환되었다.<sup>26)</sup> 1946년 10월 28일 일본정부는 일본에 밀항 입국을 기도하는 조선인에 대하여 미 제24보병사단과 영연방군의 감독아래 지난 6월부터 검거를 시작하였는데, 일본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6,628명, 영연방군 지구에서 체포된 자가 8,205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사세보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7천명 이상을 본국으로 강제추방되었다.<sup>27)</sup>

다음은 1946년 4월~1951년 사이 일본으로 밀항자는 <표1>과 <표2>를 통하여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다.<sup>28)</sup> 해방직후 조선인들이 귀환했다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재입국했던 1946~49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50년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재입국한 조선인들이 검거를 피해 도망한 자도 많았다고 하겠다.

<표1> 밀항자수

연도 검거장소	1946년 (4월~12월)	1947년	1948년	1949년	1950년	1951년
해상			1,358	792	329	729
상육지	17,733	5,239	6,160	6,324	1,572	2,410
국내		711	460	1,249	533	364
계	17,733	6,010	7,978	8,320	2,434	3,504
도주	3,683	1,467	2,046	2,710	1,170	1,143

<표2> 강제추방자수

24) 『京郷新聞』 1947. 5. 15.

25) 『朝鮮日報』 1946. 8. 20.

26) 『서울新聞』 1946. 9. 14.

27) 『서울新聞』 1946. 10. 30.

28) 森田芳男, 1955. 10, 「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況」, 『法務研究報告書』 第43集3號; 『現代日本-朝鮮關係史資料集』 3輯, 湖北社, 87쪽.

연도	佐世保	仙崎	博多	계
1946년	15,262	9,114	500	24,867
1947년	6,222			6,222
1948년	6,964			6,964
1949년	7,709			7,709
1950년	1,058			1,058

또한 1948~1949년 1월 30일 현재까지 밀항한 한국인 가운데 26,346명이 강제 추방 되었다. 특히 1948년 한 해만 일본밀항자가 6,400여명이었고<sup>29)</sup>, 1949년 1년간 밀항자가 8,302명이었는데 이 중 7,709명이 일본에서 본국으로 추방되었다.<sup>30)</sup> 한국전쟁 직전에 마지막으로 송환된 시기는 1950년 6월 20일이다. 밀항 한국인 300여명은 사세보(佐世保)에서 출발하는 해양환(海洋丸)으로 강제추방되었다.<sup>31)</sup>

한편 1949년 반민특위 설치 이후 일부 친일파들이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가 체포되거나 망명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1949년 2월 23일 오후 3시 반민특위 경남도 조사부 심륜(沈淪) 조사관과 부산 15區署 경찰관 등이, 동래군 機張面 月內 등지에서 일본으로 밀항할 남녀 20명 중 반민법 해당자 2명을 검거하였다. 이 사건이틀 전인 2월 21일에는 반민법 해당자를 포함한 약 40명이 이미 일본으로 밀항<sup>32)</sup>하기도 하였다.

1950년 6월 21일 부산항에 입항한 한일교환선 해왕환(海王丸)에는 일반 귀환자는 한 사람도 없고 밀항자만이 313명이 송환되어 왔다. 이들의 연령을 보면 23세 이상 30세까지가 128명, 30세 이상 40세까지가 102명, 40세 이상이 53명, 기타 2·30대의 청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日警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 살이를 하다가 압송되어 오는 형편에 있어 국제적인 체면손상과 헛된 걸음을 하는 이들 밀항자를 당국에서는 단속하고자 하나 종전 밀항자를 단속할 수 있는 법령 49호가 폐지된 까닭에 밀항자 양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앞으로 더욱 밀항자의 증가를 볼 것이 예상된다.”고 하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sup>33)</sup> 이에 정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전쟁 중인 1952년 9월 밀항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 제도를 마련한 GHQ는 일본의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큐슈지역 내의 전 해안선을 감시하여 한국인의 밀항을 방지하였다. 1949년 1월 22일 GHQ에

29) 『東亞日報』 1949. 1. 14.

30) 『市政月報』 제3호, 1949. 1. 31, 53~54쪽; 在日の眼(<http://www.h6.dion.ne.jp/~k-moon/>)의 運動年表 1949년을 참고.

31) 『東亞日報』, 1950. 6. 15.

32) 『民主衆報』, 1949. 2. 25.

33) 『産業新聞』, 1950. 6. 23.

서는 한국인 밀항자에게 3년 또는 1년의 징역형을 언도하였다.<sup>34)</sup> GHQ가 밀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49년 4월 2일 부산 다대포에서 밀항선 도용환(都龍丸)을 타고 일본으로 향하던 한국인 90여 명은 폭풍우를 만나 쓰시마 下縣 深谷村에 寄港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경찰 등이 출동하여 밀항자들에게 공포과 실탄을 발사하여 1명이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sup>35)</sup>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밀항자에 대한 대우와 대응 등이 한국과 달리 강경함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반면에 한국 내에서 밀항에 대한 법적 제도는 경범죄로 취급되었다. 1946년 2월 19일 발표된 「조선에 입국 또는 출국자 이동의 관리 및 기록 건」(법령 제49호)에 따라 밀항자들을 처벌하였다. 이 법은 입국 또는 출국자에 대한 수속 및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했을 때에는 ‘管轄裁判所의 有罪判決에 따라 處罰’하도록 되어있으며, 정확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sup>36)</sup>

또한 미군정청은 1948년 7월 30일 「남조선에 입국 또는 출국자 이동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건」으로 법령 제49호를 개정하였다.<sup>37)</sup> 이 법령은 정부수립 이후 폐지되어 더욱 밀항자가 급증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다.<sup>38)</sup> 한국전쟁기에 정부는 일본으로 밀항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한다<sup>39)</sup>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어떻게 처리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 또한 밀항자에 대하여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때만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밀항자에 說諭 정도를 할 따름이다.”<sup>40)</sup>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강제적 처벌 조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대거 밀항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자, 다급해진 정부는 엄격하고 강경한 처벌을 약속하면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에는 구체적인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처벌만 강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쟁 직후인 1954년 3월 9일 국회는 정부에 제출한 ‘경범죄처벌법’을 신설하여 ‘밀항’에 대한 규정을 넣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1)</sup>

34) 『東亞日報』 1949. 1. 23.

35) 『釜山日報』, 1949.4. 19.

36) 「軍政廳法令 第49號」, 1946. 2. 19.

37) 「軍政廳官報 法令 第214號」, 1948. 7. 30.

38) 『産業新聞』, 1950. 6. 23.

39) 『東亞日報』, 1951. 1. 11.

40) 『産業新聞』, 1950. 6. 23.

41) 邊宇昌, 1954, 『輕犯罪處罰法釋義』, 수도문화사, 152~153쪽.

42호 密航하였거나 또는 密航에 着手한 者

本號의 犯罪는 (1)密航을 하였거나 또는 (2) 着手하므로써 成立하는 것이다. 그런데 密航을 하였거나 着手한 者를 處罰하는 까닭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不鮮명한 行爲를 舉皆가 禁制品의 密輸入出을 꾀하는 것이거나 犯罪를 저질르고 海內外로 潛入 또는 逃走를 計劃하는 것이거나 謾報員으로 暗躍을 하는 것이거나 하는 等の 不穩한 動機를 內包한 者들인 것이며 (이하생략)

그리고 밀항자에 대하여 기존의 5백만원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법 기초를 마련하기에 이른다.<sup>42)</sup>

이러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이중적인 잣대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일본과 GHQ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정책을 옹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으로 재입국하는 사건을 보고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또한 재일조선인들의 지위와 국적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단순한 ‘밀항자’로 취급하였다.

또한 한국정부는 밀항자에 대한 처벌이나 규정 등을 완화한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일본과 GHQ는 밀항자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였지만, 한국 내에선 훈방 또는 일주일 이내의 구류형으로 가볍게 처리하였다.

### 3. 한국전쟁기 오무라수용소(大村收容所) 정책과 강제추방 반대투쟁

#### 1) 오무라수용소(大村收容所)의 설치와 정책

GHQ와 일본은 한국인의 밀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법령을 정비하고 수용소를 설치하여 강제추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전쟁기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 중 각종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이나 일본공산당과 관계있는 자들을 강제추방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GHQ와 일본정부가 재일조선인과 밀항자 등을 ‘불법입국자’로 규정한 법령에 따라 1946년 6월 이후 사세보수용소, 오사카수용소 등을 설치하는 과정, 하리오수용소에서 오무라수용소까지의 설치 과정, 수용소 생활실태, 강제추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세보 ‘불법입국자수용소’와 오사카 오우키마치(扇町)임시수용소 설치

42) 『東亞日報』, 1952. 9. 15.

해방 직후 한국인을 비롯한 밀항자가 증가하자 GHQ는 별도의 수용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사세보 인양보호국 내에 수용소를 설치하여 강제송환 직전까지 밀항자들을 수용하였다.

1946년 6월 12일 사세보 귀환원호국 내에 불법입국자수용소를 설치하였는데, 이 수용소가 조선인 수용소의 시초라고 하겠다.<sup>43)</sup> 1946년 6월 20일 GHQ는 일본 정부에 지시하여 일본에 ‘불법입국’하는 조선인들을 仙崎, 사세보 등지로 연행하고, 항구에 있는 미군헌병들에게 인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의 선박 등을 징발하여 특별연안경비대(特別沿岸警備隊)를 조직하여 조선인 밀항자들을 단속하라고 지시하였다.<sup>44)</sup>

1946년 12월 10일 GHQ는 일본에서 체포된 조선인들을 사세보인양원호국(佐世保引揚援護局) 내의 수용소에 입감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일정한 기간에 사세보항에서 출발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조선인들을 강제추방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수용소의 경비와 수송에 지방연합국군의 사령관에게 미군 경비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45)</sup>

다음으로 오사카부(大阪府)는 별도의 조선인 수용소를 설치하였다. GHQ는 오사카부 지사에게 1946년 9월 5일 ‘밀입국’한 조선인들을 강제추방하도록 전화통지문으로 “조선으로부터 일본으로 밀입국하여 오사카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조선으로 송환할 것”과 “조선에서 일본으로 밀입국한 조선인들은 경호를 붙여 사세보로 보내라”고 지령을 내렸다.<sup>46)</sup>

1946년 9월 18일 오사카경찰서장은 각 지역 경찰서에 「밀입국조선인송환실시요령(密入國朝鮮人送還實施要領)」을 발표하고, “(최근) 조선으로 귀국했던 조선인들이 다시 재입국 또는 밀항하여 일본으로 들어온 숫자만 1개월 동안 1만 명이며, 6월 20일 현재 해안지대의 경비를 강화하고 엄중 취체하고 있다.”며 “현재 오사카에는 약 3천명 이상의 재입국한 조선인들이 들어와 있다”<sup>47)</sup>고 파악하였다.

43) 최초의 조선인 수용소는 사세보(左世保, 長崎縣, 기간 1945. 11. 24~1946. 5. 5), 센자키(仙崎, 山口縣, 1945. 11. 24~1946. 12. 16), 하카다(博多, 福岡縣, 1945. 11. 24~1947. 5. 1) 3곳에 지방원호국을 설치하였다가, 1946년 7월에 나가사키현 하리오시마(針尾島)에 하리오수용소를 설치하였다고 한다(姜徹, 1987, 『在日朝鮮人の人權と日本の法律』, 雄山閣, 56~57쪽).

44) 일본정부는 對馬島, 唐津(壱岐를 포함), 門司, 仙崎, 舞鶴, 佐世保 등지에 수상경비 기지로 선정하고 수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비선 및 소형선박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GHQ는 運輸省海運總局의 局長을 중심으로 일본에 불법입국 선박감시본부를 설립하고, 九州海運局에도 같은 기구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였다(終戰連絡中央事務局, 「日本への不法入国の阻止の報告」(CLO3005), 1946. 6. 20).

45) 외무성, 1994, 「日本への不法入国の阻止」(SCAPIN1391) 앞의 책, 2894쪽.

46) 「密入國朝鮮人送還の件」, 『府参事會議案原議綴』昭和21年11月 自59號~至64號, 1946. 9. 5.

47) 大阪府警察署, 『密入國朝鮮人送還に関する件』, 「密入國朝鮮人送還實施要領」公親第831의1

또한 재일조선인에 대하여 10월 상순에 모두 강제추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각 경찰서에 통첩하였다. 증가하는 조선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9월 20일 수용소를 설치하겠다고 오사카부는 밝혔다. 따라서 오사카부는 외국인등록령을 거부한 조선인과 재입국한 조선인들을 포함하여 임시수용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특히 오사카부는 10월 1일부터 15일간 조선인의 임시호구조사 및 용의장소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하여 조선인들의 검거에 나섰다.

오사카 조선인 임시수용소는 오사카부 교육민생부(大阪府教育民生部)에서 관리하고 여기에는 관리 책임자가 상시 파견되었다. 수용소에는 경찰부 직할의 경비파출소를 설치하여 상시 필요수의 경찰관을 배치하고 제25사 헌병대가 경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수용자에 대하여 급여, 식량, 기타에 관하여 관리책임자에서 처리하고, 수용소경비책임자는 매일 수용소 상황을 다음날 일정한 양식으로 경찰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강제추방될 조선인에게는 ‘송환명령서’를 교부되었고, 이들은 지정기일에 오사카역에서 사세보까지 수송되었다가 한국으로 추방되었다.

오사카 ‘오우키마치수용소(扇町臨時收容所)’는 1946년 10월 오사카부 교육민생부장이 수용소 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가요구하면서 진행되었다. 수용소 시설비는 292,669円(수용자 1일 식비 9엔, 의료비, 수용비, 잡비, 설비비 등이 포함됨)<sup>48)</sup>으로 책정하였다. 1946년 10월 2일 수용소 설비공사 설계서에 따르면, 수용소 위치는 북구 오우키마치(扇町) 상업학교 지하실로 정하고, 미군정부의 명령에 따라 수용소의 내부를 개조하기로 하였다.<sup>49)</sup> 수용소는 10월 10일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일 후에 개소하였다. 시설은 최고 4천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오사카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은 재일본조선인연맹(이하 조련)의 정치적 영향력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들의 전국적인 사회운동단체인 조련을 탄압하고자, 1946년 11월 오사카경찰서는 미군정의 도움을 받아 「오사카부(大阪府)조선인등록조례」를 실시하고 등록증명서를 휴대하도록 지시하였다. 오사카부의 조선인 정책은 밀항자들을 단속한다는 명분보다 재일조선인의 거대조직인 조련의 감시와 관리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다.<sup>50)</sup>

## (2) 하리오수용소와 오무라수용소의 설치

---

26號, 1946. 9. 18.

48) 大阪府, 「予算追加要求査定」, 『府参事會議案原議綴』昭和21年11月 自59號~至64號.

49) 扇町臨時收容所設備工事設計書, 1946. 10.2.

50) 大沼久夫, 『朝鮮戰爭と日本』, 新幹社, 198~199쪽.

사세보와 오사카 등지에 조선인 수용소를 설치하던 일본은 점차 증가하는 조선인들을 대규모로 수용하고자 신설 수용소를 건설하기에 이른다. GHQ는 일본 정부에 지령을 내려 1950년 4월 3일 「사세보인양원호국(佐世保引揚援護局)에 관한 건」을 기본으로 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재일조선인과 밀항자들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법을 재정비하여 제정하였다.

1949년 6월 22일 「출입국관리사무국설치에 관한 각서」에 대하여 일본은 「출입국의 관리에 관한 정령」(정령 299호)와 「출입국관리연락협의회령」(정령326호)을 공포하여 재일한국인을 추방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였다. 또한 조련(朝聯), 재일조선민주청년동맹(이하 民靑)을 강제해산하며 탄압정책을 펼쳤다.<sup>51)</sup>

1949년 11월 3일 GHQ는 「일본에 불법입국의 억지에 관한 각서」를 발표하고 종래의 각서를 폐지하고 11월 이후 ‘불법입국방지’의 책임을 일본정부에 이관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13일 재일조선인들은 동포인권옹호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1950년 6월 6일 일본 각의는 「하리오수용소 및 출입국관리기구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기존의 귀환정책을 담당하던 사세보원호국(佐世保援護局)을 폐지하고 하리오수용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sup>52)</sup>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리오수용소의 관리와 경비는 법무부로 이관하고 필요한 인원 190명을 증원하였으며, 국경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불법입국자를 체포하여 수용소에 호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송환선 내의 경비를 해상보안청(海上保安廳)의 소관으로 하고 정원 18명을 증가시켰다. 또한 ‘불법입국방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및 그에 따른 GHQ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용소를 외무성 관리국 입국관리부에 맡겨 종전대로 최종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sup>53)</sup>

이로써 GHQ와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의 귀환정책에서 밀항(불법입국)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1946년 6월부터 귀환과 밀항에 대한 정책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정책임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이 법령에 따라 「외무성하리오입국자수용소(外務省針尾入國者收容所)」는 1950년 10월에 구 일본 해군하리오해병단(海軍針尾海兵團)에 설치되었으며, 12월 28일 오무라수용소라 개칭하고 오무라해군 항공창 본관(大村海軍航空廠本館)으로 이전하였다.<sup>54)</sup>

51) 강철, 1987, 앞의 책, 132쪽.

52) 行政管理庁管理部, 1951. 6. 6, 『行政機構年報』第2卷, 26~28쪽. (「佐世保引揚援護局に関する件」1950年 4月 3日(SCAPIN7,126-A) 참조).

53) 또한 1950년 2월 20일(SCAPIN2,083호) 「세관, 출입국 및 검역사무에 관한 건」에 따르는 출입국 관리를 위한 기구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연구하되 늦어도 다음 통상 국회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며, 신기구가 설정될 때까지의 종전대로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1952년 11월 23일 일본정부는 오무라수용소를 현재의 약 2배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sup>55)</sup> 1953년 9월 일본은 총공비 1억 6천만円, 수용정원 1천명, 수용소 5동, 기타 4동의 신설 수용소를 건설하였다. 새로 바뀐 수용소는 외벽을 통하여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sup>56)</sup>

## 2) 수용소의 생활과 강제추방

### (1) 수용소에 감금된 재일조선인의 생활

1946년 간이수용소에서 출발한 하리오수용소가 오무라수용소로 확대 개편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50년 12월 「오무라조선인수용소(大村朝鮮人收容所)」는 나가사키현(長崎縣) 오무라시(大村市) 고가시마(古賀島)에 설치되면서 법무성의 직할로 지정되었다.<sup>57)</sup> 이 수용소는 개소 당시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일본군 해군시설을 개조하였는데, 내부는 간단한 칸막이로 가족 단위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1953년 9월부터 건물을 개축하여 남녀로 분리하여 수용하였다. 수용소 경비 담당을 맡은 경비관 4,353명, 경찰관 2,436명(연인원)이 동원되어 외벽과 내부를 담당하였다.

우선 수용소에 수감되는 과정과 생활 모습을 살펴보면<sup>58)</sup>, 강제퇴거영서 발부의 사유에 따라 분류하거나 전전(戰前, 일제강점기), 전후(前後, 해방 직후) 입국자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남녀별, 연령별, 국적별로 나누어졌다. 특히 나병환자도 별도로 수용하고 있었다.<sup>59)</sup> 수감자들은 6개월에서 최장 4년 정도까지 수용소에서 생활하였다. 수용자들의 하루를 살펴보면, 오전 7시 기상, 오후 10시에 취침하였는데, 식사와 목욕(주2회) 등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 1인당 1일 식비는 306엔 39전 정도 소요되었다. 그리고 복장은 별도의 지급이 없었으며, 1970년대 이후 수용복을 지급하였다. 또한

54) 그 이후 1952년 11월 1일 출입국관리청으로 이관되어, 1953년 8월 1일 「법무성 오무라입국자수용소」로 변경되어 현재 「오무라입국관리센터」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55) 『東亞日報』, 1952. 11. 24.

56) 吉留路樹, 1977, 『大村收容所』, 二月社, 49쪽.

57) 이 고가시마(古賀島)는 豊臣秀吉이 한국을 침략할 때 죄 없는 약자 수만 명을 연행하였는데, 주로 조선도자기공들을 끌고 와 작업장으로 이용했던 곳이다.

58) 수용소 내의 생활과 상황은 吉留路樹, 1977, 앞의 책, 94~102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으며, 별도의 각주를 달지 않았다.

59) 일본은 재일조선인 또는 한국에서 건너 온 피난민 중에 나병환자가 발생한다면 별도의 나병수용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참의원회의에 보고하였다(『參議院速記録』, 第10回 厚生委員會, 1951. 5. 25(31號)).

남녀로 구분하여 수용하였으며, 가족 단위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용된 가족 면회는 월1회 30분으로 제한하였다. 수용소 내의 방은 대·소로 2종류이며, 큰 방은 7~8명 정도이며, 실내에는 세면대, 욕실, 진료실, 오락실 등이 있으며, 방은 큰 방 20개, 작은 방 14개로 구성되었다. 의료 시설은 전문 의사 1명, 간호사 3명, 약사 1명, 비상근 의상 1명 등이며, 필요에 따라 국립 또는 시립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1950년대 말 언론에 보도된 오무라수용소의 상황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다.

“신수용소엔 5동의 수용건물이 있는데 1동은 북한으로 가겠다고 한다는 108명의 공산계들 교포가 격리되어 있고 2동을 금강 3동을 동명, 4동을 임해, 5동을 태백료(療)라고 교포들은 문패를 써붙이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sup>60)</sup>”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작이나 화토 등으로 소일하는데 놀음은 수용소에서는 금하고 있다지만 역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눈치다. 이들은 언제면 나갈 수 있다든지 무슨 기한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희망을 갖고 사는 보람이 있겠어요 하고 석방에 아무런 보장도 없는 오늘까지의 생활이 얼마나 무미하였던가를 강조한다.<sup>61)</sup>”

또한 수용소 내에서 수용인들이 별도의 조직이나 자치회 등을 결성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용소의 규율위반자에 대하여 독방이나 처벌방에 넣기도 하였다. 수용인이 가지고 있는 물품이나 하물 등은 강제추방 당시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강제추방은 일명 ‘송환선(送還船)’으로 경비관과 해방보안관 등이 동승하였으며, 부산에서 한국정부에 인도되었다. 주로 선박은 일본인이 소유한 민간선박이었다.<sup>62)</sup>

수용소에서는 경비원과 경찰관의 폭력으로 사상자나 자살자들이 속출하여 사회이슈로 등장하였다.<sup>63)</sup> 특히 한국의 특무공작원이 수용자의 동행을 파악하거나 주일한국대표부원들이 “한국은 북진무력통일을 위해 백만대군을 준비하고 있으니 북한출신자들에게 한국으로 귀환할 것을 중용”하기도 하였다.<sup>64)</sup>

60) 『東亞日報』, 1959. 9. 23.

61) 『東亞日報』, 1959. 9. 24.

62) 『衆議院速記錄』, 第10回 法務委員會, 1951. 3. 22(12號).

63) 1949년 4월 김태석(金泰錫, 25, 경남 김해읍 출신)은 밀항하다가 체포되어 당시 사세보인양보 호국 수용소에 수감되어 일본 경찰의 폭압을 당했다고 폭로하기도 하였다(『釜山日報』, 1949. 4. 19).

64) 강철, 1987, 앞의 책, 135~136쪽.

1950년부터 1970년까지 수용소 내에서 발생한 소요사건들을 보면, 남북 양 파의 항쟁 7건, 불법입국자와 형벌 법령 위반자의 대립 6건, 중국인과 조선인의 대립 1건, 수용소와 대립 사건 17건, 그 외 기타 사건이 3건으로 총 22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각종 폭행사건을 보면, 수용소 직원과의 폭행사건이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주사건이 35건으로 나타났다.<sup>65)</sup>

이러한 사건은 중의원에서조차 거론되어 공산당과 사회당 등이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加藤의원은 최근 수용소 내에서 수용자와 관리당국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鈴木 政府委員은 “다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큰 소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 남아 있고 싶어서 송환되는 사람과 이별 인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면회가 허락되는데, 그 면회시간이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수용소 내의 관리자와 충돌에 의한 학살, 자살, 각종 폭행 사건 등을 보고하지 않고 단순한 사건이라고 은폐하고 있었다.<sup>66)</sup>

또한 한국전쟁기 일본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피난민 400여 명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질문에, 정부측은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한국정부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피난민들도 재일조선인과 같이 강제추방하였다.<sup>67)</sup>

이 수용소는 ‘기약 없는 수감’ 또는 ‘감옥 이상의 감옥’으로 알려져 재일조선인들의 한을 느끼게 할 수 있었다고 요시도메(吉留路樹)는 회고하고 있다. 또한 박순조(朴順兆)는 “형무소와 다르지 않다”<sup>68)</sup>고 수용소에 대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수용소에 수감된 한국인들은 무미한 생활과 오락실조차 없이 송환될 날만 기다리는 신세였다. 또한 1970년 이후에야 진료소와 각종 편의시설,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었다.<sup>69)</sup>

박순조가 경험한 1980년대의 오무라수용소의 생활 상황을 보면, 195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수용소는 약 1천명의 수용능력을 갖고 있었고 콘크리트로 된 2층 건물은 1층에 다다미 열장 크기의 방이 10개 있었다. 한방에 10명, 다다미 한 장당 한 사람 꼴이다. 특히 강제추방이 시행되는 것이 해마다 세 번(3월, 7월, 11월)이므로 그 날이 다가올 무렵이면 어느 방이나 만원이 되었다<sup>70)</sup>고 박순조는 회고하고 있다.

65) 吉留路樹, 1977, 앞의 책, 51~53쪽.

66) 『衆議院速記録』, 第10回 法務委員會, 1951. 3. 22(12號).

67) 『衆議院速記録』, 第10回 法務委員會, 1951. 3. 22(12號).

68) 朴順兆, 1983, 『日本·韓國·大村收容所』, JDC, 8쪽.

69) 吉留路樹, 1977, 앞의 책, 94~101쪽.

70) 朴順兆, 1983, 앞의 책, 10~11쪽.

8시 30분 건물의 중앙에 있는 대기소에서 알루미늄이 부딪치는 금속음이 시끄럽게 들려온다. 배식대에 보리밥, 된장국에 반찬이 곁든 아침식사가 놓이고 ... 각방의 방장이(대개 고참인 연장자가 된다) 사람 수만큼 거기서 날라 와 제각기 내키는 대로 배를 채운다. 복장도 자유롭다. 일하고 있던 직장에서 그대로 온 듯한 작업복 차림도 있고...구멍이 뚫린 너털너털한 속옷만 입은 남자는 이곳의 고참으로 바깥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일상생활에 젖어 곁모양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사나이다. 71)

1980년대 분위기와 1950년대의 차이점은 식사 문제라고 하겠다. 1950년대 수용자들은 강제퇴거 이후 자기가 지니고 있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옷차림도 그대로 입고 입감되었다. 하지만 수용자에게 제공된 식사는 보리밥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도박과 도난 발생을 막기 위해, 수용되면 금전은 모두 관리관에게 맡겨야만 하였다. 그리고 은행예금처럼 필요할 때 인출하게 되는데, 관리관을 놀라게 할 만큼 큰 금액을 저축하고 있는 수용자도 때때로 있었다. 또한 수용소에는 매점 비슷한 것이 있어 담배, 문구류, 커피, 식료품(알콜류는 금지)을 팔고 있었다.

오무라수용소에 수감된 제일조선인들은 주로 1950년부터 휴전 직전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외국인등록령 위반으로 강제퇴거를 당한 조선인, 밀항자, 일본 내에서 사회운동을 전개한 조선인 등이었다. 이들을 크게 분류하면 일제강점기 일본에 거주한 사람과 한국전쟁으로 일본으로 밀항한 조선인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일본에 거주한 사람들 중 외국인등록령이나 강제퇴거를 당하여 남한으로 강제추방된 사례이다. 한 조선인은 1943년 군마현(群馬縣)의 기류시(桐生市)에서 태어났으며, 1946년에 부친은 남겨두고 모친과 남매만 남한으로 귀환하였다. 그는 모친과 장녀가 사망하자 일본에 있는 부친을 찾아 1956년에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또한 한 사례를 보면, 1945년 10월 남편이 도일한 뒤 장녀와 함께, 오사카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의 곁으로 왔다. 그 후 남편과 사별하고 다른 제일조선인과 재혼하여 네 명의 아이를 낳은 후 이별하였다. 결국 그녀는 밀항자로 취급되어 오무라수용소에 수감되었다.

또한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조선인이 맞선을 위해서 해방 직후 남한에 건너갔고, 사촌형제에게 여권과 재입국 허가증을 맡겨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촌형제의 회사가 도산해, 사촌형제 당사자도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에 재입국 기한이 지나 버렸으므로, 일본행의 화물선에 숨어서 부산에서 출발하였지만, 후쿠시마현의 항구에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어선에 구조되어 병원에 수용되었다.

71) 박순조, 1983, 앞의 책, 12~20쪽.

그는 신분이나 주소 이름이 발각될까 두려워 병원에서 도망치다가, 우에노역에서 체포되어 징역 4년 반의 형기를 끝내고 출소하자마자 오무라수용소에 입감되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건너와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치안유지법으로 옥고를 치르고, 다시 해방 이후 일본공산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일본정부로부터 강제추방된 경우도 있다. 김흥곤(金興坤)<sup>72)</sup>은 CIC첩보부대에서 스파이로 활동해 달라고 요청받았으나 거부하자 미군으로부터 감시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46년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남한으로 강제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센다이(仙台)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1949년 2월경 경찰에 체포되어 오무라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강제추방 되었다. 그는 1949년 5월에 밀항하고 센다이로 돌아왔다. 그리고 1950년 11월에 외국인등록법 위반으로 다시 잡히고, 오무라수용소에 재수용되었다가 1951년 6월에 두 번째의 강제추방을 맞았다. 같은 해 11월에 또 밀항선으로 일본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1952년 초에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김흥곤은 남한으로 강제추방되어 일본공산당원에서 제명되었다.

다양한 사연을 지닌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에 있는 가족을 찾아서 왔지만 일본으로부터 범죄자로 취급당하였으며, 사회운동에 참여한 사람마저 탄압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추방되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1952년 2월 한일회담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 1차 회담은 국적문제와 강제추방 문제 등을 논의하였는데, ‘악질 공산주의자’를 강제추방하는 것에 대하여 양국의 의견이 일치되었다.<sup>73)</sup> 1953년 4월 15일~7월 23일과 10월 6일 2·3차 한일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구보타(久保田)의 “일본이 36년 동안 한국을 통치한 것은 은혜를 베푼 것이다”라는 망언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와 처우문제는 미결정 상태가 계속되었다.<sup>74)</sup>

결국 한국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도 재일조선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다가 1991년에 와서야 「입관특례법」에 따라 일부 해소되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에

72) 김흥곤은 1907년생으로 경남 창원군에서 출생하여, 1922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후쿠시마, 센다이에서 철도공사에 종사하였다. 그는 공산당선언에 감명을 받고 1928~31년까지 북해도에서 노동운동에 헌신하였다. 그러다가 1931년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체포되어, 1935년 구치소에서 형무소로 이감되어 복역하였다. 1938년 북해도청의 촉탁으로 노무자치도원이 되었다. 1941년 10월 정달선(鄭達先)과 결혼하였으며, 1945년 8월의 해방 후 홋카이도 등에 있어 재일 조선인 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다가, 점령군의 대적 첩보 부대(CIC)에 감시를 받아 센다이로 이주하여 지하활동을 계속하였다. 1946년 일본공산당에 입당하였고, 1948년 국기계양사건 이후 점령군과 대립하다가, 1949년 센다이(仙台)에서 사망하였다(金興坤, 『怒りの海峡ある在日朝鮮人の戦後史』, 『東西南北』別冊01, 和光大学総合文化研究所).

73) 1952년 4월 1일 양국은 「재일한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협정안」으로 정리되었으나, 본의회에서 토의되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外村 大, 2005. 6, 「한일회담과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와 처우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4호, 역사문제연구소, 114~116쪽).

74) 外村 大, 2005. 6, 앞의 논문, 120~121쪽.

대한 차별대우와 시각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 (2) 오무라수용소에서 강제추방된 재일조선인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본으로 밀항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950년 7월 12일 외무부 정보국장 유태하(柳泰夏)는 밀항자가 급증하자, “발견되는 대로 관계당국과 연락하여 사회적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단하겠다.”<sup>75)</sup>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1952. 9. 2일 제71회 국무회의 석상에서 “일본밀항자에 대하여 내무부와 세관에서 상호연락한 후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진 내무장관은 “시국의 중대성을 비추어 이들 밀항자에 대하여는 일층 철저를 기할 것이다”라고 강력한 처벌을 내세웠다.

일본과 가까운 부산, 거제 등지에서는 경남북지구 계엄민사부가 직접 밀항을 단속하거나 처리하기도 하였다. 1950년 12월 30일 경남북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金宗元) 대령은 밀항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일본관헌의 철사줄에 묶이어 부산항에 도착하고 있음은 우리 있는 힘을 발휘하여 현하 긴박한 난관을 돌파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명과 물자에 머리 돈 비애국자들의 송환된 자 또는 앞으로 밀항을 계획하고 있는 자 및 조국을 싫어하는 자들은 영원히 놈들의 소원대로 목적지를 전 국민의 애국적인 판결에 의하여 엄단할 것이다.”<sup>76)</sup>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의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밀항하는 한국인들은 줄어들지 않았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일본으로 밀항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자. 1951년 13일 부산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했던 70여명을 검거한 일이 있었고<sup>77)</sup>, 1951년 12월 21일 주일공사 김용식이 외무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부산으로부터 밀항한 제6회 한국인 412명에 대하여 송환은 22일 사세보로부터 출발한 남자 252명 여자 160명<sup>78)</sup>이라고 밝혔다.

또한 1952년 3월 12일 부산서와 부산 수상서에서는 “부산항에 입항한 한일교 환선편으로 송환된 400여명의 밀항자들을 심사 중인데 이들은 싸우는 조국을 등지고 일본으로 불법 도항하였다가 일본관헌에 체포되어 몇 달 동안 수용소에 구류되었다가 돌아온 남녀들인 바 심사하여 선유 또는 구류처분을 할 터이다.”<sup>79)</sup>라고 발표하였다. 1952년 7월 1일 송환 223명의 밀항자가 3일 부산항에 도착되어

75) 『釜山日報』, 1950. 7. 13.

76) 『民主新報』, 1950. 12. 31.

77) 『東亞日報』, 1951. 9. 15.

78) 『東亞日報』, 1951. 12. 23.

79) 『東亞日報』, 1952. 3. 15.

즉시 수상서를 비롯하여 시내 각 서에 분산유치되기도 하였다.<sup>80)</sup> 또한 6월 12일 일본에 밀항하였다가 야마구치 유다마(油玉)에서 일본경찰에 적발되어 오무라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여성 배우 신카나리아(본명 申景女, 가수), 박단마(朴丹馬, 가수), 황정자(黃靜子, 가수), 김백희(金白姬, 가수), 손석우(孫夕友, 작곡가), 김광수(金光洙, 작곡가), 노명석(盧明錫, 작곡가), 손영준(孫牧人, 작곡가) 8명이 8월 1일 부산항에 상륙하여 경남경찰국 사찰과 및 시내 각서에 분산되어 조사를 받고 3주간 구류형을 받고 8월 14일 석방되었다.<sup>81)</sup>

이처럼 전쟁 중에 일본으로 밀항한 자들은 <표2>을 보면, 1950년 12월 11일부터 1952년 12월 25일까지 5,604명이 오무라수용소에서 본국으로 송환되어 왔다.

<표4> 오무라수용소의 한국인 강제송환 상황<sup>82)</sup>

차수	연도	송환자수
1	1950. 12. 11	955
2	1951. 3. 2	405
3	1951. 6. 5	479
4	1951. 7. 31	365
5	1951. 10. 11	415
6	1951. 12. 22	508
7	1952. 3. 11	508
8	1952. 5. 12	410
9	1952. 7. 1	221
10	1952. 7. 31	228
11	1952. 9. 5	161
12	1952. 9. 21	196
13	1952. 10. 31	250
14	1952. 11. 19	232
15	1952. 12. 25	217
총수		5,604

일본 입국관리청의 1951년 9월말 발표에 따르면, 불법입국하는 자가 매일 100

80) 『東亞日報』, 1952. 7. 4. 밀항자 223명 중 2명은 심각한 결과 밀항자가 아니고 일본에서 출생한 자들이었다.

81) 『東亞日報』, 1952. 8. 2·3·15.

82) 앞의 『在日の眼』의 運動年表 1950~52년을 참고. 또한 이 단체는 1950년 9월 밀항자 2,813명, 1950년 12월 1년간의 밀항자 2,434명 중 송환 1,058명, 1951년 1년간의 밀항자 3,503명 중 송환 2,173명, 1952년 1년간 밀항자 2,628명 송환 2,320명으로 총 밀항자 11,378명 중 5,551명이 송환되었다고 발표했다.

명이며 현재 일본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재일조선인 55만 7천 4백 77명 중 북한 출신자가 3분의 2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그 중 약 30만 명이 ‘불법입국자’들로 추정된다고 말하였다.<sup>83)</sup> 하지만 한국정부는 1952년 현재 한국적을 가진 자가 554,410명으로 추정하고 있었다.<sup>84)</sup> 일본 내의 신문들이 보도하는 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sup>85)</sup>

#### 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60여만 명의 재일조선인은 일본과 GHQ의 정책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국인’으로, 다시 ‘난민’과 같이 분류되어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또한 일본 내에서 민주화와 생활운동을 벌인 사회운동가들이 흉악범 또는 악질분자로 낙인찍혀 오무라수용소에서 기한없는 수인 생활을 하다가 강제추방되어야 했다. 또한 김홍곤과 같은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에 재입국하였다가 형무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오무라수용소에 수용되는 이중고통을 당해야 했다.

1947년 5월 재일조선인들은 외국인등록령(법)에 묶여 사회활동과 교육마저 제한받으며 피폐한 생활 속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들의 국적, 생활터전 등을 빼앗고 강제추방시키는데 열을 올렸다. 또한 한국정부는 1945년 이전의 조선인들과 ‘한국적’을 선택한 조선인들만 귀환하도록 했으며, 대부분의 재일조선인들을 ‘악질분자’ 또는 ‘공산주의 물든 좌익분자’로 분류하여 강제추방시키도록 일본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일조선인에 대한 한일정부의 정책은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에 편승한 반인권적·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고국을 등진 일부 군장성이나 정치인, 문화예술인들을 제외한 수많은 재일조선인들은 한국정부와 언론의 질타, 일본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수용소나 형무소에 수감된 죄인 아닌 죄인의 생활이었다.

이 글에서 오무라수용소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한국과 일본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GHQ와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에 대하여, 강제추방을 위한 외국인등록령과 강제퇴거정책에 초점을 두고 탄압하였다. 재일조선인들은 ‘해방된 국민’이

---

83) 『時事新聞』, 1951. 11. 18.

84) 공보처통계국, 1952, 『대한민국통계연보』 창간호, 41~42쪽.

85) 일본 내의 신문들은 대부분 일본정부 또는 GHQ의 보도자료를 인용하거나 편파·왜곡 등이 심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본의 주요 신문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인용하지 않았다.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민’도 아니었다. 그들은 외국인등록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방되거나 형무소로, 수용소로 보내졌다. 특히 일본정부와 의회 등은 해방 직후 재입국하는 재일조선인들을 출입국법에 따라 처벌하는 데 열을 올렸다.

둘째, 한국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을 귀환 또는 일본 내에서 자국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협상을 벌이기보다, ‘좌익분자’ 또는 ‘악질분자’로 둔갑시켜 강제추방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와 협약을 맺기도 하였다. 특히 이승만은 1950년 7월 12일 주일공사 김용주(金龍周)에 보낸 서한에서 일본 내의 의용군 모집을 독려하면서 “조련(朝聯) 좌익계열에 속한 악질분자는 일본정부와 교섭하여 본국으로 잡아 보낼 것”<sup>86)</sup>을 지시하였다.

1950년 12월 6일 주일공사 김용주(金龍周)는 서한을 통하여 일본에서 밀항자 900명을 귀국시키겠다고 귀국하면 내무부와 연락해서 처벌함이 좋겠다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논의되었다.<sup>87)</sup> 또한 김 공사는 “좌우(左右)를 논하지 않고 악덕한(惡德漢) 자들은 강제송환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였다.<sup>88)</sup>

셋째, 일본정부는 1946년 이후 오무라수용소(사세보·오사카·하리오수용소 포함)에 재일조선인들을 강제적으로 무기한 수용하여 반인권적 정책을 펼쳤다. 주로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항거하나 재입국하여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기보다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처벌당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일본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분단의 고착화, 반공이데올로기의 강화, 국가주의 등으로 재일조선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하겠다. 지금도 재일조선인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하겠다. 일본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별정책과 교육의 문제,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갈등조장 등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말뿐인 메아리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 재일조선인 수용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86) 「대통령재가문서」(의용군 지원자 등에 관한 건), 1950. 7. 1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2, 앞의 책, 4(정부문서·국회속기록·잡지편), 51쪽.

87) 「제135회 국무회의록」, 1950. 12. 6.

88) 강철, 앞의 책, 132쪽.

# **A Study on the Forced Expatriat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the Omura Immigration Center**

**Gab-Saeng Jeon**

## **1. Introduction**

Korean Residents in Japan returned to Korea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But some Residents had to stay in Japan. In addition, among those who returned, went back to Japan.

GHQ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reated the reentering Korean Residents as stowaways or criminals, and committed them first to the Omura Immigration Center (the O.I.C), then deported them from Japan.

In this paper we will discuss several issues. First, we will see the establishing process of the stowaways center set up by GHQ and Japanese Government. We will review the laws and policies adopted and executed by Japanese Government until Korean War in order to deport Korean Residents. Especially, we will briefly look into the debate in the Japanese Diet between the government and lawmakers regarding deportation of Korean Residents.

Second, we will show the secret passages of Korean Residents to Japan, as well as their deportation.

Third, we will overview the cases regarding expropriation and deportation of Korean Residents at O.I.C. Strifes by Korean Residents against deportation of stowaways will be also discussed.

## **2. Stowaways center policies of Japanese Government and forced deportation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Japan exacted the aliens registration from Korean Residents since February 1946. Koreans who refused registration were committed to the stowaways center and deported from Japan.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Aliens Registration Decree, Japan promulgated Immigration Control Decree in August 1949, and set up the Exit and Entry Control Office in October 1950. They formed the legal basis to

deport Korean Residents who reentered or stayed in Japan.

Japanese Diet also announced that it would consider the reentering of Korean Residents as secret passage, and that they should be deported to Korea.

Korean Government was not very active in dealing with this issue. While Japanese Government sentenced the reentering Korean Residents to as much as one year of imprisonment, Korean Government treated the reentering as a minor offense. Not until the breakout of Korean War did Korean Government amended relevant laws to punish secret passage or reentering with as much as one year jail time.

### **3. Policies regarding Omura Immigration Center and strifes against deportation during the Korean War**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a center for illegal entrants in the Bureau of Repatriation Support in Sasebo, which was the beginning of a center accommodating Koreans. In December 1946, GHQ ordered that Koreans arrested in Japan should be sent to this center, and deported Koreans by ships departing regularly from Sasebo. GHQ also made it possible for local allied forces to request U.S. Armed Forces in guarding and repatriating the accommodated Koreans.

In January 1950, Japanese Cabinet Council announced 'Hario Center and the Immigration Control Decree', and decided to close the Bureau of Repatriation Support in Sasebo and establish the Hario Center.

'Hario Center for Illegal Entrants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as established at Hario Marine Corps in October 1950, and in December was renamed 'Omura Immigration Center' and moved to Omura Navy hangar main building. In November 1952, Japanese Government made a plan to double the capacity of the Center.

Prisoners were classified into several groups on account of either the reason of deportation or the time they reentered Japan. Lepers were accommodated separately. Prisoners were detained from six months to as much as four years at the Center. They had to endure various treatments infringing human rights - murder, violence, threat, conciliation, etc. - by Japanese Police.

#### **4. Conclusion**

From the facts outlined above, we have confirmed three important points: First, GHQ and Japanese Government repressed Korean Residents in Japan by the Aliens Registration Act and deportation policy. Especially, Japanese Government and Diet punished Korean Residents who reentered Japan right after the liberation with the Immigration Control Decree.

Second, Korean Government did not engage in a negotiation with Japanese Government in order for Korean Residents either to return to Korea or to reenter and live in Japan. Rather, it even labelled the Residents as 'left-wing elements' or 'bad elements' and made an agreement with Japanese Government to deport them.

Third, Japanese Government carried out policies infringing human rights, forcing Korean Residents into indefinite period of commitment at Omura Immigration Center since 1946.

# 한국전쟁기 봉암도 수용소 사건 이후의 유엔군 포로정책

김학재(제노사이드 연구회)

1.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와 포로의 전쟁경험
2. 한국전쟁 포로라는 존재의 위상
3. 봉암도 사건의 전개와 유엔군사령부의 대응
4. 반공포로 석방 기획의 전후
5. 맺음말

## 1. 한국전쟁기 포로의 전쟁경험과 포로수용소의 성격

### (1) 20세기의 전쟁과 포로 경험

20세기는 전쟁의 세기였고 동시에 수용소의 세기였다. 우리는 많은 역사 연구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20세기의 극단적인 전쟁들로 인해 사람들이 겪어야했던 고통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sup>1)</sup> 중요한 것은 1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쟁경험은 대체로 군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었지만, 소위 ‘총력전’이라고 불리는 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쟁경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측면이다. 민간인들이 순식간에 ‘군인’이 되고 ‘전쟁 포로’가 되었다가 ‘송환’되는 경험은 매우 보편적인 것이었다. 2차대전 이후 민간인들은 ‘최소한 전투원들 만큼 고통을 당했으며, 따라서 중요한 전쟁경험의 장소는 참호에서의 전투가 아니라 포로수용소였다.’<sup>2)</sup>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약 9천 6백만 명이 군에 가담했는데, 그들 중 약 3천 5백만 명이 전쟁포로가 된 경험이 있었다.<sup>3)</sup> 그런 점에서 2차대전 이후 전쟁은 ‘수용소’내부에서, ‘수용소’를 둘러싸고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 즉 수많은 포로가 발생하고, 포로수용소가 중요한 전쟁

---

1) 나치의 강제수용소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쟁포로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진 바 있다. 주요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Nikolaus Wachsmann, Looking into the Abyss: Historians and the Nazi Concentration Camps, *European History Quarterly*, 4 2006; vol. 36: pp. 247-278,

2) Louis Allen, To Be a Prisoner, *Journal of European Studies*, 1 1986; vol. 16: pp. 233-248.

3) Niall Ferguson, Prisoner Taking and Prisoner Killing in the Age of Total War: Towards a Political Economy of Military Defeat, *War In History*, 4 2004; vol. 11: pp. 148-192.

경험의 장소가 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포로들이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역사상 유래가 없는 규모로 사람들이 억류되는 일들은 왜 발생했으며,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시적으로나마 되어야 했던 ‘포로’라는 존재의 성격과 위상에 대해, 포로수용소라는 공간의 폭력성이 갖는 정치, 사회적인 특성에 대해 과연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 총력전의 경험을 통해 등장한 포로를 보호한다는 인도주의적 원칙은 과연 실현 가능한 원칙이었을까? 포로가 된다는 것과 포로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단지 인도주의의 실패이자 일탈적 예외일 뿐이었을까?

동아시아적 맥락을 고려할 경우, 우리는 이와 유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민지배와 제국주의 총력전, 냉전과 한국전쟁이라는 더욱 복잡한 진실들을 대면하며 추가적인 의문점들을 갖게 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는 식민지배하에 있던 수많은 동아시아인들을 ‘비국민’으로서 혹은 ‘일본군’으로서 전장으로 동원했고, 그들은 여러 전장에서 전쟁포로로 포획되었다. 민간인들이 ‘포로’라는 지위가 되고, 또 그들이 ‘석방’되어 한 국가의 ‘국민’이 되기까지는 복잡한 경로가 존재하며, 더 복잡한 결들이 상흔들로 남아있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고향과 가족, 국적을 잃었으며 전쟁 이후에도 다수는 ‘식민지 출신 전쟁 난민’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한국전쟁에서 전쟁포로 문제는 가야흐로 그 자체로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 자체가 ‘포로’협상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으로 여겨질 정도로 포로문제는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역설적이게도 포로들을 보호한다는 ‘인도주의적’인 자원송환 원칙으로 인해 전쟁이 지속되었고, 포로수용소와 포로의 신체는 냉전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국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데올로기 전장이 되었다. 그 결과 포로수용소는 ‘국제 전범 수용소’가 되어버렸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전쟁기 전쟁포로들은 분단 정권의 ‘국민형성’ 작업과 맞물려,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었지만 두 개의 ‘성향’을 가진 포로로 나뉘어졌다. 그 결과 포로수용소는 분단 국가의 ‘정치범 수용소’가 되어갔다. 국제사회의 힘의 충돌은 수용소 내부에 구성된 수많은 차이와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폭력적 충돌로 치닫는데 직·간접적 배경이 되었다. 수용소는 정치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정치공동체이자 작은 국가였고 내부의 반란은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의 전쟁과 ‘포로’ 문제는 한편으로는 전쟁 포로라는 현상을 만들어낸 근대사회의 총력전과 국민국가라는 권력구조가 갖는 폭력의 보편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동시에 중심국가들 사이의 국제적 권력 투쟁과 주변국가들(그리고 그 내부)의 권력투쟁의 관계, 그러한 권력투쟁에서 보편적 인도주의의 역할, 전쟁과 국민형성의 문제 같은 또 다른 문제들을 생각하게 만든다. 한국전쟁의 포로경험에는 서구적 근대성과 동아시아적 근대성을 반영한 권력의

기술들과,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간의 역사적 궤적이 각인되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전쟁과 포로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전쟁과 전쟁 포로에 대한 연구는 20세기의 전쟁과 수용소 현상에 대해, 나아가 오늘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조적 경향들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그해야 할 것이다.

## (2) 포로수용소 : 예외상태와 보편주의의 충돌

강제수용소(concentration camp)는 20세기의 특징적인 창조물이며, 근대 국가에 의해 강제 노동과 학대, 고문과 살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수용소를 서구 근대성 그 자체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18세기가 계몽의 시대였고, 19세기가 혁명의 시대였다면, 20세기는 수용소의 시대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sup>4)</sup> 이제는 다종 다양한 수용소가 없는 세계는 상상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전쟁포로 수용소도 그중 하나이다.

그런데, 나치의 ‘극단적’인 절멸수용소에 비하면 전쟁포로수용소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였을까? 그러한 관점은 ‘극단적’ 경험을 ‘특권화’하고 보편적 경험을 ‘예외화’하며 구조적 연속성을 ‘과거의 사건’으로 정박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단언컨대 근대 사회는 모든 폭력의 조건이자 그 자체로 폭력현상의 총집합인 전쟁경험을 보편화시켰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포로들이 노출되었던 극단적 폭력과 잔혹성들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 수용소에 억류된 대부분의 포로들은 단지 적 병력의 적대에만 노출된 것이 아니라 경비들에 의한 폭력, 포로들 간의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었으며 기본적인 생활 조건들이 결여되어 있었다. 비록 20세기 동안 전쟁포로를 다루는 체계가 점차 법제화되었고, 포로들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근대 국가는 결코 행복한 병사들이 살해되고 학대받는 것을 막지 못했다.<sup>5)</sup>

물론 문제는 폭력의 규모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한지, 폭력의 성격과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포로수용소는 단순히 전쟁 상대국의 전투원을 일시적으로 억류하는 공간이 아니다. ‘포로’는 전쟁과 함께 생겨나며 적국에 있는 ‘국민’으로서 여전히 국민국가적 기획안에 포섭되어 있는 존재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포로수용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국민국가에서 배제된 ‘난민’

4) Z. Bauman, A Century of Camps?, in P. Beilharz (ed.), *The Bauman Reader*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2001.

5) James D. Morrow The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Prisoners of War Treat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5, No. 4, The Rational Design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utumn, 2001), pp. 971-991

의 탄생과 계보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아렌트(Hannah Arendt)는 제국주의에 대해 논하면서 ‘난민’과 ‘무국적자’의 조건을 새로운 역사적의식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sup>6)</sup> 1차 세계대전 당시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한 이후<sup>7)</sup>, 대부분 국가들이 이들의 국적을 박탈했고, 1차 대전 이후 많은 유럽국가들이 자국시민들의 귀화를 취소시키고 국적을 박탈하는 법을 도입했다. 난민과 무국적자가 속출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들 ‘난민’의 지위는 귀화로 나아가거나 본국송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상태’로 여겨졌다. 결국 ‘난민’은 국민국가 시스템의 ‘인권’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존재라는 것이 아렌트의 견해이다. 아감벤(Giorgio Agamben)은 오늘날 인류의 더 많은 비율이 국민국가안에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민이라는 존재가 앞으로 도래할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확장된 견해를 제시했다.<sup>8)</sup>

나아가 아감벤은 유럽에서 최초의 수용소가 난민을 통제하기 위해 건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포로수용소 *internment camp*, 강제수용소 *concentration camp*, 절멸수용소 *extermination camp*로 이어지는 기원에 있다고 말한다. 즉, ‘난민’의 존재가 절멸수용소로의 길을 예고 해준다는 것이다. 수용소는 국민국가의 내외부적 국경만들기와 함께 생겨난 산물들인 셈이다. 강제수용소는 국민국가의 영토논리를 물질화한다는 의미에서, 근대의 고유한 발명품이다. 이러한 강제수용소는 국가영토 내부에서 비국민(혹은 반국민)을 폐쇄하는 형태이며, 강제수용소는 국가 공간 내부에서 경계를 내재화시키며, 결국 이 내재화가 ‘내부의 적’이라는 근대적 관념을 가능하게 한다.<sup>9)</sup> 난민 수용소는 국민국가의 외부로 배제된 사람들을 수용하며, 포로수용소는 국민국가의 외부에 있는 국민들을 적대국가가 억류하는 공간이고, 강제수용소와 절멸수용소는 ‘내부의 적’을 감금하고 절멸시키는 공간인 것이다.

그런데 수용소라는 공간은 ‘예외상태 *state of exception*’<sup>10)</sup> 논리가 물질화된 공

6) ‘국민국가의 몰락과 인권의 종말’, 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1권, 2006. 489쪽.

7) 대규모 현상으로서의 난민이 최초로 출현한 것은 1차 세계대전 막바지로,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 오토만 제국의 붕괴 그리고 평화조약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질서가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인구구조와 영토구조를 심대하게 뒤흔들었던 때이다. 단기간에 150만의 러시아인, 70만의 아르메니아인, 50만의 불가리아인, 백만명의 그리스인, 수만명의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인들이 조국을 떠났다. 불과 몇 년후 독일의 인종차별법과 스페인 내전으로 인해 또 다른 난민들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다.

8) 아감벤은 “국민국가의 멈출 수 없는 쇠퇴와 전통적인 법-정치적 범주의 쇠퇴를 볼 때 난민은 우리시대의 인민 *people*에 대해 사고 가능한 유일한 형상이며 유일한 정치적 범주이며, (난민을 통해) 오늘날 도래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형태와 그 한계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조르지오 아감벤, 박진우 역, 『Homo Sacer 호모사케르』, 새물결, 2008.

9) (풀란차스, 134)

간이기도 하다. 예외 상태란 법과 규칙이 중단되는 상황이다. 예외상태는 보편적 법질서의 밖에 있으면서도 법질서와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상적 구조를 가지며, “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교차점에 있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언저리”에 위치한다.<sup>11)</sup>

아감벤은 강제수용소가 일상적인 법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외상태와 계엄령 *martial law*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수용소는 ‘예외 상태’가 질서를 지배하는 규칙이 되기 시작했을 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공간이자, 현대 정치 공간의 숨겨진 논리를 담지하고 있는 곳이다. 강제수용소에서는 예외상태가 영구적인 공간이며, 실제로 강제수용소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강제수용소에 들어간 사람은 외부와 내부, 예외와 규칙, 적법과 위법, 사실과 법, 법규와 적용이 구별불가능해 지는 구역,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사법적 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구역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소를 관리하는 기구는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어떠한 결정을 ‘실행’하며 그것을 ‘현실화’한다. 어쩌면 ‘식민지배-태평양전쟁-분단-전쟁-개발독재-군부정치’로 이어진 한국의 근대 전체가 ‘예외 상태’논리가 지배한 시기, 예외상태의 합법화가 지속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상황은 서구 근대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예외상태의 평범성 *banality of exception* 을 드러내주는 사례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강제수용소의 등장은 근대성 자체의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준다. 수용소는 한정된 국지화(영토)와 한정된 질서(국가)의 기능적인 결합물 위에 세워지고 인간 생명을 등록시키는 규칙들(출생, 혹은 국민[혹은 국적])에 의해 매개되는 근대 국민국가라는 정치 체계가 영속적인 위기로 접어들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물학적 삶을 돌보는 것이 국가의 고유한 과제들 중 하나로 떠올라 결정하는 바로 그 시점과 장소에서 등장한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상태 논리가 수용소 안에 속에 억류된 자들의 모든 정치적, 법적, 사회적, 경제적 권한을 박탈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다. ‘배제된 채로 포함(구금)되어있는 잠재적 ‘호모 사케르’<sup>12)</sup>들이 생겨나는 공간에는 권력의 비대칭적

10) 칼 슈미트(Carl Shumidt)는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자이다” 라는 명제를 『정치신학』 (1922)에서 제시했다.

11) 문제는 ‘예외상태’가 점점 더 현대 정치의 지배적인 통치 패러다임이 되어왔다는 점이다. 예외상태가 원칙이자 일상, 정상이 되어 버린 상황이라는 것이 아감벤의 해석이다.

12) 아감벤은 역사와 현재속에서 ‘난민’이 처했던 상황을 하나의 ‘인간형’이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들은 국민국가 시스템과 법질서로부터 최대한 배제된 인간 삶의 형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인데, 아감벤은 로마법에 정의된 존재인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는 개념을 가져온다. 호모사케르는 고대 로마법에서 그를 죽이더라도 죽인자에게 살인죄를 묻지 않아도 되는 자이고, 동시에 그의 죽음은 종교적으로도 어떤 신성한 가치도 갖고 있지 않음을 지칭한

양극화가 극에 달한다. 그러한 공간에서 지배권력은 모든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군주권적 권력을 행사하고, 억류된 사람들은 누가 어떤 이유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임을 당해도 그것에 어떠한 인간적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존재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는 이러한 '예외상태'의 논리와 보편적 '인권'의 논리가 충돌했던 공간이었다. '포로'는 무기를 들고 전장에 섰다는 이유로 여전히 '국민'으로서 인정받는 존재들이고, 이들에게는 국제관계의 대외적 주권원칙에 근거한 '인권'의 논리가 적용된다. 다른 한편 이들에게는 수용소 고유의 예외상태 논리가 적용되며, 동시에 국민국가의 국내적 주권원칙, 즉 이들을 배제하고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배제적 기능이 작동했다.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는 이러한 이중적 경향의 충돌 이외에도 더욱 복잡한 경향을 반영했다. 포로수용소는 포로수용소 기능 외에도 난민수용소와 강제수용소의 기능을 담당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위반한 자들을 구금하는 '전범 수용소', 분단 국가의 내부의 적을 수용하는 '정치범 수용소'였고, '전향한 적'에게 심사를 통해 국적을 부여해주는 출입국 관리소였고 동시에 그 자체로 정치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정치공동체이자 작은 국가였다. 이 글에서는 포로수용소를 한국 근대 정치시스템의 모태로서, 한국사회의 밑바닥에 깔린 폭력 구조의 응축으로서의 바라볼 것이다.

## 2. 한국전쟁 포로라는 존재의 위상 : 투항한 적에서 민간인 억류자까지

한국전쟁은 포로전쟁이었다. 전쟁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고, 전쟁기간 내내 양측은 포로의 처우와 분류, 포로의 숫자와 교환 원칙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치했다. 한편에서는 판문점에서의 정전협상과 유엔총회에서의 표결, 국제 외교 기구들의 로비와 갈등, 대 내외적 심리전 같은 정치적 대립과 협상이 있었고, 전투현장에서의 투항과 포획, 수용소까지의 이송과 심사, 수용소에서의 대립과 폭동, 진압 같은 물리적 충돌과 통제가 있었다.

포로들은 역사상 최초로 자발적 송환이라는 인도주의적 원칙이 제시된 전쟁에서 송환을 원하는 포로와 거부하는 포로, 반공포로와 친공포로, 민간인 억류자와 중공군 포로 등으로 심사, 분류되고 한 수용소에 모두 수용되었다가 나뉘어지는

---

다. 즉, 세속의 정치적 질서와 종교적 질서 양쪽으로부터 철저하게 추방된, 이중적으로 배제된 상태를 말한다. 호모사케르란 결국 누구로부터 생사여탈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리가 박탈된 인간 삶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르지오 아감벤, 박진우 역, 『Homo Sacer호모사케르』, 새물결, 2008.)

등의 복잡한 절차를 겪게 되었다. 또한 '1949년의 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첫 케이스로서 미국이 미리 주도면밀하게 대응을 준비했음에도, 그 자체로 전쟁과 같은 폭력적 갈등이 수용소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포로들은 수용소장을 납치하는 초유의 저항을 감행했으며, 수많은 포로들이 '폭동'에 대한 '진압'의 명목으로 살해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전쟁기 포로의 전쟁경험은 지극히 내면적인 심리적인 차원에서부터, 거시적인 국제체제의 변동이 맞물린 갈등의 장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와 사회적 기억은 이러한 적나라한 폭력경험을 신화로 덮어버리려 하는데 급급했거나, 국제적 역학관계의 일부 입장만을 반영한 협소한 해석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즉, 포로를 대상으로 한 심리전문제나, 포로협상을 두고 벌어진 국제적 선전전, 포로들간의 사상대립과 반공 승리의 신화만이 주목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을 듣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누가 포로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이다. 나아가 왜 정전협상에서 왜 포로문제가 갈등의 핵이 되었는지, 이러한 '포로전쟁'의 위상과 성격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sup>13)</sup>

한국전쟁은 2차세계대전과 탈식민화과정, 세계적 냉전체제의 구축과 민족의 분단, 그리고 정부수립과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이 맞물려 발생하였기에, 국가대 국가간의 전쟁에서 발생하는 포로문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복잡한 경로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한국전쟁의 포로문제는 국민국가를 건설할 때 생겨나는 비국민, 난민과, 전쟁에서는 생겨나는 포로, 부역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난 결과물이다. 한국전쟁기 유엔군 포로수용소는 '난민'과 '포로', '적국 국민'과 '적 군인', '부역자'같은 모호하고도 복잡한 주체들을 분류해내고 구획 짓고 위계를 만들어 내며 통제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떻게 포로가 되었고, 포로에 대한 구분과 분류가 어떠했으며, 그것은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구분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 전쟁의 또 다른 이면, 혹은 본질적 특성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한국전쟁에서 '포로'라는 존재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하나의 요소는 국제법적인 것이었다. 한국전쟁에서 포로문제는 1949년 8월 19일자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규정하는 인도적 원칙과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받았다. 비록 한국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이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것은 아니었지만, 세

---

13) 이러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이어진다. 인도주의적인 국제법과 냉전체제의 새로운 헤게모니 싸움은 어떤 관련이 있었는가? 한국전쟁의 양가적인(내전-국제전적인) 성격은 포로들의 양산과 그들의 전쟁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상대방을 법적 교전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제기구가 개입한 전쟁을 지속하며, 상대방의 전투원을 국제법상 전쟁포로로 대우하는 것은 어떠한 난점에 직면했는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도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계 언론에 의한 여론과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정(1949년 8월 12일)’의 4조는 다음의 부류중 하나에 속하는 자로서 적의 수중에 들어간 자를 포로로 규정하고 있다.

- ① 총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
- ② 총돌당사국에 속하며 영토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타의 의용대의 구성원. 조직적 저항 운동을 하는 민병대와 의용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함.(a. 부하를 책임지는 자에 의해 지휘됨 b. 멀리서 인식가능한 고정된 식별표지 보유 c. 공공연히 무기 휴대 d. 전쟁에 관한 법규와 관행에 따라 작전을 행함)
- ③ 억류국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정부 또는 당국에 충성을 서약한 정규군대의 구성원
- ④ 실제로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대에 수행하는 자. 군대의 인가를 받고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자
- ⑤ 총돌 당사국의 상선 승무원, 민간 항공기 승무원.
- ⑥ 점령되지 아니한 영토의 주민으로서, 적이 접근하여 올때 정규군부대에 편입할 시간이 없이 침입하는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 자. 공공연히 무기를 휴대하고 전쟁법규 및 관행을 존중하는 경우.<sup>14)</sup>(강조는 인용자)

제네바 협정의 포로 규정은 가능한 정규군대와 전투에 참가한 조직적인 전투원을 ‘포로’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인도적 대우는 특히 13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제 13조는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그 억류하에 있는 포로를 사망케하거나 그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어떠한 억류국의 불법한 행위 또는 부작위도 금지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본 협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1951년 10월 19일자 미국 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사용하는 “전쟁포로”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 (1) “1949년 8월 12일의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정” 4조에 포함된 전쟁 포로의 정의에 해당하는 유엔사령부에 의해 구금된 사람. (2) 유엔사령부에 의해 전쟁 포로 시설 혹은 수용 시설에 억류된 모든 사람들.<sup>15)</sup>(강조는 인용자)

14) ‘부록1.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정(발췌)’,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996. 261-278쪽.

15)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EC, SCAP, and UNC, Military History Section, command & Staff Section Reports, 1947-5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Entry

미국은 '유엔사령부에 의해 시설에 억류된 모든 사람'을 포로라고 칭했고, 전쟁초기의 포로정책은 실제로 그러했다. 유엔군은 전쟁초기에 일단 전선에서 아군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을 일단 포로로 잡아들인 후 후방으로 이송하고 집결소에서 추후에 심사를 거쳐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결과적으로 전쟁초기에는 수많은 민간인들도 포로로 억류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누가 포로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잡아들인 후 조사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분류하게 되는 것이다. '억류된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취급하는 정책은 한국전쟁의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실행되고, 국제 정치적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포로관련 정책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미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존재의 지위를 결정하는 사후적 규정이 포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선포획, 후분류' 조치와 같은 조치는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한 미국의 규정 방식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 '포로'가 갖는 권리와 위상은 한국전쟁의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미 국무부는 전쟁초기에 영국의 요청에 따라 전쟁의 성격규정과 국제법적 위상을 검토했다.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전쟁의 법적 성격을 내전인지, 국제전인지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전쟁을 내전이나 국제전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에 맞추는 것은 어렵고, 또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성격이 무엇이든, 미국과 유엔국의 군사개입은 국제법 하에서 일반 교전국이 갖는 모든 권리 행사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법적 교전국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국제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군이 전쟁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는 한, 그들이 전투원에 대한 국제법상의 인도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sup>16)</sup>

이처럼 미국은 전쟁의 성격 자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유엔의 행위'는 국제법적 권한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상대의 행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상대를 법적 교전국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행동은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전투원에 대해서는 인도적 대우를 하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양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로의 위상은 상대국가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 주권의 담지자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의 도덕적 압력과 이들에 대한 '조건부'적인 인도적 처우의 형태로만 보호를 받는 난민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성격 규정과 그에 따른 '인도주의적 개입'은 모호한 난민적 공간을 창출했던 것이다.

---

Secret 1951 Provost Marshal Box 176

16) *FRUS* 1950, 516~518쪽

국제법의 도덕적 압력을 반영한 또 다른 조치는 맥아더의 선언이었다. 맥아더는 1950년 7월 4일, 북한군 포로를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대우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맥아더는 UN군 포로가 된 북한군에 대해 근대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될 일체의 보호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를 표명했고, 북한군에 포로가 된 국제연합군 소속원에게도 그와 같은 보호를 부여할 것을 보증할만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포로에 대한 잔인한 처우를 전쟁범죄로 규정했다.<sup>17)</sup>

사실 전장에서 포로는 자의적인 학대와 사살 같은 폭력에 노출된 존재들이었다. 1951년 2월 3일 육군작전훈령 186호는 일부 부대들이 포로를 체포한 후 신속히 후송하고 인도적 보호를 하지 않고 학대 혹은 사살하는 예가 있다면서 이를 국제법 위반이자 명령 불복종이라고 규정<sup>18)</sup>하여 당시 이러한 사례가 존재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포로에 대한 잔인한 처우는 양측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주된 논거가 되었다. 특히 공산측은 지속적으로 유엔사령부가 억류중인 전쟁 포로에 대해 모든 종류의 잔학 행위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즉, 유엔사령부가 포로에게 가한 “모욕, 고문, 강제적인 유혈 탄원서 작성, 협박, 감금, 대량 학살, 사살과 기총 난사, 독가스 실험, 세균 무기, 원자폭탄”과 같은 범죄 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전쟁 내내 반복적으로 주장했다.<sup>19)</sup> 1951년 11월 19일 북한측은 유엔총회에 보낸 문서에서 약 1만 7천여 명의 전쟁포로, 조선인민군 사병과 장교들, 중화인민지원군이 남한의 포로수용소에서 살해되거나 고문이나 기아로 죽었다고 주장했다.<sup>20)</sup>

1950년 8월 20일, 맥아더는 적의 비인도적 포로취급에 성명을 발표했다. 맥아더는 UN군 포로에게 가해진 북한군의 일련의 잔학행위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었다면서 이러한 것은 희생자에 대한 범죄일 뿐더러 전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명령과 지휘를 통해 학살 행동을 용인, 장려하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전쟁규칙 및 전례에 비추어 범죄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21)</sup>

양측은 국제여론을 무대로 한 이 격렬한 선전전에 대응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미국은 포로수용소 내부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면서 ‘전쟁범죄자’들을 관리하여 억류했다. 1951년 11월, 미 국방부는 억류하고 있는 포로

17) 『한국전란 1년지』, c106쪽.

18) 육군본부 작전훈령, 제186호 : 『한국전쟁자료총서』 65권, 525쪽

19) 미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문서(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 『한국전쟁자료총서』 64권, 149~152쪽

20) 『한국전쟁시기 북한군 포로관계 문서(1950~1954) : 남북한관계 사료집』 12, 75쪽

21) 『한국전란 1년지』, C106쪽

들에는 1. 포로가 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죄 행위를 다루기 위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거부해 온 적군 전쟁 포로들. 2a. 포로가 된 후 유죄 선고를 받은 적군 포로들. 2b. 포로가 된 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적군 포로들도 있고 이들을 계속 억류하고 있어야 한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다.<sup>22)</sup> 이와 달리 대체로 자신들의 포로처우와 수용소 내부에서 발생한 수많은 폭력 갈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보고는 언제나 충분히 하지 않았다.<sup>23)</sup>

그렇다면 국제 선전전을 위한 것이 아닌 실제 ‘전범’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었을까? 미국 군부는 ‘포로’에 대한 정치적 충돌을 좋아하지 않았다. 1950년 10월 14일 맥아더는 한국전쟁의 전범처리와 관련하여 미 국무부에 정치적인 전범 재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맥아더는 일본인 전범 재판 책임이 가장 불쾌한 임무였다고 밝히면서, “지휘관들은 전쟁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정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맥아더는 김일성이 잔혹행위를 하도록 정책적으로 군대에 명령을 내린 증거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고, 동시에 북한군대의 포로 및 일반인에 대한 처우의 편차가 부대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잔혹행위가 일반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sup>24)</sup> 이처럼, ‘전쟁범죄’를 비난하는 인도주의적 원칙이 전세계적 선전전으로 격렬하게 충돌하는 동안, 포로들은 그러한 선전전을 위한 재료이자 잠재적 ‘전범’들이 되어갔다.

인도주의적 원칙은 더욱 나아가 포로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갔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국은 정전협상이 진행된 이후로 포로들 중에서 송환하지 않을 포로들을 분류해내는 소위 ‘자유송환’ 원칙을 주장했다. 포로가 송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는 이 원칙은 당시까지 어느 국제법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원칙이었다.

1952년 2월 4일, 미 국무부와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장관과 합동참모본부는 ‘전쟁포로 자유송환에 대한 미국의 최종입장’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무부는 전쟁포로 자유송환 문제가 ‘한국 정전협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근본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유엔군의

22) 미 국무부,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1951, 1230~1232쪽.

23) 1951년 8월 24일, 참모장은 지난 6개월간 포로수용소에서 폭동과 탈영, 이를 진압하여 발생한 사망과 부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949년 제네바 전쟁포로협정 121조에 의하면 경비병이나 다른 포로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모든 사망사고와 심각한 부상은 공식적 조사가 즉시 실시되어야만 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즉시 국제적십자사에 송부되어야 하지만 수차례의 요구에도 이제껏 사건들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보고서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EC, SCAP and UNC, Military History Section, Command & Staff Section Reports, 1947-52, General HQ Far East Command, Entry Secret 1951 Provost Marshal, Box 176

24) *FRUS* 1950, 961~962쪽

모든 행위에 ‘내재된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원칙들’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항복한 포로나 ‘송환될 경우 죽음에 이를 것이 확실한 공산 포로들’을 넘겨주는 협정은 인도주의 원칙에 모순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국내와 국제 여론이 이 원칙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쟁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지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한 미국은 만일 정전협상에서 ‘자유송환 원칙’이 협상체결의 유일한 방해물이 되고, 공산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엔군사령부는 ‘자발적인 개인의 선택에 의해 공산진영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모든 전쟁포로들을 즉시 선발’하고 이들의 명단을 ‘포로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자신들이 ‘도덕적·인도주의적 원칙’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공산측으로 하여금 ‘합의가 필요 없는 기정사실’에 직면하게하며, 그로 인한 ‘정전협상’의 결렬은 공산측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 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다.<sup>25)</sup>

이러한 정책에서 ‘포로’라는 존재의 위상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하고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까지 격상되지만, 보편적 인도주의가 높은 수준에 달한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주의’는 한국전쟁과 냉전을 둘러싼 미국의 국제적 이해관계의 알리바이가 되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규정과 선언들은 결코 현실과 일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포로’의 위상과 지위가 매우 모호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로’에 대한 처우는 양측의 ‘도덕적 행위’에 맡겨져 있었고, 그 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많은 ‘예외’상황들과 ‘예외’적 존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예컨대 ‘포로’들은 제도적 절차 없이도 통제와 ‘처벌’을 받는 존재들이었다. ‘무재판 처벌’은 “1949년 8월 12일의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정”에 의해 허용된 것이었고, 군 장교들이 규율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무재판 처벌을 행사했다. 사법적 조치보다는 무재판 처벌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무재판 처벌의 종류는 사역의무와 감금 등이 있었는데, 더욱 중요하고 상징적인 것은 “1949년 8월 12일의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정”에 의해 제공된 대우상의 특권 박탈“이었다.<sup>26)</sup>

이러한 조치는 엄격한 사법적 처벌보다는 가벼운 징계를 규율방식으로 사용하는 흐름과도 관련이 있지만, 포로들이 처해있던 예외적 상황, 그들의 예외적 지위를 드러내준다. ‘포로’라는 존재 자체가, 국내의 보호에서 벗어난 적국에서, 적

25) *FRUS* 1952, 35~38쪽

26)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EC, SCAP, and UNC, Military History Section, command & Staff Section Reports, 1947-5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Entry Secret 1951 Provost Marshal Box 176

의 상시적인 적대적 위협에 노출된 채 국제법의 희미한 보호막에 둘러 쌓여있는 것인데, 그것마저 박탈한 다는 것은 '정치적 난민'의 지위에도 못미치는 위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즉, '포로'들의 위상과 지위는 국제법과 교전 당사국의 제도적 영향보다는 군사적, 정치적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적으로 규정되었다. 한국전쟁은 인간과 자연을 사살된 적의 숫자, 획득하고 파괴한 영토와 시설, 무기를 수치화하여 전과로 환원시키는 극단적 비인간화와 물신화를 이루어내는 근대적 전쟁의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전쟁초기에 '포로'가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전쟁초기 북한군은 포로가 되면 처형된다고 생각하여 쉽게 항복하려 하지 않았다.<sup>27)</sup> 또한 포로는 기본적으로 '항복한 적군'으로 다루어졌다. 아군이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1951년 1월 29일 내려진 육군훈령 제181호에 따르면, 육군 본부는 소위 '귀환 포로병'을 취급하는 대책을 지시했다. 당시 북한은 포로가 된 남한군들의 무기를 박탈한 후 귀가시키고 있었는데, 육군은 '교육수준이 저열한 사병'들이 '군인 본분을 몰각하고 포로 당하였다는 수치'를 갖고 있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불미한 선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육군총참모장 정일권은 '군인정신을 몰각하고 병기를 유실하고 귀환한 자'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최고형에 처할 것을 지시했다.<sup>28)</sup>

그리고 포로들은 무엇보다도 전투의 결과 '획득'된 전과로 취급된 존재였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6월 26일 오전 10시, 국방부 정보과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 동두천 지구의 전투에서 적 사살 1,580명, 전차·장갑차 파괴 58, 자동차 파괴 18, 고사포 2문, 적함선 격파 1등의 전투결과와 동일하게 수치화된 전과로 포로 7명을 획득한 것이 기록되어있다.<sup>29)</sup>

또한 포로들은 중요한 '정보원'이자 '정치적 존재'로 여겨졌다. 포로들이 중요한 정보원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은 2차 대전이후 심리전과 정보전이 중요해진 근대적인 전쟁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줄 뿐 아니라, 냉전 세계체제에 편입된 분단 정권 수립과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정치 사회적 과정과 맞물린 한국전쟁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유엔군은 포로를 심문한 것을 통해 적 부대의 위치와 작전, 사기 등 중요한 군사정보를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포로들의 정치적 성향과 활동의 전력 등 정치정보들을 모두 파악하려고 했다. 이 지점에서 포로들은 사상 심사를 통해 분류해서 다르게 대우해야 할 정치적 존재들로 규정되었고, 국민국가

27) 『한국전란 1년지』, C97~98쪽

28) 개계지명 육군본부 작전훈령, 제181호 : 『한국전쟁자료총서』 65, 515~516쪽

29) 『조선일보』, 1950년 6월 27일

에 의해 선택적으로 포섭, 배제되며, 신념조사를 거쳐 교육시켜야할 존재들이 되었다.

중요한 정보원으로서의 포로는 체계적 심문을 통해 심리전에 활용할 도구로 여겨졌다. 1950년 8월 3일 무초 주한 미국대사는 미 제8군의 향후 심리전 계획에 대해 미 국무부에 보고했다. 미8군 정보국의 스투어트(Stewart)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심리전 수행을 위해 심리전 사령부에 세명의 참모를 두고, 세명의 참모는 각각 미8군 정보국, 한국군 장교들과 협조하기 위한 사령관과 전단의 내용을 감독할 편집자, 그리고 적과 적 점령지역에 대한 자료를 보유한 포로 심문센터와 정보국, 다른 부서를 방문할 기자로 이루어진다. 각 사단으로부터 포로를 담당할 한명의 장교를 파견했고, 이 장교는 정보국, 그리고 방첩대를 포함한 자체 구성원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고, 심리전 계획에 필요한 특별 자료를 미8군 정보국에 보내기로 했다.<sup>30)</sup> 정보수집과 심리전에 활용될 포로를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했는가는 소위 '1.4'후퇴 시기인 1951년 1월에 미국이 철수시킬 한국인 명단에 포로 200명을 포함시킨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포로들은 국회의원과 고급 장교, 주요 지도자들과 군인들 다음으로 철수시킬 목록에 포함되었다.<sup>31)</sup>

유엔군 총사령부는 포로를 심리전에 활용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 심리전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쟁포로로부터 자발적인 발언과 다른 유형의 선전 재료를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통제, 확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포로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심리전의 주제들은 일차적으로 '비강제 송환 원칙'에 대한 지지, '송환에 대한 저항', '유엔사령부 심사의 정당성' 등 미국의 포로 정책을 정당화 시키는 것이었다. 동시에 '적 포로가 되면 받게 되는 처우의 가혹함', '세균전의 허위성' 등의 주제는 적군의 선전을 반박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포로는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을 폭로하는 증인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수용소에서의 폭동이 '공산주의자의 명령', '잠입한 공산주의자의 활동', '핵심 공산주의자'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고, 수용소 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소위 반공포로들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대우했음을 증언하게 했다.<sup>32)</sup> 미국이 운용했던 포로 교육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이러한 목적하에 이루어졌다. 수용소 내부에서는 운동경기나 문화 오락활동, 직업훈련도 이루어졌지만, 특히 포로 수용소에 개설되어있는 공식 교육프로그램들, 다큐멘터리 영화나 방송,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한 비공식 교육 프로그램들<sup>33)</sup>이 중심적이었

30) 미국 국무부 정책연구과 문서 Korea Project File Vol. IV : 『한국전쟁자료총서』 29권, 258~259쪽

31) 미 국무부 한국 국내상황 관련문서 XV(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XV) : 『한국전쟁자료총서』 53, 471~473쪽

32) 미국무부 한국국내상황 관련 문서: 『한국전쟁자료총서』 70권, 169~173쪽/521212

다.<sup>34)</sup> 즉 이들은 국제정치에서의 선전전의 필요성, 양측의 세계적 수준의 정치적 정당화에 동원된 것이다.

이처럼 포로들은 전과로 취급되면서 전투 정보와 심리전의 활용자원이 되었고,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자의적으로 학대를 받고 사살되었으며, 죽어서도 양국의 정치적 선전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동시에 그러한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은 체제선전의 필요를 달성하려는 것 이외에는 누구도 추진할 의지가 없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전쟁의 포로는 '이미 억류되어 있는 존재들'에 대한 종합적인 명칭이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 억류자'의 문제<sup>35)</sup>였다. 민간인 억류자들은, 기본적으로 전쟁난민으로 여겨져야 했지만 유엔군의 초기 포로 정책상 모두를 포로로 삼았기에 발생한 존재들이었다. 이들의 존재는 한국전쟁의 내전적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포로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재분류하기 위한 범주로 활용되었다.

1951년 10월 24일자 문서에 따르면, 유엔군은 민간인 억류자들에게도 전쟁포로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율 기준을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민간인 억류자들은 전쟁 규칙과 관례 위반, 한국 법률 위반, 유엔사령관 또는 그가 승인한 대표가 공표한 규율과 규정, 질서 위반, 민간인 수용소장 또는 그가 승인한 대표의 규율과 규정, 질서 위반, "유엔 전쟁포로관리 조항"(1951년 10월 23일) 위반, 민간인 피억류자들 사이의 순조로운 질서와 규율을 적대시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포함한 모든 규율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sup>36)</sup>

유엔군사령부는 1951년 중반에야 '1949년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의 제 4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포로로 수속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놀라운 것은 그 후로 이러한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발생하면 이들을 부역자들을 처벌하고 대량 학살하는데 이용되었던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서 처리했다는 사실이다.<sup>37)</sup> 포로들은 그 지위에서 벗어나 '국민'이 되기까지

---

33) 상영된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은 "유엔현장", "유엔 깃발 아래에서", "유엔기념일", "영국탄광", "영국은 말한다", "청소년 적십자", "결핵을 물리치자", "디트로이트 자동차 노동자들" 등이었고, 배포된 간행물은 한국어판 USIS 주간 세계뉴스 등이었다.

34)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EC, SCAP and UNC, Military History Section, Command & Staff Section Reports, 1947-52, General HQ Far East Command, Entry Secret 1951 Provost Marshal, Box 176

35) '민간인 피수용자'의 지위로 재분류. *FRUS* 1951, 1049쪽

36)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EC, SCAP, and UNC, Military History Section, command & Staff Section Reports, 1947-5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Entry Secret 1951 Provost Marshal Box 176. 민간인 피억류자들에 대한 재판은 유엔군사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했고, 위원회에 귀속된 권한은 여기에서는 미8군 사령관에게 양도되며, 재판은 1951년 10월 6일자 "유엔사령부 군사위원회의 소송 절차에 대한 보충 규정"에 의해 운영하게 했다.

잠정적인 ‘부역자’로서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던 셈이다.

역사적으로 ‘포로’는 전리품이자 죽여도 되는 존재 모든 권리가 박탈당한 존재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송환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에서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원칙이 처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포로는 방금까지도 서로 죽이려고 싸우다가, 사로잡자마자 안전하게 보호해야하는 존재가 되었고, 적은 적이 되 송환될 때까지 대우해야할 적이 되었다. 송환이 중요시되고 포로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가 중시되는 것은 ‘주권국가’들끼리 ‘주권의 작은 대리인’들에 대한 협약의 성격을 반영한다. 즉, 국제사회가 주권을 인정한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생겨났을 때, 무장한 적을 죽이는 무장한 조직에 소속된 ‘국적자(국민)’를 서로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그러한 논리 하에서도 포로들에 대한 폭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 자체에 대한 성격 규정이 분명하지 않고, 지나친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충돌만이 존재했던 한국전쟁에서는 더욱 지나친 권력투쟁만이 남아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포획되어 있다는 기정사실’은 곧 그들이 ‘포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증거가 되었고,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 모호한 난민적 지위에 처해졌다. 포로들은 지나친 폭력과 학살에 노출되면서 동시에 잠재적 전범으로 여겨졌다.

인도주의적 원칙이 더 나아가 ‘포로’들이 국적과 거주지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존재들로 여겨지게 된 상황에서 부터는, 구호뿐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극에 달했다. 포로들은 수많은 예외적 조치들의 자의적 처분대상이 되어갔고, 오히려 극에 달한 인도주의적 구호에 종속된 정보원과 심리전의 재료가 되었으며, 포로 범주에서 벗어난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부역자, 사상심사와 교육을 시켜야할 분단국가의 정치적 존재로 규정되었다.

### 3. 봉암도 사건의 전개와 유엔군사령부의 대응

‘전문적, 광신적 공산주의 선동가’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포로를 법적 규제를 무시한 죄로 재판하는 것은 다수의 포로 대중들에게 결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클라크(Clark), 1953. 1. 5)

이 폭동은 ‘철저한 대폭동 계획’의 일부이다.(유엔군 포로사령부, 1952. 12. 15)

---

37) 조성훈, 1998, 26쪽.

미국은 정전협상 이후 무조건 포로로 포획하던 전쟁초기의 정책과 모순되는 인도주의적 원칙을 천명했고, 이를 반영하여 포로들중 상당수를 ‘포로’의 범주로부터 ‘민간인 억류자’로 재분류하였다. 미국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의 저항에 곤혹스러워 하면서 이들을 심사하고 분리하며 통제를 강화해나갔고, 1952년 중반 이후 미국은 송환과 비송환, 국적, 군인과 민간인 등의 분류로 나뉘어진 포로들을 각지의 수용소로 분산하여 수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포로들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분리시키고, 소규모 집단으로 격리 수용시킨 이후에도 포로들은 저항했고, 관련된 폭력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했다.

봉암도의 포로들은 모두 민간인 억류자들이었다. 다른 세 수용소중 두 개는 거제도에 하나는 근처의 작은 섬에 있으며 모두 한국인 포로들이 억류되어 있었다. 당시 가장 큰 수용소 1은 북 거제에 있으며 45,000명의 포로가 있었고, 거제도 남쪽 끝의 초고리 수용소에는 8천명이, 또 다른 8천명이 용초도에 있었으며, 거제도 바로 서쪽에 있는 봉암도에는 약 9,200명의 민간인 억류자가 있었다.(봉암도의 수용소는 거제도의 지부 수용소(1-C)였다.) 봉암도 수용소는 두 개의 동으로 구성되고 총 수감인원은 9,290명이었다. 당시 수용소의 경비는 한국군 1개 대대(800-900명)와 1개 미국 예비 헌병 중대(약 100명)가 맡았다.<sup>38)</sup>

유엔군 포로사령부의 1952년 12월 15일자 공식 발표에 따르면, 12월 14일 봉암도에 있는 민간인 억류자들의 ‘폭동’으로 인하여 82명이 피살되고 120명이 부상을 입었다. 봉암도에 있던 9천명의 민간인 억류자중 5천 6백 명이 6개수용소에서 야기된 소요에 참가했다. 소요는 제 2구내에 있는 6개 수용소 내에 있는 포로들이 대오를 짜고 군사훈련을 할 때 시작되었다. 한국 경비대와 유엔군경비병이 이를 제지하려고 진입했고, 이들은 수용소내의 가장 높은 언덕 뒤에서 모두 돌을 들고 3열로 대오를 짜고 저항했다. 포로들은 수용소내의 높은 대지를 장악하고 그곳에서 밑에 있는 유엔군에 돌을 던졌다. 유엔군은 경비병들이 이 소요를 진압시키는데 있어서 수류탄을 사용치 않았다고 발표했다.<sup>39)</sup>

그러나 미국 국무부의 회의록에서는 수류탄과 총격 사실이 확인된다. 미 국무부의 존슨은 당시 상황상 최루탄이나 총격수류탄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했음을 지적 했고, 이들에 대한 발표는 특별명령 하에 동시에 단한차례만 발표했음을 강조했다. 그가 보기에 지휘관은 대량 폭동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한 것이었다.<sup>40)</sup>

사건직후인 12월 15일, 조중연합군 수석대표 남일은 유엔군사령부 수석대표 윌

38) 미국무부 한국국내상황 관련 문서: 『한국전쟁자료총서』 70권, 270~275쪽/521219

39) 『동아일보』, 1952년 12월 17일.

40) 미국무부 한국국내상황 관련 문서: 『한국전쟁자료총서』 70권, 270~275쪽/521219

리엄 해리슨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 사건에 강하게 항의했다. 남일은 또 다시 ‘야만적인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었다면서, 이로서 미국이 한국에서의 정전협상을 거부하고 정전협상을 방해하며, 북한과 중국 포로를 살육한다는 사실은 당신측이 한국전쟁을 연장시키고 확대하려 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전쟁범죄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항의했다.<sup>41)</sup> 이러한 항의는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던 정전협정 관련 연락장교회의에서도 한동안 지속되었다. 1952년 12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연락장교회의에서 조중연합군 수석대표 남일은 1952년 10월 이후 제주도, 부산, 거제도에서의 연이은 포로 살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여기고 봉암도 수용소 사건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미국에 요청했다.<sup>42)</sup> 톰린슨(Tomlinson)은 12월 14일의 봉암도 사건 뿐 아니라 10월 1일 제주도 사건에 대해서도 정보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이미 알려진 것 이상의 내용이 없으며 얼버무렸다.<sup>43)</sup>

소련은 1952년 12월 20일, 봉암도 사건을 비난하면서 이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유엔총회에 결의안을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소련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은 봉암도 사건을 ‘휴머니티’ 및 인간도덕의 기본원칙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재한미군당국의 범죄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재한미군 당국은 12월 14일 봉암도의 피비린내 나는 포로들의 폭동에서 공산군포로 84명이 살해되고 11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발표한바 있다.<sup>44)</sup>

북한과 소련의 강한 비판과 영국의 보고요청 등 부정적인 세계여론에 직면한 미국은 봉암도 사건을 포로와 관련된 자신들의 ‘비강제 송환’ 원칙에 대한 세계여론의 지지가 쇠퇴하는 계기로 인식했다. 미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이 성공했음을 인정’했고, 이전의 거제도 사건 이후로 서서히 복구되고 있던 유엔군의 전쟁포로 관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평가했다. 12월 21일 봉암도에 대한 소련의 결의안에 대해 아랍과 아시아가 기권을 표시한 것도, 봉암도 사건에 대한 유엔군의 처리방식에 대한 의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이 사건에 대해 연설을 했지만, 봉암도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 공개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즉, ‘더럽고 기운 없게 보이는 포로들이 부상을 입은 상태로 철조망을 넘고, 미군의 총검을 따라 비틀거리는 사진’은 클라크 발표의 효

41) 1952년 12월 16일 판문점에서 열린 연락장교회의 (Liaison Officer's Meeting, Held at PanMunJom, 16 December 1952)

42) 『동아일보』, 1952년 12월 20일

43) 미국무부 한국국내상황 관련 문서: 『한국전쟁자료총서』 70권, 270~275쪽/521219

44) 『동아일보』, 1952년 12월 23일

과를 무색하게 해버렸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미국은 이것이 단순히 선전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사진에는 미군 병사가 있었고,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노래하고 행진하는 수용동 안의 비무장 포로에게 미국이 발포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은 봉암도나 제주도에서와 같은 사건들을 포로의 인명을 크게 손실시키지 않고 다룰 수 있게 하는 기법이나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전체 한국 상황에서 포로 관리 문제가 앞으로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을 인식해야하며,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5)</sup>

그러나 이러한 ‘반성적’ 시각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다. 즉, 미국은 포로수용소를 공산주의자들의 거대한 음모와 연결된 또 다른 전쟁터로 여겼고, 포로들은 스스로 자기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생명에 연연해하지 않는 광신적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군부는 이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조장된 ‘철저한 대폭동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을 선전을 극대화하고 미국의 포로 관리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흔들기 위해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1952년 12월 19일 국무부의 한국문제 회의에서 존슨(Johnson)은 이러한 의미에서 전쟁포로는 그자체로 한국 상황의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존슨은 전쟁포로 폭동은 직접적인 군사적 목적 뿐 아니라 심리학적이고 정치적이고 선전적 목적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봉암도 사건의 발생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유엔군이 전쟁포로를 통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 몰리면’, 전선에서 이루어지는 선전이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반란이 성공하면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분리시키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포로들을 통제하는 유엔군은 ‘소수의 무장집단’으로서 모든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그들을 육체적으로 진압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고, 포로통제를 위해 무력을 수용소로 이동시키는 것은 전선에서의 군사력 손실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폭력사용 외에는 출구가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조직이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포로에 대한 발포명령은 단 한차례의 특별명령이자 최소한의 무력사용인 것으로 정당화되었다.<sup>46)</sup>

결국 봉암도 사건은 적과 배후, 세뇌와 거대한 음모, 폭동계획과 같은 진압당국 특유의 편집증적 해석<sup>47)</sup>들로 인해, 포로에 대한 통제력을 갖기 위해 ‘그동안

45) FRUS 1952, 718~719쪽/521229

46) 미국무부 한국국내상황 관련 문서: 『한국전쟁자료총서』 70권, 270~275쪽/521219

47) 이러한 인식은 봉암도 사건이후인 1953년 1월 29일자로 극동사령부가 작성한 보고서, ‘The Communist War in POW Camps - The Background of Incidents Among Communist Prisoners in Korea’에 집약되어 드러나 있다. 『남북관계사료집』 12, 358-412쪽.

취한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추가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봉암도 사건이후 미국은 정전협상과 유엔총회, 외교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심했을 뿐 아니라, 포로수용소의 또 다른 통제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미 감금과 심사, 분류와 격리, 세분화와 고립의 단계를 거쳤기에 그것을 넘어서 제도화된 통제를 시도하려 했다.<sup>48)</sup>

미국은 전쟁포로를 재판관을 통해 처벌하려고, 사법적 절차는 통제와 진압의 기술로 도입이 추진되었다. 전쟁포로에 대한 재판<sup>49)</sup> 절차의 도입은 1951년 8월부터 시작되었으나 1952년 7월부터 클라크 유엔사령관의 요구로 본격화되었다.<sup>50)</sup> 그러나 미 국무부는 재판을 실시하는 것의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많다고 판단했다. 재판은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선전공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정전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유엔군 포로들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아울러 포로들에 대한 재판이 향후 폭동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sup>51)</sup>

당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16,000명의 남한출신 포로의 석방과 유엔군 산하 포로 수용소에 포로재판관을 설치할 것을 동시에 요청했다. 1952년 8월 25일 미 국무부는 포로 석방은 별 문제가 없지만 포로재판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포로 재판을 위한 군사위원회가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포로수용소에서는 매일 매일 사망사건을 포함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지만, 부산 주재 미 대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보트너(Boatner) 소장의 지휘로 통제력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무부가 더 중요시 했던 점은 현 시점에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 즉 재판 과정이 선전의 장이 되는 경우 미국이 겪게될 곤란들이었다.<sup>52)</sup> 주한 미대사 브릭스 역시 포로들에 대한 재판과정은 '거짓 기소와 판결이 널리 알려지는 공개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여 재판에 반대했다. 브릭스는 포로수용소 내부의 상황과 질서유지, 규율의 문제 뿐 아니라 전쟁 포로 문제를 정치적 전략과 목적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sup>53)</sup>

그러나 클라크의 입장은 강고했고 지속적이었다. 봉암도 사건 이후인 1953년 1

48) *FRUS* 1953, 726~727쪽/530123

49) '체내법 협정'은 제 3장 형벌 및 징계법에서 포로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82조는 포로는 억류국의 군대에 적용되는 법률, 규칙 및 명령에 복종해야하고, 억류국은 사법상 또는 징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3조. 군대에 적용되는 형벌 이외의 형벌은 가할 수 없다.

50) 1952년 8월부터 클라크는 지속적으로 재판관을 요구했다. 『남북관계 사료집』, 281 - 291쪽.

51) *FRUS* 1952, 449-451쪽

52) *FRUS* 1952, 459~461쪽

53) *FRUS* 1952, 717~718쪽/521225

월 5일, 클라크는 사법적 권한 없이 지휘관의 규율적 처벌만으로는 효과적인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포로문제가 선전에 이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재판을 잘 통제하고 엄숙하게 치르면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형선고를 하더라도 수용소내부의 '전문적 선동가들'을 저지하지 못할 것에 동의하지만, '전문적, 광신적 공산주의 선동가'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포로를 법적 규제를 무시한 죄로 재판하는 것은 다수의 포로 대중들에게 결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폭력사태는 여전히 지속적이고 정부의 명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클라크는 포로와 민간인 억류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공산주의자들의 '무원칙적이고 사악한 활동과 투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했다.<sup>54)</sup> 1953년 2월, 클라크는 또 다시 자신에게 포로들에 대한 재판 권한을 줄 것을 요청했다. 포로에 대한 재판은 유엔군 병사들에 대한 군사재판과 형평성의 문제로 여겨졌다. 클라크는 포로의 소요에서 미군 병사가 죽는 경우 사건의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해 처벌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sup>55)</sup>

소위 '범법포로'의 재판이라는 주제는 1953년 2월 6일 미 합동참모본부 회의에서의 논의로 더욱 진전되었다. 이 주제에 대해 미 국무부의 알렉시스 존슨(U. Alexis Johnson)은 포로를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유엔의 전쟁포로 두 번째는 유엔군 통제하의 송환거부 포로, 세 번째는 유엔군 통제하의 송환 희망 포로. 세 번째 범주의 포로들에 대해서 재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했다. 재판의 정당성 문제, 선전문제, 전쟁포로를 통제하는데 새로운 형태의 무기를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 마지막으로 포로의 재판에 영국 등 다른 국가가 참여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문제가 그것이었다. 미 국무부는 '범법포로'를 1) 폭동과 시위, 다른 포로들에 적대적인 행위에 참가하거나 선동한 포로와 2) 최근 유엔사령부 경비대원들에게 극악한 공격을 하는데 참여한 개별 포로들이라는 두 범주로 나누었고, 첫 번째 집단에 대해서는 독방구금 같은 교정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낫지 재판이 반드시 필요한지 확신할 수 없으며 '사형'을 부과할 경우 추가적인 정치적, 법적, 공보적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았다. 예컨대 사형당한 포로는 공산측과 포로들 사이에서 '순교자'로 추앙될 것이며 또 다른 폭동의 발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집단의 경우는 즉각적으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미 국무부는 포로들을 광신적 포로와 잠재적 범죄자들을 '고분고분한 포로들'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 해법이며 새로운 형태의 구토 가스(vomit-gas)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54) *FRUS* 1953, 722~723쪽/530105

55) *FRUS* 1953, 732~733쪽/530204

56)

포로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과 국제정치적 갈등 요소에 대한 우려에서 ‘폭동을 진압’하려는 담당기관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 결과 포로에 대한 사법적 처벌, 즉 사형을 부과하기 위해 포로들의 범주를 구분하고 처벌해도 안전한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분리기법들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포로의 폭동이 세가지 차별적 범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는 1952년 5월 제주도 폭동이전의 폭동으로 이는 주로 포로수용소에 대한 강한 통제가 결여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두 번째는 ‘제주도 사건’ 이후의 폭동으로 포로사령부는 폭동의 지도자들을 식별해내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세 번째 범주는 최근의 사건으로 미국과 유엔의 경비들이 공격을 당했다는 것이 새로운 측면으로 지적되었다. 합동참모본부 회의는 국무부가 약간의 회의적 의견을 표명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견 없이 유엔 경비를 공격한 세 번째 범주에 대해서 클라크가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sup>57)</sup> 결국 합동참모본부는 모든 전쟁포로에 대한 재판권한이 아닌, 유엔사령부 경비병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포로들을 재판할 권한을 (1950년 7월 7일 SC 결의안에 따라) 통합사령부의 권한으로 허가했다. 아울러 재판은 제네바 협약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될 것이 강조했다.<sup>58)</sup>

그러나 클라크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종류의 폭력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기를 요청했다. 유엔군 경비병에 대한 폭력만을 사법적으로 재판하는 것은 유엔국가들의 참여를 저지할 수 있고, 폭력의 희생자 대다수가 같은 전쟁포로들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유엔군의 규율 권한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클라크는 제네바협약의 인도주의적 원칙이 같은 전쟁포로들 간의 폭력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협약이 원래 보호하려는 사람을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러한 포로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제네바 협약의 13조와 121조에서 부과된 의무와 부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포로 수용소 내부의 반공주의자들, 공산주의 포로들중 무관심한 부류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클라

---

56) FRUS 1953, 735~736쪽/530205

57) FRUS 1953, 737~741쪽/530206

58) FRUS 1953, 790~792쪽/530220. 포로의 처우에 대한 제네바 협약의 99조는 미국의 법과 한국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법, 혹은 국제법에 금지된 것에 따라 범죄로서 분명히 인식되는 행동에 대해서만 포로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따라 재판은 문명화된 국가의 최고의 표준에 따라 수행될 것이며, 제네바 협약의 적절한 조항들에 따라 감시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크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폭동과 시위는 전체 포로문제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별도의 범주로 간주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유엔경비병들에 대한 폭력행위 가해자만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적십자(ICRC)와 우방국들의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 반공주의자들과 전쟁포로 중 질서 있는 분자들에게 배신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불가피하게 선전 재료가 될 것이며,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누락되는 지점을 드러내어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sup>59)</sup>

1953년 2월 27일, 결국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클라크에게 부여된 권한을 포로의 분리나 재배치 이후에 발생한, 다른 전쟁포로들에게 폭력행위를 한 전쟁포로를 재판하는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시켰다. 과거의 폭동이나 시위를 제외하고는 이후에 발생한 폭동이나 시위에 참여하거나 선동한 전쟁포로를 재판할 권한도 승인했다.<sup>60)</sup>

이후 미국은 재판을 위해 군사위원회를 다자주의적인 유엔의 성격을 갖게 되기를 바랐고, 클라크는 유엔 참전국들의 사령관들에게 군사위원회에 군 요원들을 참여시킬 것을 각국에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영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나라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영국은 미국이 유엔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유일한 ‘억류 권력’이므로 미국의 절차하에 이러한 사법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영국이 이러한 재판에 참여할 경우 공산군의 통제하에 있는 영국군 포로의 안위를 우려했다.<sup>61)</sup>

실제로 미국이 포로들에 대한 재판을 통해 폭력을 저지른 포로들을 재판을 통해 사형시켰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미국이 민간인 수십명을 총으로 살해한 봉암도 사건 이후 국제적 비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상황을 해석했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자신들이 자행한 폭력은 ‘정당한 조치’라고 여기면서 포로수용소를 공산주의자들의 거대한 음모, 철저한 대폭동 계획과 연결된 전쟁터로 여겼다. 동시에 포로들은 스스로 자기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생명에 연연해하지 않는 광신적 존재들이라고 여겼다. 미국은 이 사건 자체를 국제 여론을 상대로 한 선전을 극대화하고 미국의 포로 관리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흔들기 위해 이용했다고 이해했다. 이러한 이해 하에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들에 대한 ‘재판’이라는 사법적 제도는 ‘공산주의자들의 무원칙적이고 사악한 활동과 투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도입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포로들을 ‘광신적 포로와 잠재적 범죄자들’을 ‘고분고분한 포로들’로부터 분리해내는 해법의 하나라고 여겼고, 추가로 새로운 구토 가스

---

59) *FRUS* 1953, 793~795쪽/530224

60) *FRUS* 1953, 801쪽/530227

61) *FRUS* 1953, 804~805쪽/530304

(vomit-gas)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4. 반공포로 석방 기획의 전후 : 예정된 미디어 이벤트

한국은 모든 신체건강한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반공주의자들을 계속해서 '친공주의 포로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떻게도 정당화 할 수 없다. (이승만, 1953. 3. 20)

'강제송환'은 송환이 아니라 '반공포로'의 국적 박탈이며 이들은 보복과 징벌을 당하게 될 것(1952년 1월 22일, 정전협정 유엔 대변인)<sup>62)</sup>

봉암도 사건이후 논의된 포로에 대한 정책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에 대한 처리문제였다. 포로를 석방시킨다는 발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개념상 '범죄자'는 '석방'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포로'는 '송환'되는 존재이다. 그런데 정전협상이 진행되며 유엔측은 '자유송환' 원칙을 내걸고 몇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범주의 포로들을 포로 명단에서 삭제하고, 민간인 억류자로 분류하고, 반공포로로 명명해 감시하에 석방시키는 조치들을 취했다. '포로'들은 포로정책의 산물에서, 전쟁의 산물이자 협상의 애매한 범주로, '둘러 보내야 할 적'에서 '포섭해야 할 정치범'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명칭은 '남한출신 북한군 포로'에서 '민간인억류자'로 다시 '반공포로'로 변해갔다.

'이승만의 결단'이라는 신화로 알려져 있는 '반공포로 석방'은 미국이 국제적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인도주의 원칙'이라는 명분을 지키고, 동시에 남한의 체제 역량을 강화시키는 두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린 산물이다. 여기서 우리는 포로석방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로를 석방시키려는 기획이 시작된 것은 '인도주의적 원칙'이라는 거창한 명분 때문이 아니었다. 전쟁의 급작스러운 발발과 전세의 변동에 따른 전선의 이동, 남과 북의 병력 동원과 무원칙적인 포로정책 등의 결과 십 수만명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고, 유엔군은 이들을 관리하고 억류해야했다.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는 1950년 10월 25일 포로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일이 어려워지자 원 거주지가 38도선 남쪽이고 신분확인 등 처리가 완료된 포로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안전보장을 받는 즉시 모두 석방할 것을 고려하도록 미 제8군 사령관에게 지시했다.<sup>63)</sup> 한국정부는 미 8군의 요청에 따라 1950년 11월부터

62) 미 국무부 한국 국내상황 관련문서(Records of the U. 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 『한국전쟁자료총서』 61, 264~267쪽

국방부에 국방부, 내무부, 법무부, 문교, 사회부 국회의원, 판검사, 경찰간부 등으로 구성된 포로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시작했다.<sup>64)</sup> 약 5개월간(1950년 11월 17일~1951년 4월 17일)의 심사 결과 47,472명중 39,719명을 석방 예상자로 분류하고 7,753명을 계속 억류할 대상으로 분류했다.

표 : 국방부, 포로 심사 통계표(1951년 4월 17일)<sup>65)</sup>

월별	1950. 11		1950. 12		1951. 1		1951. 2		1951. 3		1951. 4		계		총계
	석방	억류	석방	억류	석방	억류	석방	억류	석방	억류	석방	억류	석방	억류	
서울	261	26	1,823	258	2,188	273	6,506	903	349	42	552	91	11,676	1,593	13,269
경기	151	27	1,167	615	1,780	840	3,719	708	272	26	504	81	7,593	2,297	9,890
충북	120	11	1,456	69	1,585	58	1,129	63	43	-	129	11	4,462	212	4,674
충남	92	70	901	325	1,285	296	715	134	22	-	50	7	3,065	832	3,897
전북	161	51	884	307	856	363	269	62	-	-	2	2	2,172	785	2,957
전남	156	21	1,305	246	694	117	168	45	-	-	9	6	2,332	435	2,767
경북	81	42	1,173	377	1,458	43	547	32	-	-	35	3	3,294	496	3,790
경남	87	22	594	121	626	109	114	16	-	-	16	1	1,437	269	1,706
강원	156	24	1,095	215	1,199	321	1,087	264	28	-	123	10	3,688	834	4,522
계	1,265	293	10,398	2,533	11,671	2,420	14,251	2,227	714	68	1,420	212	39,719	7,753	47,472

1951년 2월, 국방부 차관은 국회에서 국방부가 포로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3만 명의 '사상'을 심사했고, '6천여 명의 용의자들'을 제외한 4만 명, 그 중에서도 남한출신 의용군 2만 4,000명에 대해 석방할 것을 결정하여 미 8군의 승인을 얻어 곧 석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출신자에 대하여도 8군에 심사를 교섭 중이라고 언급했다.<sup>66)</sup> 이처럼 포로에 대한 심사는 일종의 '사상'심사였고 한국의 군과 국회는 이후 계속해서 석방 예상자로 분류된 소위 '남한출신 의용군'의 석방을 요구했다.

1951년 2월에 이미 명단을 작성하고 석방하기로 결정한 남한 출신 포로들은 이후에도 쉽게 석방되지 않았다. 그러자 한국정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이들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남한 출신 의용군들을 석방해야한다는 명분은 그들이 '적의 희생자들'이라는 것과, 그들을 '경제적, 군사적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 8군사령관 리치웨이는 단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유엔군총사령관의 판단을 기다렸다. 한국정부가 가장 곤혹스러워 했던 것 중의 하나는 포로 14만 명에게 1일 3식의 급식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당시 한 신문은 이 상황을

63) 김행복, 1996,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쪽.

64) <대통령령 제486호 포로심사위원회 규정>(1950년 11월 25일), 『한국전란 1년지』, C66~67쪽

65) 『한국전란 1년지』, D3쪽

66) 『동아일보』, 1951년 2월 18일

‘인플레이에 허덕이는 한국정부는 그들에게 1일 3식의 급식을 위하여 빈곤의 국고를 털어야 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했다.<sup>67)</sup> 국회는 1951년 5월 22일, 남한 출신의 포로 4만여 명의 석방을 UN총회와 미국 대통령, UN군 당국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켰다.<sup>68)</sup>

그런데 이후 ‘남한 출신 의용군 포로’를 석방시키는 것에 또 다른 이유가 추가되었다. 1951년 5월 31일 부산시 서면의 도로에서 호송되던 수천 명의 포로들이 ‘인민항쟁가’를 합창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호송병은 공포탄을 발사해 이를 제지하였으나, 포로들은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민을 사랑 한다”고 외치며 비누, 셔츠, 양말, 담배 등 구호품을 내던졌다. 한 언론 보도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포로 중에는 정치장교들도 있고 또 공산주의의 광신자들도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현재 유엔군의 포로에 대한 인도주의적 우대정책이 혹 그들의 음모의 동기를 주는 일이 없을까’하는 우려를 제기했다. 남한 출신 포로들이 ‘공산주의 광신자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석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69)</sup> 한국정부와 국회는 9월 무렵까지 ‘사상이 악화될’ 남한 출신 포로들을 시급히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sup>70)</sup>

‘남한 출신 포로’들은 단순한 희생자나 경제적 부담으로 여겨지다가, 이데올로기에 감염될 수 있는 양민들로 여겨졌고, 점차 적극적인 ‘애국 반공 투사’들로 규정되어갔다. 1951년 12월, 거제도 65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500명의 남한 출신 포로들은 국회로 석방을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다. 언론에 따르면 그들은 또한 500명 각각이 ‘조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최후의 피한방울까지 땀공에 바치겠다’는 혈서를 써 보냈다.<sup>71)</sup> 이에 국회는 1952년 1월, 이 ‘애국청년’들을 석방하여 ‘땀공전선에 나가 싸우도록’ 국방부에 건의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sup>72)</sup> 이렇듯, 포로들을 심사하고 석방시키는 과정은 1949년부터 보도연맹을 ‘전향한적’으로 규정해 가두고, 심사한 후, ‘충성스러운 반공 국민’임이 확인되고 스스로 맹세할 경우 ‘탈맹’시키는 과정과 동일한 성격과 절차를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포로 석방’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무엇이였을까 이미 맥아더가 8군을 통해 한국정부가 포로를 심사하고 분류하도록 지시했던 것처럼, 미국 또한 이러한 조치를 끊임없이 논의하고 추진했다. 미국은 정전협상과 국제무대에서

67) 『동아일보』 1951. 4. 10

68) 『부산일보』, 1951. 5. 23

69) 『동아일보』, 1951. 6. 12

70) 『서울신문』, 1951년 09월 10일

71) 『자유신문』, 1951년 12월 13일

72) 『자유신문』, 1952. 1. 18

‘자유송환’원칙을 제기하게 되는 무렵부터 ‘송환 거부포로’의 석방을 검토하고 계획했다. 미 국무부와 육군부는 미합동참모본부가 심사를 통해 송환거부 포로를 확정하자고 제안 한 것을 1951년 2월 25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트루먼은 송환 거부자에 대한 일방적 석방안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sup>73)</sup>

‘포로’에 대한 송환이 아닌 ‘석방’은 법률적인 근거도, 국제적 유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군부가 시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1951년 2월 12일, 미국의 법률고문 피셔는 맥아더(MacArthur)가 북한인들을 억류하거나 석방할 권한을 달라는 요청에 대해, 군 사령관으로서 정치적인 행위인 일반 사면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면의 허용은 범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이고, 이후의 형사소추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북한인들의 사면은 이후 합법적인 민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sup>74)</sup>

그러나 석방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더욱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51년 4월, 미 8군사령관 밴플리트(Van Fleet)는 남한 출신 포로의 석방을 유엔군사령관 릿지웨이에게 건의했다. 3만 7천여 명의 포로를 석방하는 것은 전체 포로숫자의 1/4이상을 감축시키는 ‘작전’이었고, 한국정부가 포로 석방 후 일정기간 그들을 감시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 시켰다.<sup>75)</sup>

1951년 6월, 릿지웨이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안전을 문제로 거부했다. 그러나 미 국무장관은 8월에 국방장관 마셜(Marshall)에게 북한군에 강제로 편입된 한국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돌아가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아무런 답신이 없자, 1951년 10월, 미 국무부 내부에서는 또 다시 휴전협정의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이유로 석방문제를 재검토해야한다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가 국방부에 남한 출신의 4만 명의 포로들을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76)</sup>

미 국무부는 이미 1951년 9월부터 포로를 석방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전략적 목적과 이유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정부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면 국방부도 고려해야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국무부의 판단은 전략적인 것이었다. 즉 포로의 석방시기와 관련해서는 정전 협정 직전에는 시기가 민감하여 석방하기가 곤란하니 미리 석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한국정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니 한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

73) 조성훈, 1998, 176-77쪽; 『남북관계사료집』 12, 112-115쪽

74) 미 국무부 한국 국내상황 관련문서 XVII(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XVII): 『한국전쟁자료총서』 55, 173~176쪽

75)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EC, SCAP and UNC, Military History Section, Command & Staff Section Reports, 1947~52, Top Secret 1951, Box 348

76) 『한국전쟁시기 북한군 포로관계 문서(1950~1954): 남북한관계 사료집』 12, 64쪽

았다. 또한 석방된 포로들을 ‘건설적 목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으며, 수용소 내부에서 유엔과 남한에 반대하는 포로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하는 목적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국무부는 국방부를 통해 릿지웨이에게 석방 권한을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sup>77)</sup>

유엔군사령관 릿지웨이는 결국 1951년 10월, 포로의 석방을 위한 방안을 합동 참모본부에 제안했다. 이들을 석방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치는 포로들에 대한 재심사와 재분류였다. 그에 따르면, 1951년 10월 16일 현재 유엔사령부에 ‘전쟁포로로 분류된 약 41,000명의 남한 주민들(릿지웨이의 표현)’이 수감되어 있고 이들을 ‘전쟁포로’ 상태에서부터 “민간인 피수용자”의 지위로 재분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석방계획은 1차로 1,200명을 석방하여 그들이 ‘성공적으로 동화’되면 일주일에 1,000명씩 추가로 석방할 계획이었다. “민간인 억류자” 지위로 재분류하는 것은 정전협상에서 ‘송환 원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립에 연관된 ‘포로’의 지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조치였다. 이는 포로들을 관리하는 유엔사령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으며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들도 재분류 조치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그는 정전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공문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sup>78)</sup>

미 8군의 니콜스 준장은 1951년 12월, 한국 국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응답하여 남한 출신 포로를 석방하겠다고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였고, 이기붕 국방부장관은 이들을 재심사를 통해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고 석방 후에 병역 의무를 질수 있게 될 것이며, 귀순병도 심사 후 포섭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sup>79)</sup>

이렇게 진행된 남한출신 포로들의 석방은 이로부터 6개월 후인 1952년 6월 말부터 시작되었다.<sup>80)</sup> 1952년 6월 23일, 유엔군 총사령부는 당시 영천과 부산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던 2만 7천명의 남한 출신 ‘민간 억류자’를 한미 양국간의 합의 하에 석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유엔군 총사령부가 석방할 민간 억류인들은 1951년 12월 18일에 판문점에서 교환한 포로 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유엔군측은 이들이 억류된 것은 ‘공산군이 민간인의 의복을 입고 유엔군 전선에 침투하려는 전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행하게 억류되었다고 선언하였다.<sup>81)</sup>

77) 『한국전쟁시기 북한군 포로관계 문서(1950~1954) : 남북한관계 사료집』 12, 65-66쪽

78) *FRUS* 1951, 1049쪽

79) 『자유신문』, 1951년 12월 21일

80) 6월부터 8월말까지 28,504명, 1952년 10월부터 다시 남한출신 16,000명중 민간인 억류자로 재분류한 11,407명을 석방하여 총 39,464명을 석방했다.

포로석방은 6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1차로 각 도별 200명씩 1,500명을 석방하기로 하였다. 장택상 국무총리는 6월 24일 각 도지사에게 통첩을 발하고 석방 이후의 대책을 지시했는데, 이들에게는 분산 개시 전에 도민증을 교부하기로 하였고, 각도 분산지까지의 수송은 미 제8군 제2병참사령부가, 그 이후는 한국 측이 담당하기로 했다. 이들은 ‘선량한 국민’이 되었다고 인정될 때 까지 경찰의 감시를 받게 했다.<sup>82)</sup>

포로들의 석방은 4개월간에 걸친 미디어 이벤트였다. 언론에는 수차례에 걸쳐 석방될 억류자들 명부가 공개되었고<sup>83)</sup>, 52년 10월까지 석방이 진행 4개월간 이들의 석방과 이들이 제출한 혈서, 이승만이 참석한 석방기념식, 이들에게 즉시 배부되는 ‘도민증’ 등의 내용들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다.

남아있는 남한출신 포로들의 석방은 ‘민간인 억류자’로 분류된 포로들의 석방이 진행되던 시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52년 7월 7일, 유엔 군사령관 클라크는 포로송환과 관련한 자신의 구상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다. 클라크는 남한 출신들 한국인 38,100명(11,700명의 남한 포로와 최근 석방된 26,400명의 민간인 억류자)을 곧장 귀향하도록 석방될 범주의 포로로 분류했다. 클라크는 송환 거부자들 중 억류중인 송환거부 북한포로를 석방하는 것은 한국군 포로를 전쟁 포로 신분에서 풀어주고 그 대부분을 북한군에 편입시킨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필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석방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sup>84)</sup>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송환거부자들에게는 임시로 피난민이나 난민(DPs)과 유사한 신분을 부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북한군의 출신 고향에 대한 클라크의 판단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했다.<sup>85)</sup>

1952년 8월 클라크는, 남아있는 남한출신 전쟁포로 16,000명중 11,000명이 심사를 통해서 송환을 거부했고, 이들을 격리하여 마산에 있는 제12 수용소로 옮겼다면서 이들을 억류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정당화하기는 힘들기에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한 정부가 계속 요청해온 것과 지난 몇 달간 공산측이 남한출신 포로들의 송환요구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석방이 가능한 조건의 하나로 여겼다. 클라크는 포로의 범주에 드는지 의문이 생기는 자에 대해 관할재판소에 의해 결정될 때까지 포로로서 대우한다는 1949년 제네바협정 제5조<sup>86)</sup>의

81) 『동아일보』, 1952년 6월 23일

82) 『조선일보』, 1952년 6월 27일 ; 『관보』 : 통첩 사회 제405호 민간인 억류자 석방 및 원호에 관한 건

83) ‘석방될 억류인 명부’, 『동아일보』, 1952. 6. 28 - 7. 5.

84) FRUS 1952, 380~382쪽

85) FRUS 1952, 411~412쪽

포로에 관한 규정이 포로 석방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클라크는 이들의 석방이 정전협정이나 유엔군 포로에 대한 보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민간인(억류자)을 석방 했을 때와 유사한 절차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즉 석방과 동시에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공산측이 이에 반발할 경우 이들은 ‘대한민국에 충성을 맹세한 한국국민임’을 밝혀 대응한다는 것이었다.<sup>87)</sup>

미 국무부는 클라크의 요청에 대해 16,000명의 남한출신 포로의 재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석방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향후 정전협상과 관련된 유엔사령부의 대응이 실패할 경우에는 석방할 수도 있지만, 모든 비송환자들이 석방되기 전에 석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sup>88)</sup>

‘민간인 억류자’들의 석방이 마무리된 직후인 1952년 11월부터 포로석방 논의가 더욱 본격화되었는데, 브래들리 장군은 당시 유엔총회에 제시된 인도측 대표 메논의 포로 관련 중재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중국 포로들을 경제적 동요없이 흡수하긴 어렵지만 북한인들은 남한에 흡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sup>89)</sup> 미 국무부장관 애치슨은 인도의 결의안에 대해 논하면서 송환을 거부한 포로들의 석방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송환 거부 포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에 동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sup>90)</sup> 애치슨은 이후의 논의에서도 ‘송환 거부 북한 포로’를 석방시키는 것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복하여 주장했다. 그들을 석방시키는 것은 ‘코네티컷의 사람을 뉴저지에서 석방하는 것’과 같고, 같은 언어를 말하고 같은 문화를 갖고 있으며, 같은 나라의 다른 지역에 사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송환거부 중국포로들도 수십만의 팔레스타인 난민과 관련해 생겨난 문제보다는 분명히 나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sup>91)</sup>

소위 ‘반공포로’들의 석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만든 계기는 유엔 총회에서의 전쟁포로 관련 결의안 통과와 그에 대한 공산측의 거부였다. 1952년 12월 3일, UN총회에서는 전쟁포로에 관한 결의안 610(VII)이 채택되었다. 이는 인도의 제안에 미국의 수정이 가해진 내용. 포로의 송환을 위해 4개 중립국으로

86) 제 5조. 본협정은 제4조에 말한 자에 대하여 이들이 적의 권력 내에 들어간 때부터 그들의 최종적인 석방과 송환 때까지 적용된다. 교전 행위를 행하여 적의 수중에 빠진 자가 제4조에 열거한 부류의 하나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그러한 자들은 그들의 신분인 관할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될 때까지 본협정에서 보호를 향유한다.

87) FRUS 1952, 456~458쪽

88) FRUS 1952, 459~461쪽

89) FRUS 1952, 637~645쪽/521116

90) FRUS 1952, 645~647쪽/521117

91) FRUS 1952, 653~657쪽/521117

구성된 송환위원회를 구성하고, 송환은 인도적 원칙에 따라 수행되며, 비무장 지역으로 이동된 후에 석방될 것이며, 정전협정 이후에도 송환되지 않은 포로는 정치회담에 따라 처우를 결정할 것을 밝힌 결의안이었다.<sup>92)</sup> 공산측은 이를 거부했고, 미국은 또 다시 대응책을 고민하면서 송환거부 포로들의 처리계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1952년 12월 16일, 미국은 공산측과 송환거부 포로의 처리방식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가망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유엔사령부가 송환을 거부하는 한국·중국 포로들을 즉시 ‘정치적 난민’으로 재분류하여 남한정부의 통제 하로 넘기고, 중국인들은 원하는 곳으로 이송하자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미 8군이나 유엔군사령부 차원이 아니라 약간의 반대를 하고 있던 미 국무부도 완전히 돌아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포로문제 해결에 관한 미국의 우방국들간의 의견불일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쟁포로문제의 협상가능성을 아예 없애, 이후 정전협상에서 공산측이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자신들의 원칙도 항복하지 않을 여지를 마련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는 유엔의 비강제송환이라는 원칙에 내재한 선전과 정치전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기반을 제공하며, 단호한 조치를 통해 공산 측이 이 문제에 대해 타협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우방국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일방적 조치로 여겨질 경우 겪을 어려움과 공산군이 억류한 유엔포로들에게 보복이 가해질 가능성 등이 단점으로 분석되었다. 국무부는 이러한 조치를 미국정부의 승인을 받으려 했다.<sup>93)</sup>

1953년 1월 미국무부 극동문제담당 차관보 앨리슨은 ‘반공주의 전쟁포로’의 처리방안에 대해 국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는데, 향후의 몇 주간이 동맹국들에게 동의를 얻어 비송환 포로들을 일방적으로 석방할 결정을 선포할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다.<sup>94)</sup> 포로들을 완전히 석방하는 데에는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필요하며, 석방 개시와 동시에 공식 발표를 하기로 했다. 비송환 포로의 수는 한국인 34,000명, 중국인 14,000명이라고 보고했다. 국무부는 클라크와 합동참모본부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으려 했고 동시에 동맹국에도 동의와 암묵적 승인을 얻으려 했다.<sup>95)</sup> 3월 6일 미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회의에서 코그스타드(Kogstad) 대령은 132,000명의 전쟁포로중 35,000명의 북한인들

---

92) *FRUS* 1952, 702~705쪽

93) *FRUS* 1952, 713~715쪽/521216

94) 총회가 열리기 전에 석방을 선포 하지 못하면 총회가 휴회될 때까지 미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5) *FRUS* 1953, 727~729쪽/530123

은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회의에서 35,000명의 북한인들의 석방은 실행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실행하기가 쉽다고 판단했다. 국무부는 포로석방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당시 포로석방의 불이익은 ‘일방적 조치’에 대한 비판과 유엔 전쟁포로에 대한 보복, 북한 내부로 유엔 포로들 중 동일한 비율을 석방하는 것 등이었다. 이에 비해 이러한 조치의 장점은, 유엔사령부 입장에 대한 최종적 증거를 제공하고, 북한인들이 남한 민간인으로 질서 있고 평화롭게 통합되면, 전향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고, 정전 협정에서 전쟁포로문제는 몇가지 쟁점들로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었다.<sup>96)</sup>

주한 미대사 브릭스도 반공주의 포로의 석방계획을 지지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반공포로의 석방이 없다면 ‘그동안 배신자 프로그램(defector program)과 심리전 활동의 핵심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그는 이미 ‘워싱턴에서 기반작업과 계획, 적절한 논의’가 충분히 개진되었다고 보며 지금이 반공주의 전쟁포로들을 활용할 시기라고 주장했다.<sup>97)</sup>

석방 시점에 대한 판단은 이승만과도 일치했다. 1953년 3월 이승만은 브릭스와 의 면담에서 지금이 반공포로 석방의 ‘유일무이하고 훌륭한 기회’이며, 시간이 촉박하여 즉시 실행해야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브릭스는 이승만이 반공주의 포로들을 석방할 실질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믿으며, 시의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선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국무부로 보고했다.<sup>98)</sup> 이처럼 ‘반공포로 석방’의 기획은 ‘민간인 억류자’들을 석방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정전협상에서 미국측이 ‘송환거부 포로’를 송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 ‘자원송환 원칙’에 타협할 여지가 없음을 보여 북한을 압박하고, 미국의 인도주의를 부각시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이승만과의 암묵적 동의하에 추진되어 왔던 것이었다.

그런데 스탈린 사후(53년 3월) 1953년 4월 26일부터 6개월간 휴회되었던 정전 회담이 재개되고 협상이 급속히 진행되자 ‘반공포로석방’의 맥락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다. 협상이 지연될 때는 정전협상 이전에 석방하려던 입장에서, 이후의 5월 25일 공식 절차를 통해 중립국으로 송환하는 원칙이 합의되자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던 것이다.<sup>99)</sup>

96) *FRUS* 1953, 806~812쪽/530306.

97) *FRUS* 1953, 802~803쪽/530302

98) *FRUS* 1953, 803~804쪽/530302

99) 미국은 이후 진행된 협상에서 송환거부포로들의 중립국 이송에 대해 중국군 포로들은 중립국에 이송해도 좋으나 북한 포로들은 송환위원회에 인계하지 않고 휴전과 동시에 석방할 것을 제안했지만, 송환거부자를 중립국으로 인도하는 최종 합의안이 5월 25일 제시되었다. 조성훈, 1998, 186 쪽

1955년 6월 까지도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주장하며 정전자체에 반대하며 북진을 주장했다. 그리고 송환거부 북한포로는 즉시 석방, 중국 포로는 대만으로 인도할 것을 주장했다. 포로 심사와 중립국 인도를 위해 인도 군이 한국에 들어오면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sup>100)</sup>

결국 이승만은 1953년 6월 18일 미국과의 협의 없이 약 2만 7천여 명의 ‘반공 포로 석방’을 단행했다. 포로를 석방한 이후 한국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석방된 포로에 대한 응급 구호조치 등을 논의했고, 각 도별 책임하에 예산을 감당할 일역환을 책정했다. 석방된 포로들에게 6월 21일부터 일제히 도민증이 발급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석방자들의 환영회가 개최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이에 응답하듯이 이들은 ‘하루속히 멸공전에 참가하겠다고 절규’하며 혈서를 써가며 입대를 지원하는 ‘반공전사’이자 ‘애국청년’들이 되었다.<sup>101)</sup> 조병옥, 윤치영, 김종식, 양우정 등은 공개 성명을 통해 포로 석방 조치를 지지했고, ‘거사를 이끌어낸 이승만의 대담함에 존경’을 표현했다. 신문들은 전쟁포로 석방을 환영하는 한국 가족들의 사진이 포함된 기사들이 연일 1면을 장식했다.<sup>102)</sup>

1953년 4월까지도, 재개된 정전 협상에서도 5월 13일까지 북한포로들을 석방할 계획을 추진해오던 미국은 반공포로 석방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정말 이 사건은 미국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sup>103)</sup>

석방 당일 생산된 미국무부 정책기획실의 문서는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국무부는 이 사건을 두고 ‘정전을 방해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중국 전쟁포로들이지, 한국 전쟁포로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였다. 미 국무부는 이승만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전에 단호히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승만은 이 조치를 통해 정전 조건의 쟁점들을 양보하면서도 약간의 체면을 차리고, 이제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

100) 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XXX IV(1953.5.23-6.19)=(The)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한국전쟁자료총서』 72, 312~313쪽

101) 『동아일보』, 1953년 6월 19 - 29일.

102) 그러나 브릭스 미 대사의 보고에 따르면 일부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한국군과 유엔군의 물리적 충돌, 유엔 동맹국들의 지지나 미국의 원조의 철회를 우려했고, 전쟁포로 석방 결정과 관련하여 돌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로 내각 내에서 분열이 발생했다. 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XXX IV(1953.5.23-6.19)=(The)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한국전쟁자료총서』 72, 756쪽

103) 한 일본 언론에서는 이승만의 북한출신 송환거부 포로의 석방을 ‘이미 정전을 단념한 이승만이 허세를 부리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XXX IV (1953.5.23-6.19)=(The)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한국전쟁자료총서』 72, 755쪽

는 자세를 큰 부담 없이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공산측에 이것이 이승만의 독자적 행동임을 알리고, 이승만에게 정전협정에 따를 것을 압박하기 위해 ‘적절한 분노를 표출하는’ 공개 성명의로 표현해야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미국은 오히려 이러한 압박을 통해 앞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고, 미국군의 안전을 보장하는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기로 했다. 브릭스는 한국 정치인들을, 테일러는 한국군 지도자들을 만나 자신들이 남한에 어떠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과시적으로 드러내고, 클라크에게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철수하거나 남한 정부에 맞서는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보일 작전을 전개하게 지시하려 했다. 물론 경제 원조에 대한 논의도 전면 보류하려 했다.<sup>104)</sup>

미국은 이후 한편으로는 이승만을 압박하면서, 정전협상과 국제사회에서는 남한정부가 유엔군사령관의 지휘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했으며, 포로들의 도주는 유감스러운 일이고, 도주자 색출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sup>105)</sup>

이처럼, 한국전쟁 포로들을 희생양들로 여겨 ‘석방’한다는 인도적 시선 뒤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었다. 석방기획은 이들의 끼니를 책임져야 한다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들을 징병하여 군에 충원하는 군사적 이익을 노리고 출발했다. 그러다가 수용소 내부의 이념전쟁이 격화되자, 이데올로기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양민들로 여겨졌고, 점차 전선에 참가하는 적극적인 ‘애국 반공투사’들로 규정되었다. 결국 국내적으로 ‘반공포로 석방’은 전향자를 포섭한다는 대한민국의 미디어 이벤트가 되었고, 혈서를 쓰고 전선에 나서겠다는 ‘반공투사’들에게 ‘도민증’이 주어졌다.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자유송환 원칙을 제시하고, 수많은 포로를 관리하는 부담을 덜고자 했다. 포로석방은 정전협상의 전략중 하나로서, 포로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쟁점중 하나를 제거해 문제의 여지를 없애고 상대가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미국은 송환 거부자들에게 임시로 피난민이나 난민과 유사한 신분을 부여하기로 했다.

## 5. 맺음말

한국전쟁기 포로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이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 관련된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에는 더 이상의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간의 해석

104) 미 국무부 정책수립처 한국관계문서 2(Records of Policy Planning Staff, 1947-1953): 『남북한 관계사료집』 14, 419~420쪽

105) FRUS 1953, 1265~1269쪽

들은 수용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유송환이라는 신화’나 ‘반공 포로 신화’라는 틀로 반복해석하며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허구적 공방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 거대한 현상을 덮어 두려했다.

이 글에서는 1952년 12월의 봉암도 사건 이후로 검토된 포로관련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현상의 진실을 확인해보려 했다. 그 정책이란 하나는 ‘민간인 억류자’에 대한 무력진압과 재판을 통한 사형이었고, 다른 하나는 반공주의 포로들의 석방이었다. 이 과정에서 송환을 요구하는 북한출신 민간인 억류자들은 ‘거대 음모’에 따라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사살되었고, 송환을 거부하는 북한출신 군인포로들은 ‘충성스러운 반공전사’가 되겠다는 서약을 받고 풀어주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왜 발생했으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먼저 포로수용소라는 공간의 성격을 이해해야 했다.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는 ‘예외상태’의 논리와 보편적 ‘인권’이라는 모순적 논리가 충돌했던 공간이었다. 한국전쟁에서 적용된 포로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칙은 국민국가의 주권논리에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으로 까지 나아갔다. 그런데 ‘포로’를 보호한다는 보편성은 일단 모두를 포로로 잡아 억류해버리고 가두어 놓는 보편성이 되었다. 이에 비해 정상적 규범들로부터 예외적인 존재로 규정된 포로들은 권리와 권한을 박탈한 예외적 취급을 받아 저항했고, 그 상황을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보편적 규범이나 보편적 제도들이 동원되었다. 포로수용소는 이러한 이중적 경향이 뒤집히고 좌충우돌하는 상황을 반영한 공간이었다. 국제전도 내전도 아닌 전쟁으로 규정된 전쟁의 성격에 따라 포로수용소는 ‘난민수용소’, ‘강제수용소’, ‘전범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 ‘출입국 관리소’로 기능했다. 포로수용소는 그 자체로 냉전과 내전을 동시에 치르고 있는 분단국가의 축소판이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공간에 억류된 포로라는 존재의 위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한국전쟁 이전의 국제법에 제시된 ‘포로’의 위상은 특정 공간에 억류할 수 있지만 죽일 수 없고, 보호되고, 생활조건을 무상으로 제공해야할 존재들로 복지 국민국가적 보편성 모델의 반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모든 권한이 박탈당한 애매한 존재가 대량으로 생겨났고, 냉전의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전쟁에 철저히 종속된 존재가 되었다. 결국 한국전쟁의 포로는 국민국가를 건설할 때 생겨나는 비국민과, 부역자, 전쟁에서는 생겨나는 난민과 포로라는 위상을 포괄한 존재였다. 포로수용소는 이들을 세세하게 분류하고 분리시켜 위계를 만들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암도의 ‘민간인 억류자’들에게는 처벌의 법만이 ‘포로’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은 존재들에 대한 법적 ‘재판’은, ‘광신적 범죄자들’을 대중으로부터 분리해내는 ‘무기’로 도입되었다.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논리는 적국을 거부하고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선택의 이름이었

으며, 협상에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단 되돌리기 힘든 조치를 저지르고 억지주장을 하는 ‘기정사실’의 정치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승만이 석방시킨 포로들은 애초에 무조건 포로로 잡아넣어 버린 사람들이었고, 소위 남한 출신의 용군들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한국의 지도자들이 버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었으며, 이후 부역자로 몰았던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이것을 단순히 역사적 오류와 무책임한 악행으로 폭로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봉암도 사건에 대한 미국의 해석처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은 정당화하면서 현실을 선과 악으로 분리시키고, 거대한 악으로 갈등을 덮어 은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포로수용소 사건들을 통해 전쟁과 국민국가라는 현재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결국 우리 모두가 공범인 구조의 폭력성을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전쟁과 포로수용소를 둘러싼 갈등은 냉전의 대리전으로서, 2차세계대전을 마지막으로 주권국가간의 전쟁에서 사라져가는 폭력의 새로운 양상들을 이미 보여준 것이었다. 즉, 근대 국가의 전쟁은 국내외에 있는 체제의 적을 제거하는 전쟁이며, 이는 자국 국민을 생산하고 보호한다는 생체정치와 맞물려 ‘국민’의 머리를 지배하는 사상전과 육체를 지배하는 생체전쟁으로 나아갔다. 정치체제들은 인권과 국적, 사법제도와 징병 등의 제도와 논리를 통해 이러한 전쟁의 속성과 전쟁의 사회적 결과들을 정당화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세계적 규모의 갈등이 이전된 대리전을 치르는 주변부에는 정상과 예외가 뒤집힌 ‘예외상태’를 지속해야만, 체제의 안정성과 정당성, 이해관계가 보장되는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예외상태의 논리가 전면에 출현하고, 예외 공간이 열렸을 때, 남는 것은 우리가 포로수용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또 다시 질문을 던지면서 이를 비판하고 문제제기하는 주체의 위치는 어디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포로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는 과연 진정한 선택의 자유인가? 체제의 적대를 지속하는 한에서만, 전쟁에 참여하고 적을 죽이는 한에서만, 그러한 체제에 충성을 다하는 한에서만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유인가? 이들에게는 예외상태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었는가? 주권국가가 만들어낸 경계자체를 거부할 권리가 있었는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전쟁자체를 반대할 자유, 부당한 처우에 항의할 권리가 과연 있었는가?

# **UN Command Policy on threatment of POW after Pong-am incident**

Hak-Jae, Kim

## **1. POW's camps and POW's war experience during Korean War**

The twentieth century was the century of war, and it was also the century of camps. And the civilian population suffered at least as much as combatants, and one significant element of war experience is therefore not battle in the trenches, but the prison camp.

If we consider the East Asian context, there are lots of the same problems and there are even more complex ones. The Korean War is another example, one which provided one of the defining moments of the Cold War between East and West and where POW(Prisoners of War) problems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international concerns of the time. What is interesting is that many POWs of the Korean War had the same nationality, but were divided by their ideology. These POWs also became vehicles for cultural and ideological propaganda of both blocs.

POW Camps during the Korean War, were the space which the logic of 'state of exception' and 'universal human rights' were colflicted. On the one hand, 'POWs' were recognised as 'nations' who fight with enemy, and they protected under principle of human rights bakcked by international sovereignty. On the other hand, they were treated as 'Homo Sacer' in 'state of exception' and excluded by sovereign power of nation-state.

Under this condition, POW camps in the Korean War undertook fuctions of refugee camp, concentration camp, war criminal camp, political prison, and immigration center. Therefore, I saw POW camps were a microcosm of divided nation state, and I will regard POW camp as a base of Korean modern political system, and condensation of violence which has effected korean society for many decade.

## **2. Who are the Korean Prisoners of War**

When the Korean War begins, there was a standard which determine POW's status. The Geneva Convention of 1949 on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introduced a concept of humanitarian treatment of POWs. But the Geneva Convention of 1949 was originally designed for a war between individual (sovereign) nations. The Korean War, however, has both feature of International Cold war and national Civil War, and the nation(state)-building process was proceeding. United States, and UN did not recognise north Korea as a sovereign state, and this made ambiguous and exceptional condition of POW's status.

UNC attempted to apply the 'humanitarian' provisions of the Geneva Convention to POWs. However, in reality, there was no clear standard to determine who is POW and who is not. UNC defined 'all captured personnel' as POW and in the early stages of the Korean war, almost all person captured by the UN force were permanently registered as POWs. But there were many fundamentally different categories of person.

UNC thought that Korean war wa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previous wars. They regard that they faced politically and psychologically total war. In this condition, 'humanitarian treatment principle' made some POWs as War Criminals. And most of POWs were exposed nakedly to the inhumanitarian, brutal violence of the UNC guards, and of another POWs.

In 1951, after armistice negotiation began, US suggested the principle of voluntary(of free) repatriation of POWs, which means some of POW would not be repatriated. This is the first case that never happened before. As a result, the prisoners of war problem has proven the greatest obstacle to a truce. At this moment, passive 'protectionism' went to active 'liberalism', but the alienation between theory and reality maximized.

Actually, POWs treated by many exceptional measures, and exploited as a informant and agent of psychological warfare. When they became 'civilian internee'' or 'political refugee', they were regarded as ex-communist sympathizer.

### **3. The development of Pong-am incident and reaction of UNC**

When Civilian Internees in Pong-am island camp resisted against UNC guards in 1951. 12. 14, 85 prisoners were killed and 113 wounded. They were all civilians who indicated their wish to return to North Korea.

World criticized this incident, but UNC justified their mass killing and defined this incident as one of the 'Communist War in POW Camps' and 'The Great Plot of communists', and they believed there were 'The

Background' which control and order all riots. Therefore, UNC thought a communist prisoner of war had to be regarded not as a 'passive human being' in need of care and protection but as an 'active enemy' determined to fight on in whatever way his leaders dictated.

The United States authorized Clark(Chief of UNC) to appoint UNC Military Commissions for proceeding with Trials of POWs. Trials was introduced as a 'powerful weapon to fight evil communist'. US considered this treatment as one of the effective solution to separate 'a few fanatic' from 'obedient mass'.

#### **4. The release of 'Anti-communist POWs'**

After Pong-am incident, UNC discussed about release of 'non-communist POWs'. As armistice negotiation proceed, UNC removed 'civilian internees' from the POW lists. And released and renamed them as 'anti-communist POWs' in the midst of 1952. POW's status changed from 'enemy who had to be repatriated' to 'political prisoner who should be converted'.

The release program originated from economic consideration. ROK government wanted to reduce their burden to feed all POWs, and also wanted to conscript them. Since conflict had continued in POW camps, both ROK and US wanted to protect them from 'ideological contamination'. In 1953, they called as 'patriot anti-communist fighter'. In this context, the release of anti-communist POWs became an national media event. They were all given identification cards, and they responded as pledging their loyalty. For US, this was one of the strategy for armistice, to remove main problem and to make enemy recognize 'fait accompli'. The US tried to give them 'refugee' status.

# 沖縄戦における民間人収容所

鳥山 淳（とりやま・あつし）

沖縄における収容所は、1945年の地上戦（沖縄戦）の渦中で、上陸・占領した米軍によって設置された。米軍は民間人収容所（難民収容所）と戦争捕虜収容所を設置し、地元住民と日本軍戦闘員を分離して収容・管理した。戦場を生き延びた沖縄の住民は、その多くが民間人収容所に送られたが、日本軍の現地召集によって部隊に組み込まれていた人々（防衛隊、義勇隊などと呼ばれる）は戦争捕虜として扱われ、その一部はハワイなどでの強制労働にも従事した。

民間人収容所は、45年10月に住民の帰郷が許可されると急速に解体に向かい、翌年春までにその役割をほぼ終えた。戦争捕虜収容所は、米軍の人員不足を補うためにしばらく存続し、1万人を超える元日本兵が46年10月まで米軍の作業に動員されていた。

沖縄の収容所において重要だったのは戦闘員と非戦闘員（民間人）の区別のみであり、思想的・政治的立場による人々の線引き、色分けは持ち込まれていない。また当時は、地上戦によって文字通り崩壊した生活を再開することが重大な課題であり、占領統治に抗する動きが台頭する社会状況ではなかったため、政治的弾圧策はそもそも必要とされていなかった。

しかしながら、沖縄の収容所が「人道支援」に徹した「非政治的」な存在だったのかというと、そうではない。この報告では民間人収容所のみを取り上げるが、それは戦場難民に対するシェルターとして機能したと同時に、軍事基地の構築と運営を支えるうえで重要な役割を担うものであった。そのような収容所は46年に解消されていったが、民間人と米軍基地との関係から見ると、その後の沖縄社会の中に同様の機能が埋め込まれていったと考えることもできる。民間人と軍事基地との関係は、けっして「非政治的」な問題ではないのであり、その意味で民間人収容所の歴史は沖縄占領の縮図でもあるだろう。

## （1）民間人収容所に送られる住民

アジア・太平洋戦争以前の沖縄には、日本軍の部隊は配備されていなかった。1941年12月から日本軍が東南アジアや西太平洋で占領地域を広げると、沖縄では南方との連絡拠点として飛行場などの整備が始まったが、戦闘部隊が配備されるのは戦争末期である。

1944年3月に創設された南西諸島守備軍の指揮下、沖縄では「全島要塞化」に向

けて飛行場・陣地の構築が急速に進められた。その作業には朝鮮半島出身の軍夫や地元住民が大量に動員され、沖縄県全域で15の飛行場が建設された。

1945年3月26日に慶良間諸島、続いて4月1日に沖縄本島中部に上陸した米軍は、5月下旬に首里の守備軍司令部を制圧すると、日本軍を本島最南端へと追いつめて壊滅させ、6月末には組織的戦闘が終結した。

米軍は占領地域の住民に対して日本の行政権停止を宣言し、また沖縄県庁をはじめとする戦前の行政組織は地上戦によって崩壊していた。そのため住民の統治は、上陸とともに設置された軍政府および各地域に派遣された軍政チームによって行われた。米軍の管理下に入った民間人の数は、本島上陸後の1週間で1万人を超え、4月28日までに11万3千人、5月26日までに14万7千人に達した。その後、日本軍が本島最南端に追いつめられていくにつれて米軍の管理下に入る民間人の数も急増し、日本軍の組織的な抵抗が終結した6月末には28万4千人、7月30日には32万人となった。この膨大な戦場難民は、米軍が設置した民間人収容所によって管理されることになる。

まず米軍は、上陸地付近に仮設の収容所を作ったが、2~3日は必要な設備を陸揚げする余裕がなく住民たちは野ざらしにされ、日本軍の夜襲や特攻機の襲来によって犠牲者が出た。その後、4月下旬までに米軍が本島北部を制圧すると、その一帯に大規模な収容所が続々と設営されていった。収容所の形態は、戦禍を免れた集落がそのまま収容所として指定される場所がある一方で、米軍の野営テントによってかろうじて風雨をしのぐ程度のものもあった。

6月末までに大規模な戦闘が終結すると、多数の民間人が身を隠していた南部地域にも収容所が設置されるようになるが、その収容人数は抑制され、多くの住民が北部の収容所へ移動させられた。7月の人口推移を見ると、その傾向をはっきり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 1945年7月の収容人口の推移（南部と北部の比較）

<南部の収容所>	7月11日	7月31日
玉城・新里	36,000	24,000
野嵩・安谷屋・喜舎場	22,000	12,500
コザ・島袋	16,000	11,500
桃原・具志川	41,500	42,000
計	115,500	90,000

<北部の収容所>	7月11日	7月31日
----------	-------	-------

石川	23,500	24,500
田井等	36,000	64,500
宜野座	83,500	117,700
<hr/>		
計	143,000	206,700

出典：Civilian Population Data. (『沖縄戦後初期占領資料』緑林堂書店1994年、第11巻21頁)

## (2) 民間人の隔離と動員

南部での戦闘が終結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民間人が北部へと移動させられた最大の理由は、軍事施設の構築を進める一帯から民間人を排除することにあった。5月の軍政報告書が述べているように、「沖縄の農村は強力な要塞に変容し、日本本土に向けた陸・海・空による最後の攻撃のための跳躍台となる」ことが予定されており(1)、そのために大量の民間人を移動させることが要求されていたのである。米軍は、日本が降伏しない事態を想定して日本本土進攻作戦を準備し、九州上陸作戦(45年秋実行予定)や関東平野制圧作戦(46年春実行予定)に向けて、沖縄に出撃・兵站の最前線基地を構築しようとしていた。

沖縄本島に上陸した4月1日のうちに、米軍は嘉手納と読谷の日本軍飛行場を占拠し、滑走路を修理・拡張して10日以内に作戦使用を始めた。米軍が沖縄本島付近に設置した18の飛行場のうち、6月末までに5つの飛行場が稼動を始め、8つの飛行場でも修復もしくは建設工事が進められていた(2)。

そして軍政チームに対しては、前原地区(本島中部の東海岸)を唯一の例外として、すべての住民を南部地域から北部地域へと移動させるように要求が出されている(3)。5月末に割り当てられた恒久的な軍政地域は本島総面積の約10%にすぎず、それ以外は軍事施設を構築する作戦地域とされた。

そして住民を排除した地域では、次のような光景が繰り返されていった。

「沖縄におけるあらゆる建築物の徹底的な破壊は、基地建設計画によって加速された。高速道路網、B29を含む全ての飛行機に対応できる多数の飛行場、物資と弾薬の貯蔵区、そして野営地と軍事施設のために、全ての村落の破壊が必要とされた。(中略)道路および軍事施設用地を整地するために、ブルドーザーは日本人の家並を、文字通り駆け抜けて、長い年月をかけて作られた家々をほんの数秒で破壊してしまった。」(4)

住民を北部の収容所に隔離し、米軍は無人となった集落や耕地を敷き均していった。8月1日の報告書によると、すべての建設計画が実行された場合、住民の85%以上が北部地域に住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予想されていた(5)。

収容所に入った住民たちは、生活物資を米軍から配給される一方、米軍の監視下でさまざまな作業に従事させられた。動員される作業の範囲は、収容所生活の維持に必要な活動にとどまらず、軍事施設の構築にも及んでおり、その際に労働力となる男性だけを隔離することが多くの収容所で行われていた。

米軍上陸直後の4月2日に収容所に入った住民の証言によると、40名くらいの男性が常時MPが監視する「特別収容所」に移されて、米兵の死体を埋葬したり、日本軍の兵器や砲弾を海中に投棄する作業を6月末まで続けた(6)。同じく戦闘の初期に米軍の管理下に入った住民によれば、17～45才の男性がいる家族だけが別の収容所に移動させられ、「収容所の中に又収容所があって」、当該年齢の男性はそこに隔離され、作業に動員されたという(7)。また女性も、米軍の部隊・病院での洗濯作業などに動員されていた。

米軍の記録によれば、5月には1日あたり600人から1,700人の労働力が部隊に供給されている(8)。6月の供給数は、1ヶ月間の延べ人数で7万6千人となり、その数は7月には15万5千人へと倍増した(9)。しかし、米軍が求めていた男性労働力の供給は不足していた。米軍が男性労働力の動員優先順位を設定し、飛行場建設(1-A)、疫病予防(1-B)、荷卸・貯蔵作業(2-A)、病院(3-A)、道路建設作業(3-B)という順番で動員していったが、労働可能な男性はきわめて限られた数しかおらず、7月に要求を満たすことができたのは飛行場建設(1-A)と疫病予防(1-B)のみであった(10)。

4月の軍政報告書によると、本島中部に設置されていた島袋収容所の住民約1万人のうち、17～45歳の男性はわずか221人であった(11)。近隣の前原地区の収容所では、6月下旬に「病人、妊産婦を除く16歳以上、60歳以下の男女も全員作業に出すように」という命令が出され、無断欠勤者が多いことを理由に全住民2万人への配給が3日間停止されるという事件も起こっている(12)。男性労働力が極端に不足する中で、動員要求は住民の生活を脅かす負担となっていた。

なお、設置された民間人収容所の数を特定することは、かなり困難である。戦況の変化あるいは軍事施設の設置によって、収容所の位置や規模は目まぐるしく変化し、新設・廃止が頻繁に発生している。ちなみに45年10月時点で、沖縄本島に設置されていた「市」は11ヶ所であった。これは自治体としての市ではなく、大規模な収容所を意味している。ただしこの「市」は、複数の集住地域を含んでいる場合が多く、収容所の数を厳密にカウント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

### (3) 食糧不足と性暴力の恐怖

米軍の食糧配給は、その全体量がしばしば不足し、收容所の中で栄養失調が生じることもしばしばなかった。とくに日本降伏後、日本と朝鮮半島の占領統治に向けて部隊の移動が活発になると、食糧事情は深刻な状況を迎えた。9月になると、軍政府は、「戦争終結の結果自動車其他の資材が日本に移動される。よって沖縄は困る。沖縄へ向けて輸送されていた住民の被服類も日本へ回送される。其結果沖縄の復興計画も思ふ通り行かず」と述べて、住民生活の悪化を予想している(13)。その月の軍政報告書は、「荷下ろし作業がほぼ完全に停止したため、9月の食糧配給は一樣に減少した」としており、その理由の一つに「朝鮮と日本に向けた出荷が優先された」ことをあげている(14)。

住民の戦争体験記録によると、とくに北部の收容所では餓死・病死が恒常的に発生していたことが分かる。「食糧は、五日分の配給が一日分にも足りないから、一日で食べてしまって、あとの四日間は、草や木の葉を食べる」、「悪性のマラリアが流行してですね、体力のない人たちからどんどん死んでいったんです。(中略)毎日、山の中では、男の人たちが死人を埋める作業をしていましたよ」といった証言をいくつも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15)。

米軍の指令によって收容所以外の場所は住民の立ち入りが禁止され、收容所間の移動も軍政府の許可を必要としていたが、多くの人々が食糧を求めて、米軍部隊が駐留する南部方面に移動していた。軍政府からは「戦闘部隊の所へ行って物を探させるな」と警告も発せられていたが(16)、次の証言はそれが頻繁かつ長期間にわたって行われていたことを伝えている。

「米軍の車に手を挙げて乗せてもらい、何度か米軍の車を乗り継いで読谷や那覇まで行き、仲間十人で十日ぐらい那覇で過ごしたこともあった。当時の那覇は誰も住んでいなかった。自分たちは日本軍の荒れ果てた兵舎をねぐらにした。米軍のテントの中には缶詰がたくさん積まれていて、こっそり取って食べたりしていた。時々米兵に見つかることもあったが、米兵はほとんど見過ごしていた。」(17)

配給物資の不足を補うために、收容所から出て集団で農作業を行う際には、米兵による性暴力事件を絶えず警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一緒にイモ掘り作業に行っても、若く見える女は、すぐ引っぱられていきまし

た。助けて一しても、男の人も誰も助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もし男の人が助けようとすると、アメリカ人は銃を持っていて、撃つんですから、どうにもなりませんでした。ほんとに撃ち殺すんですよ。」(18)

武器を携帯した米兵に対して住民が抵抗することは困難であり、MP（軍警察）の目が届かないところでは事件が多発していた。45年9月の軍政報告書には、次のような記述がある。

「軍関係者が民間人地域に侵入する違反が増加した。軍関係者が観光に出かける日曜日にも、それはより頻繁になる。軍政府に割り当てられるMPが減少し、各地からガードを引き上げることは避けられなかったため、このような違反が増加することは予想されていた。この事態に対処するため、司令部では、9月30日から観光のための通行を許可しないことになった。」(19)

もちろん事態は、「観光のための通行」を制限する程度で対処できるようなものではなく、その後も性暴力事件は起こり続けていくことになる。

#### (4) 継続する基地労働への動員

日本侵攻作戦のために構築された沖縄の基地は、日本の降伏によって当初の使用目的を失った。しかし米軍部は、西太平洋地域の権益を守るために沖縄を軍事拠点とする構想を固め、現地では多くの施設が維持された。米国政府としての方針はまだ決定されておらず、基地の長期使用が確定したわけではなかったが、占拠された土地は容易に開放されなかったのである。

45年10月以降、住民の帰郷は徐々に進んだものの、本島中南部の西海岸には軍事施設が集中しており、その地域の住民の多くは北部にとどまったままであった。市町村行政が復活した46年4月の軍政報告書によれば、沖縄本島の約35万人のうち、出身の市町村に移動できずにいる離散者は6万人、戦前の集落に戻れずにいる人々は13万人と推計されていた(20)。依然として3人に1人は自分たちの村に帰れずにいたことになる。その年の7月の軍政報告書は、次のように記している

「10月31日から5月31日までの間の再定住の動きを見ると、13万8000人の住民が出身集落がある地区に帰っている。しかしこのことは、かれらが出身集落に帰ったことを意味するわけではない。多くの場合、集落は姿を消し、米軍用地

として使用されたままである。(中略) いまなお元来の居住地から締め出されている人々は12万5000人にのぼっており、そこには那覇の2万2000人、読谷の1万3000人、北谷の1万2000人が含まれている。」(21)

復興の出発点となる土地の開放は、米軍の構想に影響を与えない範囲に限定され、住民の帰郷は大幅に遅れていた。開放が進まない土地の多くは、そのまま米軍基地として固定化されていくことになる。

中南部の住民の帰郷が大幅に遅れたことは、部隊要員の減少を住民の労働力によって補わなければならない米軍にとっても不都合であった。45年8月に25万人を超えた沖縄の米軍は、1年後の46年8月には2万人に激減し、48年8月には1万人にまで落ち込んでいく(22)。軍事施設の運営を維持するためには住民の労働力を確保することが不可欠であり、そのためには軍事施設が密集する本島中部に住民を再定住させることが必要であったが、土地の開放は遅れていた。当時の軍政報告書は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健全な男性労働力の割合は、全人口のわずか9%にすぎない。(中略) 1946年1月1日以降、住民の再定住は可能なかぎり迅速に進められたにもかかわらず、雇用先の部隊に徒歩で通える距離に住むようになった労働者は、ほとんどいなかった。」(23)

住民の再定住を進めたい軍政府に対して、各部隊は土地の開放を渋っていた。その後、軍事施設近辺で土地の開放が実行される際に、米軍にとっての利点として強調されていたのが労働力の必要性だったのである。46年5月の軍民協議の場で、軍政府からは、「米国よりの輸入を減ずる必要がある。それには住民に耕地を与へる」、「軍としては労務者が必要である。それには住民部落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2つの論理が提示されている(24)。こうして開放される土地に住む人々は、最初から米軍施設の労働者となることを期待された存在だった。

そして住民にとって、わずかな居住地だけが開放され、かつての農耕地が米軍に占拠されたままという事態は、米軍基地の労働者となることを強られる状況にほかならなかった。長期使用された米軍基地の面積は沖縄本島の約14%であったが、農業に適した平坦地に限ると、米軍が使用する割合はさらに高かった。

1952年に至るまで、米軍は占拠した土地に対する補償を行わず、ようやく支払いが始まった軍用地代も極めて少額であった。日々の生計を維持するために、多くの住民が基地労働に従事する社会構造が出来上がっていったのである。基地労働者の数は47年1月に2万人、同年6月には3万人、48年6月に4万人へと増加し、沖縄全

体の就業者の2割以上を占めるようになった。東アジア最大の米空軍基地となった嘉手納基地の周辺各村では、村面積の7～9割が米軍によって占拠され、就業人口の6割以上が基地労働者となる村もあった。

地上戦とともに設置された民間人収容所は、その後1年のうちに解消され、多くの住民は帰郷していった。しかし軍事施設への労働力動員は、その後の社会においても継続した。もちろんそれは、形式としては人々の自由意志による就業である。しかし、収容所に住民を隔離しながら構築した基地がその後も土地を占拠し続け、生活の道を閉ざし続けたことを考えるならば、それを人々の意志だけに帰することはできない。その根底に横たわる破壊や強制について考えるうえで、民間人収容所が果たした機能に目を向けることは重要である。

## 注

- (1) History of Military Government Operations on Okinawa, 1 May to 31 May 1945, p.1. (『沖縄戦後初期占領資料』第10巻45頁)
- (2) Island Command Historical Record, 13 December 1944 - 30 June 1945, Okinawa Gunto Ryukyus, pp.19-21. (琉球大学附属図書館所蔵)
- (3) Assignment of Areas for Civilians Service Camps, 25 May 1945. (『沖縄戦後初期占領資料』第39巻141頁)
- (4) Lack of Shelter. (『沖縄戦後初期占領資料』第38巻64頁)
- (5) Staff Study - Civilian Labor for Southern Okinawa, 1 August, 1945, p.2. (『沖縄戦後初期占領資料』第39巻153頁)
- (6) 『沖縄県史第9巻 沖縄戦記録1』(琉球政府1971年) 118～119頁
- (7) 『新城郷友会誌』(字新城郷友会2000年) 243～244頁
- (8) Rehabilitation, Economic, p.69. (『沖縄戦後初期占領資料』第87巻278頁)
- (9) History of Military Government Operations on Okinawa, 1 July to 31 July 1945, p.14. (『沖縄戦後初期占領資料』第11巻14頁)
- (10) 同上
- (11) History of Military Government Operations on Okinawa, 1 April to 30 April 1945, p.9. (同第10巻12頁)。
- (12) 『具志川市議会史 第3巻資料編2 議会の活動』(具志川市議会1997年) 8頁
- (13) 『沖縄県史料 戦後1 沖縄諮詢会記録』(沖縄県教育委員会1986年) 42頁
- (14) Report of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for September 1945, p.10. (『沖縄戦後初期占領資料』第11巻66頁)

- (15) 『沖縄県史第9巻 沖縄戦記録1』 505、825頁
- (16) 『沖縄県史料 戦後1 沖縄諮詢会記録』 119頁
- (17) 『金武区誌 戦争編』（金武区事務所2002年）103頁
- (18) 『沖縄県史第9巻 沖縄戦記録1』 88頁
- (19) Report of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for September 1945, p.4.  
（『沖縄戦後初期占領資料』第11巻60頁）
- (20) Report of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for April 1946, p.7.（『沖縄戦後初期占領資料』第12巻87頁）
- (21) Report of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for Period from 1 April 1945 to 1 July 1946, p.8.（『沖縄戦後初期占領資料』第12巻125頁）
- (22) Arnold G. Fisch Jr., "Military Government in the Ryukyu Islands, 1945-1950,"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1988, p.74.
- (23) Report of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for Period from 1 April 1945 to 1 July 1946, p.32.（『沖縄戦後初期占領資料』第12巻150頁）
- (24) 『沖縄県史料 戦後2 沖縄民政府記録1』（沖縄県教育委員会1988年）54頁

慶良間 けらま  
首里 しゅり

玉城 たまぐすく  
新里 しんざと  
野嵩 のだけ  
安谷屋 あだにや  
喜舎場 きしゃば  
島袋 しまぶくろ  
桃原 とうばる  
具志川 ぐしかわ  
石川 いしかわ  
田井等 たいら  
宜野座 ぎのざ

嘉手納 かでな  
読谷 よみたん  
前原 まえはら  
那覇 なは

# 오키나와(沖繩)전에서의 민간인수용소

도리야마 아쓰시(鳥山淳)

오키나와에서 수용소는 1945년의 지상전(오키나와전) 와중에 상륙·점령한 미군에 의해 설치되었다. 미군은 민간인수용소(난민수용소)와 전쟁포로수용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과 일본군 전투원을 분리해서 수용·관리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오키나와 주민들은 그 대부분이 민간인수용소로 보내졌는데 일본군의 현지소집에 의해 부대에 편입되어 있던 사람들(방위대, 의용대 등으로 불린다)은 전쟁포로로 취급되었으며 그 일부는 하와이 등지에서 강제노동에도 종사했다. 민간인수용소는 45년 10월에 주민들의 귀향이 허가되자 급속히 해체되어갔으며 이듬해 봄까지 그 역할을 거의 마쳤다. 전쟁포로수용소는 미군의 인원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한 동안 존속되었으며 만 명이 넘는 전 일본군들이 46년 10월까지 미군 작업에 동원되었다.

오키나와의 수용소에서 중요했던 것은 전투원과 비전투원(민간인)의 구별뿐이었으며 사상적·정치적 입장에 의한 선긋기, 평가르기는 도입되지 않았다. 또 당시의 지상전으로 인해 문자 그대로 붕괴된 생활을 재개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였으며 점령통치에 맞서는 움직임이 대두하는 사회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책은 아예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키나와의 수용소가 철저히 ‘인도 지원’에만 집중한 ‘비정치적’ 존재였느냐면 그렇지 않다. 이 발표에서는 민간인수용소만을 다루겠는데, 그것은 전쟁난민에 대한 도피처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군사기지의 구축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수용소는 46년에 해소되어갔지만 민간인과 미군기지의 관계에서 보자면 그 뒤 오키나와 사회 안에 유사한 기능을 심어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민간인과 군사기지의 관계는 결코 ‘비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며 그 의미에서 민간인수용소의 역사는 오키나와 점령의 축소판이기도 할 것이다.

## (1) 민간인수용소로 보내지는 주민들

아시아태평양전쟁 이전에 오키나와에는 일본군 부대는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1941년 12월부터 일본군이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점령지역을 확대하자 오키나와에서는 남방과의 연락거점으로서 비행장 등의 정비가 시작되었지만, 전투 부대가 배치되는 것은 전쟁 말기의 일이다.

1944년 3월에 창설된 남서제도수비군의 지휘 아래 오키나와에서는 ‘전도(全島) 요새화’를 위해 비행장·진지의 구축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작업에는 한반도 출신의 군부(軍夫)와 지역주민 등이 대량으로 동원되었으며 오키나와현 전역에서 15개의 비행장이 건설되었다.

1945년 3월 26일에 게라마(慶良間)제도, 이어 4월 1일에 오키나와 본도 중부에 상륙한 미군은 5월 하순에 슈리(首里)의 수비군 사령부를 제압하고 일본군을 본도 최남단으로 몰아가 괴멸시켰으며 6월 말에는 조직적인 전투가 종결되었다.

미군은 점령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일본의 행정권 정지를 선언했으며 또 오키나와 현청(縣廳)을 비롯한 전전의 행정조직은 지상전에 의해 붕괴되어 있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통치는 상륙과 더불어 설치된 군정부 및 각 지역에 파견된 군정팀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군 관리 아래에 들어간 민간인 수는 본도 상륙 후 1주일만에 만 명을 넘기고 4월 28일까지 11만 3천명, 5월 26일까지 14만 7천명에 이르렀다. 그 뒤 일본군이 본도 최남단으로 몰리면서 미군 관리 아래에 들어간 민간인 수도 급증하고 일본군의 조직적인 저항이 종결된 6월 말에는 28만 4천명, 7월 30일에는 32만 명이 되었다. 이 방대한 전쟁 피난민은 미군이 설치한 민간인 수용소에서 관리되게 된다.

먼저 미군은 상륙지 부근에 가설 수용소를 지었는데, 2~3일은 필요한 설비를 양륙할 여유가 없어서 주민들은 노천에서 방치되어 일본군의 야습이나 특공기의 습격에 의해 희생자를 냈다. 그 뒤 4월 하순까지 미군이 본도 북부를 제압하자 그 일대에 대규모 수용소가 잇따라 설치되어갔다. 수용소의 형태는 전화를 면한 마을이 그대로 수용소로 지정되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미군의 야영천막으로 겨우 비바람을 가릴 정도의 것도 있었다.

6월 말까지 대규모 전투가 종결되자 다수의 민간인들이 피신했던 남부지역에도 수용소가 설치되게 되는데 그 수용 인원은 억제되고 많은 주민이 북부 수용소로 옮겨졌다. 7월의 인구 추이를 보면 그 경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1945년 7월의 수용 인구 추이(남부와 북부의 비교)

<남부 수용소>	7월 11일	7월 31일
다마구스쿠(玉城)·신자토(新里)	36,000	24,000
노다케(野嵩)·아다니야(安谷屋)·기샤바(喜舎場)	22,000	12,500
고자(コザ)·시마부쿠로(島袋)	16,000	11,500
도우바루(桃原)·구시카와(具志川)	41,500	42,000
계	115,500	90,000

<북부 수용소>	7월 11일	7월 31일
이시카와(石川)	23,500	24,500
다이라(田井等)	36,000	64,500
기노자(宜野座)	83,500	117,700
계	143,000	206,700

출처: Civilian Population Data(『沖繩戰後初期占領資料』第11卷, 綠林堂書店, 1994, 21쪽)

## (2) 민간인의 격리와 동원

남부에서 전투가 종결되었는데도 민간인이 북부로 옮겨진 최대의 이유는 군사시설 구축을 추진하는 일대에서 민간인을 배제하는 데 있었다. 5월의 군정보고서가 말하듯이 “오키나와의 농촌은 강력한 요새로 변하고 일본 본토를 향한 육해공군에 의한 마지막 공격을 위한 도약대”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sup>1)</sup> 그것을 위해서 대량의 민간인을 이동시키는 것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미군은 일본이 항복하지 않는 사태를 상정해서 일본 본토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규슈(九州) 상륙작전(45년 가을 실행 예정)과 간토(關東)평야 제압작전(46년 봄 실행 예정) 등을 위해 오키나와에 출격·병참의 최전선기지를 구축하려고 했다.

오키나와 본도에 상륙한 4월 1일에 미군은 가테나(嘉手納)와 요미탄(讀谷)의 일본군 비행장을 점거하고 활주로를 수리·확장시켜 열흘 내로 작전 사용을 시작했다. 미군이 오키나와 본도 부근에 설치한 18개의 비행장 가운데 6월 말까지 5개 비행장이 가동하기 시작했고 8개 비행장에서도 수리 또는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sup>2)</sup>

그리고 군정팀에 대해서는 마에하라(前原) 지구(본도 중부의 동해안)를 유일한 예외로 모든 주민을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이 요구되었다.<sup>3)</sup> 5월 말에 할당된 항구적인 군정지역은 본도 총면적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군사시설을 구축할 작전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주민을 배제한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1) History of Military Government Operations on Okinawa, 1 May to 31 May 1945, p. 1. (『沖繩戰後初期占領資料』10卷, 45쪽)

2) Island Command Historical Record, 13 December 1944 - 30 June 1945, Okinawa Gunto Ryukyus. pp. 19-21.(琉球大學 부속도서관 소장)

3) Assignment of Areas for Civilians Service Camps, 25 May 1945.(『沖繩戰後初期占領資料』39卷, 141쪽)

오키나와에서 모든 건축물의 철저한 파괴는 기지 건설계획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고속도로망, B29를 포함한 모든 비행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수의 비행장, 물자와 탄약의 저장지구, 그리고 야영지와 군사시설을 위해 모든 마을의 파괴가 필요했다. (중략) 도로 및 군사시설 용지를 정지(整地)하기 위해 불도저는 일본인의 집들을 문자 그대로 날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지어진 집들을 불과 몇 초만에 파괴하고 말았다.<sup>4)</sup>

주민들을 북부 수용소로 격리하고 미군은 무인이 된 마을과 농경지를 밀어버렸다. 8월 1일자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건설계획이 실행될 경우 주민의 85% 이상이 북부지역에 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sup>5)</sup>

수용소에 들어간 주민들은 생활물자를 미군에게서 배급받는 한편 미군 감시 아래서 다양한 작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동원되는 작업 범위는 수용소 생활 유지에 필요한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군사시설 구축까지 포함되었으며 그때 노동력이 되는 남성만 격리하는 것이 많은 수용소에서 이루어졌다.

미군 상륙 직후인 4월 2일에 수용소에 들어간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40명 정도의 남성이 항상 헌병이 감시하는 ‘특별수용소’로 옮겨져 미군 시체를 매장하거나 일본군의 무기나 포탄을 바다 속으로 투기하는 작업을 6월 말까지 계속했다.<sup>6)</sup> 마찬가지로 전투 초기에 미군 관리 아래에 들어간 주민에 의하면 17~45세의 남성이 있는 가족만이 다른 수용소로 옮겨져 “수용소 안에 또 수용소가 있어서” 그 연령의 남성을 그곳으로 격리되어 작업으로 동원되었다고 한다.<sup>7)</sup> 또 여성들도 미군의 부대·병원에서 빨래 등에 동원되었다.

미군 기록에 의하면 5월에는 하루당 600명에서 1,700명의 노동력이 부대에 공급되었다.<sup>8)</sup> 6월에 공급 수는 한 달 연인원으로 7만 6천명이 되었으며 그 수는 7월에는 15만 5천명으로 배로 증가했다.<sup>9)</sup> 하지만 미군이 요구했던 남성 노동력의 공급은 부족했다. 미군이 남성 노동력의 동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비행장 건설

4) Lack of Shelter.(『沖繩戰後初期占領資料』38卷, 64쪽)

5) Staff Study - Civilian Labor for Southern Okinawa, 1 August, 1945, p. 2.(『沖繩戰後初期占領資料』39卷, 153쪽)

6) 『沖繩県史 第9卷 沖繩戦記録1』, 琉球政府, 1971, 118-119쪽.

7) 『新城郷友会誌』, 子新城郷友会, 2000, 243-244쪽.

8) Rehabilitation, Economic, p. 69.(『沖繩戰後初期占領資料』87卷, 278쪽)

9) History of Military Government Operations on Okinawa, 1 July to 31 July 1945, p. 14. (『沖繩戰後初期占領資料』11卷, 14쪽)

(1-A), 전염병 예방(1-B), 하역·저장 작업(2-A), 병원(3-A), 도로건설 작업(3-B)이라는 순으로 동원했는데, 노동 가능한 남성의 수는 아주 제한적이어서 7월에 요구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비행장 건설(1-A)과 전염병 예방(1-B)뿐이었다.<sup>10)</sup>

4월의 군정보고서에 의하면, 본도 중부에 설치된 시마부쿠로(烏袋)수용소의 주민 약 만 명 가운데 17~45세 남성은 불과 221명이었다.<sup>11)</sup> 이웃한 마에하라(前原)지구의 수용소에서는 6월 하순에 “병자, 임산부를 제외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녀도 모두 작업으로 보내도록”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무단결근자가 많다는 이유로 전 주민 2만 명에 대한 배급이 사흘 동안 정지되는 사건도 일어났다.<sup>12)</sup> 남성 노동력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동원 요구는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담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설치된 민간인수용소의 수를 특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전황의 변화 또는 군사시설의 설치에 따라 수용소의 위치나 규모는 어지러울 정도로 변화했으며 신설·폐지가 빈번히 발생했다. 참고로 45년 10월 시점에서 오키나와 본도에 설치된 ‘시(市)’는 11 군데였다. 이것은 지방자치체로서의 시가 아니라 대규모 수용소를 의미한다. 다만 이 ‘시’는 복수의 거주 지역을 포함한 경우가 많아서 수용소 수를 엄밀히 세는 것은 쉽지 않다.

### (3)식량 부족과 성폭력의 공포

미군의 식량 배급은 그 전체량이 종종 부족했고 수용소 안에서 영양실조가 생기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특히 일본 항복 이후, 일본과 한반도 점령통치를 위한 부대 이동이 활발해지자 식량 사정은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다. 9월이 되면 군정부는 “전쟁 종결의 결과 자동차 기타 자재가 일본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오키나와는 난처하다. 오키나와를 향해 수송되던 주민의 피복류도 일본으로 전송된다. 그 결과 오키나와의 부흥계획도 뜻대로 되지 않고”라며 주민의 생활 악화를 예상하고 있다.<sup>13)</sup> 그 달의 군정보고서는 “하역 작업이 거의 완전히 정지되었기 때문에 9월의 식량 배급은 일률적으로 감소했다”라며 그 이유의 하나로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출하가 우선된” 것을 들었다.<sup>14)</sup>

---

10) 위와 같음.

11) History of Military Government Operations on Okinawa, 1 April to 31 April 1945, p. 9. (『沖繩戰後初期占領資料』 10卷, 12쪽)

12) 『具志川市議會史 第3卷 資料編 2 議會の活動』, 具志川市議會, 1997, 8쪽.

13) 『沖繩県史料 戦後1 沖繩諮詢会記録』, 沖繩県教育委員会, 1986, 42쪽.

주민의 전쟁체험 기록에 의하면, 특히 북부 수용소에서는 아사·병사가 항상적으로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식량은 5일치 배급이 하루 분량에도 모자라서 하루만에 먹어버려서 나머지 나흘 동안은 풀이나 나뭇잎을 먹는다”, “악성 말라리아가 유행해서 말이죠, 체력이 없는 사람부터 잇따라 죽어갔어요. (중략) 매일 산속에서는 남자들이 시체를 묻는 작업을 했었죠”라는 식의 증언을 여러 개씩이나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미군 지령에 의해 수용소 외의 장소는 주민의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수용소들 사이의 이동 또한 군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찾아서 미군 부대가 주류하는 남부방면으로 이동해갔다. 군정부에서는 ‘전투부대에 가서 뭘 찾게 하지 말라’는 경고도 나왔었지만<sup>16)</sup> 다음 증언은 그것이 빈번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전하고 있다.

손을 들어서 미군 차를 얻어 타고 몇 번씩 미군 차를 갈아타면서 요미탄(讀谷)이나 나하(那覇)까지 가서 동료들 10명 정도로 열흘쯤 나하에서 지낸 적도 있다. 당시 나하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우리는 일본군의 황폐화된 병사(兵舎)에서 잤다. 미군 천막 안에는 통조림이 많이 쌓여 있어서 몰래 훔쳐 먹기도 했다. 가끔 가다 미군한테 들키는 일도 있었지만 미군은 거의 간과하고 있었다.<sup>17)</sup>

배급물자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수용소에서 나와서 집단으로 농사일을 할 때는 미군에 의한 성폭력사건을 항상 경계해야 했다.

같이 고구마 캐러 가도 젊어 보이는 여자는 바로 끌려갔죠. 살려 달라고 외쳐도 남자들도 아무도 도울 수 없었어요. 만약에 남자가 도와주려고 하면 미국인(アメリカ)은 총을 가지고 있어서 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싸죽이거든요.<sup>18)</sup>

무기를 휴대한 미군에 대해 주민이 저항하는 것은 어려웠으며 헌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었다. 45년 9월의 군정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

14) Report of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for September 1945, p. 10.(『沖繩戰後初期占領資料』11卷, 66쪽)

15) 『沖繩県史 第9卷 沖繩戦記録1』, 琉球政府, 1971, 505, 825쪽.

16) 『沖繩県史料 戦後1 沖繩諮詢会記録』, 119쪽.

17) 『金武区誌 戦争編』, 金武区事務所, 2002, 103쪽.

18) 『沖繩県史 第9卷 沖繩戦記録1』, 88쪽.

군 관계자가 민간인 지역에 침입하는 위반사례가 증가했다. 군 관계자가 관광하러 나가는 일요일에 그것은 더 잦아진다. 군정부에 할당되는 헌병이 감소해서 각지에서 경비원을 철수시키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이 늘어날 것은 예상되고 있었다. 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사령부에서는 9월 30일부터 관광을 위한 통행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sup>19)</sup>

물론 사태는 '관광을 위한 통행'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 후로도 성폭력사건은 계속 일어나게 된다.

#### (4) 계속되는 기지노동으로의 동원

일본 진공작전을 위해 구축된 오키나와 기지는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 애초의 사용 목적을 잃었다. 그러나 미 군부는 서태평양지역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오키나와를 군사거점으로 만들 구상을 굳혀 현지에서는 많은 시설들이 유지되었다. 미국 정부로서의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기지의 장기 사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점거된 땅은 쉽게 개방되지 않았다.

45년 10월 이후 주민들의 귀향이 서서히 진행되었지만 본도 중남부의 서해안에는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그 지역 주민의 대부분은 북부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 지방행정이 부활된 46년 4월의 군정보고서에 의하면, 오키나와 본도의 약 35만 명 가운데 출신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산자는 6만 명, 전쟁 전의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13만 명으로 추계되었다.<sup>20)</sup> 여전히 3명에 한 명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해 7월의 군정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0월 31일부터 5월 31일에 이르는 동안 다시 정주하게 되는 사람들의 동향을 보면, 13만 8천명의 주민이 출신 마을이 있는 지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출신 마을로 돌아갔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마을은 사라지고 여전히 미군용지로 사용되고 있다. (중략) 아직까지 원래 거주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12만 5천명에 이르며, 거기에는 나하의 2만 2천명, 요미탄의 만 3천명, 자탄(北谷)의 만 2천명이 포함되어 있다.<sup>21)</sup>

19) Report of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for September 1945, p. 4.(『沖繩戰後初期占領資料』11卷, 60쪽)

20) Report of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for April 1946, p. 7.(『沖繩戰後初期占領資料』12卷, 87쪽)

부흥의 출발점이 되는 토지 개방은 미군의 구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어 주민들의 귀향은 대폭 지체되었다. 개방이 진전되지 않는 땅의 대부분은 그대로 미군기지로서 고정화되어간다.

중남부 주민들의 귀향이 대폭 지연된 것은, 부대 요원 감소를 주민 노동력으로 보충해야 하는 미군 입장에서 불편한 일이었다. 45년 8월에 25만 명이 넘던 오키나와의 미군은 1년 후인 46년 8월에는 2만 명으로 격감하고 48년 8월에는 만 명까지 떨어진다.<sup>22)</sup> 군사시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군사시설이 밀집하는 본도 중부에 주민들을 다시 정주시키는 것이 필요했지만 토지 개방은 늦어졌다. 당시 군정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건전한 남성 노동력의 비율은 전 인구의 불과 9%에 지나지 않다. (중략) 1946년 1월 1일 이후 주민들의 재정주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도 고용된 부대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살게 된 노동자는 거의 없었다.<sup>23)</sup>

주민들의 재정주를 진행시키고 싶은 군정부에 대해 각 부대는 토지 개방을 꺼려했다. 그 뒤 군사시설 주변에서 토지 개방이 실행될 때, 미군으로서의 이점으로 강조되었던 것이 노동력의 필요성이었다. 46년 5월 군민협의 자리에서 군정부에서는 ‘미국에서의 수입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농경지를 준다’, ‘군으로서 노무자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마을이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sup>24)</sup> 이렇게 개방되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미군시설의 노동자가 되기를 기대받은 존재였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얼마 안 되는 거주지만이 개방되고 과거의 농경지는 미군이 계속 점거하고 있다는 사태는 미군기지의 노동자가 되기를 강요당하는 사태에 다름이 아니었다. 장기간 사용된 미군기지의 면적은 오키나와 본도의 약 14%였지만 농업에 적합한 평지에 한정시키면 미군이 사용하는 비중은 더 높았다.

1952년에 이르기까지 미군은 점거한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겨우 지

---

21) Report of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for Period from 1 April 1945 to 1 July 1946, p. 8.(『沖繩戰後初期占領資料』12卷, 125쪽)

22) Arnold G. Fisch Jr., "Military Government in the Ryukyu Islands, 1945-1950",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 C., 1988, p. 74.

23) Report of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for Period from 1 April 1945 to 1 July 1946, p. 32.(『沖繩戰後初期占領資料』12卷, 150쪽)

24) 『沖繩県史料 戦後2 沖繩民政府記録2』, 沖繩県教育委員会, 1988, 54쪽.

불이 시작된 군용지대 역시 아주 소액이었다. 나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기지 노동에 종사하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기지 노동자 수는 47년 1월에 2만 명, 같은 해 6월에 4만 명으로 증가해 오키나와 전체 취업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최대의 미 공군기지가 된 가데나기지 주변의 마을에서는 마을 면적의 70~90%가 미군에 의해 점거되었으며 취업 인구의 60% 이상이 기지노동자가 되는 마을도 있었다.

지상전과 더불어 설치된 민간인수용소는 그 뒤 1년 동안에 해소되고 많은 주민들이 귀향했다. 하지만 군사시설로의 노동력 동원은 그 후의 사회에서도 계속되었다. 물론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취업이다. 그러나 수용소에 주민들을 격리시키면서 구축된 기지가 그 뒤에도 땅을 계속 점거하고 생활의 길을 막아버린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사람들의 의지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 밑바닥에 가로놓여 있는 파괴나 강제에 대해 생각할 때 민간인수용소가 담당한 기능에 시선을 돌리는 것은 중요하다.

[후지이 다케시 옮김]

# Civilian concentration camps in Okinawa

TORIYAMA Atsushi

On 1 April 1945, US troops landed at the Okinawa Island and started to construct military bases. In order to prepare for invasion of Japan mainland, US troops needed many airfields and facilities to store weapons and materials. So they destroyed villages and fields to use the land for military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many civilians to be protect in the battlefield. US military government established concentration camps for civilians, but the land distributed to military government were very small and not suited to live. Many civilians were forced to move into northern area of the island and keep in concentration camps. They were not permitted to go back to their village until October 1945.

Military government constructed shelters and supplied foods and deployed civilians to works including military operation such as construction of airfields. US troops needed labor force, especially men labor, to support their operations. In some concentration camps, civilian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men who can bear physical labor and the rest.

After Japan's surrender US troops moved to Japan mainland and Korea, a lack of labor became serious in many military facilities. But there were few civilian labor force in central and southern districts in Okinawa, because there were no land for resettlement in these areas. Then US troops changed their policy to open small land for resettlement of civilians. But huge land continued to be occupied by US troops, so many civilians had no land for agriculture and had no choice but to work in military bases.

All civilian concentration camp disappeared in 1946, many civilians continued to be deprived their village by US troops and work in military bases to survive.

<2부>

과거사 극복의  
현재와 전망

# 한국 과거청산의 사회적 효과와 재인식

정호기(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연구교수)

## 1. 머리말

과거사를 재평가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은 고저(高低)는 있을 수 있으나 중단될 수 없는 프로메테우스(Prometheus)의 운명과 같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구성과 전망이 과거와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원리에 조응하므로 그러하다. 이 과정에서 과거는 현재의 필요와 지배세력의 인식 및 이해관계에 따라 변환한다. 현재의 지배세력은 공식적 과거의 재구성에 공개적으로 깊숙이 혹은 은밀하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잘못된 역사의 복원’과 ‘진실의 재조명’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과거는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분리되지 않으며, 현재와 미래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 요소이다.<sup>1)</sup> 종종 과거청산과 유사한 형태로 지난 일의 정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행위는 흔히 정치적 지배체제의 전환과 더불어 지난 정권들의 이념과 정책,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로 나타난다. 이때 관련자의 공과를 밝혀내고, 사법부의 잣대를 들이 대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청산으로 명명되보다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지배세력들 간의 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정치 세력화와 관련된 문제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와 비교하면 과거청산은 피지배 계층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다양한 유형의 상처를 최대한 치유하여 피해를 복원하는 것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사회적·제도적 장치들을 만들고,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을 추진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과거청산은 그간에 권력과 지배자(집단)들의 책임 소재가 직·간접적으로 공개되는 특성을 띠고 있었다. 과거사의 직접적 책임자들이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우리 모두가 보듬어야 할 문제로 전화시켜 책임자가 사라지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책임자를 사법적으로 단죄함으로써 ‘인과응보’가 실현되기도 했다.

해외의 사례들도 보여주듯이, 과거청산은 정치적 힘 관계의 쟁투가 되고 사회적 열망의 분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청산이 이루어진 국가들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바람직한 ‘선행 모델’로 인식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한국의 과거청산과 유사한 환경과 조건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한 과거청산의 성과가 이를 희망하던 사람들의 기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들의 요구는 정형화되지 않은 채 변화했고, 과거청산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

1) Lowenthal, D. 김종원·한명숙 역, 2006, 『과거는 낯선 나라다』, 개마고원, 125-126.

가 지닌 구조적 장벽들과 숨어있던 암초들에 의해 좌초되기도 했다.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과거청산이 유사한 사건들의 재발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회성 과거청산으로 갈등이 봉합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청산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과거청산은 쌍방향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더 강조되는 효과의 지향점을 감안하면 내재적인 측면과 외재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내재적인 측면이 과거의 상처 치유 및 단죄와 상관성을 지닌다면, 외재적인 측면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와 더 상관적성을 갖는다. 따라서 내재적인 측면은 직접적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중시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외재적인 측면은 사회 구조와 제도 그리고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시선과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은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는 시기에는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청산이 제도화되고 구체화되는 시기에 이르면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차이가 점점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중요시하는가에 따라 과거청산 작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지점이 달라질 수 있고, 추후 진행할 목표의 좌표 설정과 방법에 영향을 준다.

과거청산의 지향과 수행 내용이 달라진다면, 이에 맞추어 운동의 목표와 지향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운동을 이끌어갈 주체들의 재구성과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직면한 해결 과제들에 대한 주체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나 예상치 상황들이 표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고찰하면, 과거청산운동에 관심을 갖는 세력들이 이에 관한 구체적 대안을 갖고 있지 않는지도 모른다. 학문 영역으로 국한해 보더라도, 과거청산에 대한 연구와 참여자들의 주요 관심이 과거청산 작업의 목표의 달성과 제도적 진행 과정에 집중되었고, 그 효과와 변화에 대한 재인식은 취약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과거청산의 성과가 왜 기대만큼의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했고, 사회운동 동력의 소진과 분화로 나타나는지를 이해할 단초를 발견하는 일은 의미가 있고 시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과거청산의 사회적 효과를 살펴보고, 이 문제를 재정립하게 하는 환경이 무엇인가를 시론의 수준으로 고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사회적 효과는 진실규명과 재현사업으로 국한했다. 그리고 과거청산에 대한 재인식에서는 주체를 중심으로 과거청산이 어떻게 사회적 쟁점이 되었으며, 구체화 과정에서 재편되었는가에 초점을 두어 살펴볼 것이다.

## 2. 과거청산의 요철과 변화

한국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요구가 계속 분출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매우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특별법 또는 대통령령에 의거해 구성된 각종 위원회들이 과거청산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청산은 새로운 사실(fact)들에 조명을 비추었고, 이를 토대로 왜곡되고 잘못된 과거사를 복원시키는데 기여했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완화시키는데도 일정하게 성과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이들 위원회들의 법률이 제정되고 출범할 당시 이를 저지하던 세력들의 공세 속에서 표출되었던 논쟁과 우려에 비하면,<sup>2)</sup> 과거청산 작업의 성과와 파급력은 기대 이하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근래의 정황은 과거청산의 결과가 정치·사회적 세력 관계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무화되거나 반전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과 생활 그리고 인식 전반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과거청산의 기원은 해방 직후 대중의 전폭적 지지 속에 추진되었던 친일협력자에 대한 행적 확인과 책임 추궁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과거청산을 재개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고, 정부 주관의 청산작업이 진행된 바 있었으나, 오늘날 진행되는 과거청산과 대비하면 차이가 크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과거청산의 흐름은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피해를 보상하고 복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국가적 조치들이 그 첫걸음이었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1월 16일에 발족되었던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2월 23일 정부에 보고한 ‘대정부 건의문’은 국가 차원의 과거청산 작업의 시작이었다. 그러데 이 조치는 피해자의 요구와 거리가 멀었고, 사회운동 진영의 저항을 불러왔다.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청산 작업의 방법과 내용의 차이는 사회운동의 결합을 촉진시켰고,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정부는 압박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청산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하는 방식으로 과거청산의 폭발력을 조절했다. 즉 1988년에 국회의 광주진상특위로 확장되었고, 1990년 8월에는 「광주민중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5·18보상법)」의 제정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5·18보상법은 민주자유당이 일방적 기습통과로 제정한 것이어서 피해자와 사회운동 진영의 요구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 경도되어 있었다. 이것은 과거청산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대립과 충돌이 격화될 것임을, 진정성과 충실성을 담보하지 못한 과거청산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제도권은 기존의 이해관계를 어느 선에서 유지할 것인가를 두고 대치해 공방을 펼쳤고, 애초에 근본적 과거청산에는 관심이 없었다.

5·18보상법이 제정되고, 민주화가 진전되자 그동안 억압되었던 과거사들의 진상규명과

2) 이용우는 과거청산을 반대하는 논리들을 6가지로 정리했다. ① 국론 분열, ② 경제 문제의 우선성, ③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 것, ④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심, ⑤ 모두가 죄인이거나 공범이라는 주장, ⑥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등이다. 이용우, 2008, 『프랑스의 과거사청산』, 역사비평사, 5쪽.

피해보상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었다. 과거사의 피해자들은 5·18특별법의 제정을 직시하면서 과거청산운동의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요구하는 일련의 행위들로 구성된 과거청산운동이라는 영역이 형성되었다. 이 영역에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연구자가 연대하여 활동했고, 사회운동의 중요한 부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과거청산운동은 한국사회의 광범위한 영역들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고, 적지 않은 변화를 추동했다.

과거청산은 말 그대로 당연시되어온 ‘과거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을, 현재적 인식과 합의에 입각해 다시 정의하고 지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청산이 과거사 위원회들과 같은 국가기구를 통해서 추진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 성과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사회의 깊은 곳들까지 파급되려면 제도화의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기에 과거사 위원회들의 구성과 활동 전망에 관심과 주의를 갖게 된다. 김동춘 교수가 정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sup>3)</sup> 현재 과거청산을 위해 제정되어 집행되고 있는 위원회만 해도 12개이며, 법률이 종결되거나 위원회가 해산한 것만 해도 10여 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청산은 낡은 사회적 의제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과거사 관련 법률들의 폐지와 위원회의 해체가 정부 위원회의 ‘필요성’과 ‘효율성’ 논리에 입각하여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다. 집권 초기 급박하게 전개되던 과거청산 중단 목소리는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다양한 작업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라는 캐치플레이의 깃발을 앞세우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했던 과거청산 작업에도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냉철하게 그동안 진행된 과거청산의 과정을 평가하면, 이러한 지적을 받을 만한 점들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한 책임의 큰 부분은 정치권에 있다. 과거청산의 구조와 활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법적 제약 요소들을 만들었고, 다양하게 분출하는 과거청산의 요구들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기존 정부들의 안일한 대처와 관료주의, 위원회 운영의 비전문성, 사회운동 진영의 약화 등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sup>4)</sup>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을 종료한 과거사 위원회만 해도 4개에 이르고, 여기에 정치적·사회적 파급력과 활동력이 낮은 위원회들을 제외하면 실제 가동되는 위원회는 몇 되지 않는데, 이마저 정리 수순을 밟아가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sup>5)</sup>

3) 김동춘, 2008, 「과거청산운동의 제도화와 과정과 변화」,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2008년 연구논문 발표집》.

4) 다양한 과거사 위원회들이 출범하면서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정치적 도구로 과거사가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각 위원회의 활동 결과와 내외적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되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망각과 기억’이라는 대당으로 파악될 수 없는 아주 미시적 관계망과 복잡한 구조 속에서 작동함을 인지하게 된다.

### 3. 과거청산의 사회적 효과

#### 1) 규명된 ‘진실’의 권위와 효과

진실규명은 과거청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과거청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근현대사 사건들의 실체를 재 규명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명예를 벗을 수 있으며 나아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근거임을 잘 알고 있다. 과거청산의 방법과 내용들은 다양하지만, 사실들(facts)의 발굴과 구성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규명된 진실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과거사가 위치한 사건적 정황과 맥락들을 충실하게 고려하고 고찰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청산에서는 진실을 규명하는 많은 인적 자원을 투입했다. 과거청산 작업의 초점이 명예회복과 보상에 맞추어진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진실규명이 선차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졌고, 비공식적 담론이 공식적 담론으로 승인되었다. 진실이 규명된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었고, 방송과 언론에서 다루어졌다. 그런데 방송과 언론에 널리 보도되는 내용들은 그 사건이 지닌 정치·사회적 파장, 진실규명 당시의 정세와 맞물려 있었다.

진실규명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과제는 이를 주도할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 ‘진실’에 접근할 것인가이다. 보수진영에서는 학계가 과거청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과거청산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변했다. 청산작업의 주체가 국가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내포하며, 또 다른 부정적 결과를 양산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었다. 앞서 진행된 과거청산에서 과거사와 직접 관련된 국가 기구들이 자료 공개 거부와 접근 방해로 비롯해 갖가지 방해 전술이 사용되었던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주체가 되고 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실익을 준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국가 기구들이 진실을 밝혀줄 자료들을 다수 보유한다고 믿었고, 국가 기구가 아니고선 자료와 기록에 접근할 재간이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국가를 과거청산의 주체로 세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했고, 이 기구에 최대의 권한과 힘을 실어줌으로서 난관을 헤쳐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염려했던 것처럼 국가를 과거청산의 주체로 내세우는 과정은 갈등과 가능성 축소를 동반했다.<sup>6)</sup> 이 문제는 그간 몇 번에 걸쳐 다루어졌기 때문에, 과정에 더 초점을

---

5) 현 정부는 특별법에 시한이 명시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은 시한이 도래하면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으로 하며, 시한 규정이 없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들은 폐지 또는 진실위원회로 흡수한다는 계획을 강행했다.

6) 최근 과거청산 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한 글로는 이춘열, 2007, 「고양 금정굴 사건 - 미

맞추어 진실의 권위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우선 기대에 비해 국가 기구들이 보유한 자료들은 많지 않았다. 물론 차단과 방해에 의해 또는 능력 부족으로 발굴하지 못한 자료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점과 과거청산 근거의 마련이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민감한 사안들의 자료들이 정리된 점들도 무관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정부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는 담론 및 내용들로 구성된 자료들의 해석과 여기에서 새로운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가였다. 저항 기억이 곧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와 다른 자료가 발굴되거나 기존의 주장을 더욱 정당화하는 자료들이 출현하면 난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주장되던 것과 달리 공개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담고 있기도 했고, 매우 복잡한 맥락과 정황에 위치하여 명확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것들도 있었다.

관련 문서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관련자의 증언을 수집하거나 구술 조사를 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쟁점은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로 모아진다. 이것은 개인과 집단 기억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인데, 문서와 이미지 자료에 높은 신뢰와 판단의 우위를 두는 관례로 인해 신뢰를 획득하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들은 진실이라는 것이 합의와 타협적 구성물임을 더 없이 잘 보여주었다.

물론 이러한 자료 수집과 조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들도 부지기수이다. 이것들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사실상 소멸하는 진짜 과거가 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자료가 수집된다고 해도, 그것이 진상은 아니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사건보고서는 일종의 과거를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누가 어떠한 목적의식과 기준에 의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가는 진실규명의 향방을 결정한다. 조사자 및 보고서 작성자의 감정과 주변의 여러 조건들도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건보고서는 진상이 공식화되는 경주의 출발선에 준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진상보고서는 크게 요동을 친다. 즉 대외적으로 공개되기까지 진상의 내용과 구성 등을 둘러싼 본격적 쟁투가 벌어지는 것이다. 가해자의 명시 여부, 실명의 거론 여부, 사건의 책임을 어느 선에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등 구조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사안들이 있는가하면, 어떤 용어와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와 같은 세부적 사안들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대립점이 형성된다. 이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타협과 협상의 터널을 지나온 진상보고서는 초안과 다른 모습을 갖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과정을 거쳐 진상보고서가 발표되었으나, 권위를 갖는 최종본이 되기 위해서는 ‘여론’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했다. 제주4·3사건에 대한 청산작업이 보여주듯이, 진상보고서와

---

완으로 끝난 무리한 조각 맞추기, 《진실화해위의 민간인학살 사건 진실규명 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회 자료집》.

다른 주장들이 형성한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내용을 수정했다. 그나마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피해자들이 혹은 진상규명운동의 주도 주체들이 납득하지 못하거나, 쟁점들을 해소할 분명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곤 했다. 그동안 국가기구에서 발표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이 몇 차례었던가를 돌이켜보면, 이는 명백하다.<sup>7)</sup>

이 글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진상규명의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다. 유감스럽게도 대다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설사 인지했다고 해도 현재의 삶과 연계를 짓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진실규명은 피해자들에게 위안을 가져다주는 했으나, 사회적 파장은 기대보다도 적었고, 과거의 아픈 상처를 헤집어 다시금 드러낸 것에 비해 얻은 것이 없었다. 상처에 대한 실질적인 치유방안의 시행을 요구했으나, 현재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감을 획득하는 것은 높은 장벽일 따름이었다.

그러므로 명예회복과 보상이 주된 과거청산이 아닌 한, 진상규명 이후에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던 피해의 원상회복에 대한 요구가 순조롭게 진행될 리 없었다. 진상규명을 토대로 다양한 청산작업으로의 연장과 전이가 가능한데, 핵심은 보·배상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보상과 배상 가운데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가도 논쟁이 되곤 했다. 집단모자를 조성하거나 추모탑 등을 건립하는 것은 일종의 집단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띠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 수준까지는 진상보고서를 통해 미흡하지만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보상으로 나아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sup>8)</sup> 보상금 지금은 법률상 개인 보상만 가능하다.

현재 진실위원회 등에서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사건들 가운데 개인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들이 다수 추진되고 있는데, 거창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진실위원회의 진상보고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법정에서 진상보고서가 어느 수준에서 인정될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사법부의 시선에서 보면, 진상보고서는 함량이 미달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법정은 훨씬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피해복원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의견들은 갈리고 있다.

책임 소재를 다루는 문제는 더욱 어렵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법적 처벌을 단행하는 것이거나, 이에 준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5·18민주화운동이 유일하다. 이것은 지속된 5월운동과 복합된

---

7) 2007년에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국방부의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를 다시 진실위원회에서 재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적지 않다.

8) 최근 한 추모의례에서 만난 한인섭 교수는 과거청산 작업의 수위를 진실규명, 보상, 책임자 처벌의 가능성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3가지가 법률상 동등한 수준에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치적 기회 구조가 적절하게 부합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과거사들은 이와 다른 조건에 처해있다. 따라서 가해자를 밝히고, 이들에 대해 사법적 처벌을 묻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사법적 책임이 아니라, 역사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현 수준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다. 식민지하 친일 및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에서 잘 드러나듯이, 이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일반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한 과거사들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과거청산에서 기억의 정치는 선과 악을 판정하고 선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모두가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말하며 다양한 논리를 들어 자신의 행동을 변호한다. 그리하여 자칫하면 ‘진실게임’이 이루어지는 장이 펼쳐지고, 최종 결과에 대해 서로 수궁하지 않은 상황들이 초래될 수 있다. 이를 둘러싼 이해와 갈등 관계는 심각한 경우 물리적 충돌로 발전하며,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이념과 세계관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논쟁의 지평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최근 새로운 역사교과서 출판을 두고 전개되는 갈등관계가 보여주듯이, 과거라는 것은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새롭게 기술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두가 가능하기에 과거와 역사를 둘러싼 논쟁은 기억의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우려되는 것은 기억의 재구성이, 한편으로는 보수 진영의 논거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 진영의 유리한 기억과 미화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는 기억의 정치가 작동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지, 기억의 정치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억의 정치는 본래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의 정치를 ‘기억투쟁’으로 파악하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 실천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점들이 과거청산의 사회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분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2) 사회적 기억과 재현

과거청산은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한 저항적 기억투쟁이 만들어낸 성과이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사건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착된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는 역사적 사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회적 기억을 교정하고, 전환하는 과정이 사회적 기억이 처음 형성되는 것에 비해 어렵다는 것이며, 이를 대신할 사회적 기억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사회적 기억은 개인적 기억의 산술적 총합이 아니다. 사회적 기억은 집단 기억으로 존재하는데,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집단 기억의 근간이 되는 개인의 기억들은 동일 주체 내에서도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충돌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간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기억들을 갖는 주체 혹은 집단이 접촉할 때, 격렬하게 대립·갈등하는 것은

다반사였다. 극단으로 치달으면 폭력을 동반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정의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이 논의가 모든 과거가 만들어진 것이고, 재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단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은폐되어 있을 뿐이다.

이 논의의 연장선에서 보면, 공식적 기억이 곧 사회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 종종 저항 기억이 사회적 기억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저항 기억이 공식적 기억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관심을 갖는 주요 지점은 사회적 기억의 변화에 작용하는 구조와 주체 및 다양한 요인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주요 지점과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적 심성사, 즉 망탈리테(mentalités)를 통해 역사적 생활공동체 성원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과 재구성되는 구조 및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기억의 재현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방법, 주체, 그리고 내용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기억의 재현 과정에 작용하는 정치·사회적 관계들을 밝히는 것이다. 넷째, 재현에 투사된 사회적 기억의 역사성과 상징성의 미학적·정치적 의미와 효과를 고찰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억이 표현되는 가장 일반적 방식은 재현이다. 재현은 과거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 가운데 특정한 기억을 표현하는 것이다. 르페브르(H. Lefebvre)와 하비(D. Harvey)의 연구들에서 확인되듯이, 재현은 어떤 맥락과 관계 속에 놓이는데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공간의 재현’은 지배적 사회질서가 물질적으로 각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재현의 공간’은 공간적 실천을 위한 새로운 의미나 가능성에 의미를 둔다. 이와 같이 재현은 다양한 실천 행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증시한다. 그러므로 재현과 공간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현은 부호, 신호, 공간적 담론, 이상적 계획, 경관, 상징적 공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가시적 대상으로 중요하게 착목하는 것이 상징 공간이다. 그런데 재현이 이루어지는 과거는 개인적 기억에서 집단 기억에 이르기까지 중층적이다. 분명한 점은 재현이 권위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동의 그리고 수용 등의 행위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합리적 토의에 기반하고 있다기보다 격렬한 대립과 갈등, 쟁투로 점철된 힘들의 충돌이며, 이를 통해 형성된 잠재적 혹은 중장기적 타협점을 보여준다. 재현의 타협은 국가 혹은 지배체제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강제성을 띠는데, 다른 기억 주체들의 동의를 고려하지 않으면 효력을 쉽게 상실하고 원점으로 회귀한다.

과거의 순수한 재현이란 가능하지 않다. 사실을 밝히는 것 혹은 사실이라고 말해지는 것은 사건의 시·공간적 배치로 설명될 수 있으나, 과거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과거는 고정된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과거의 사회적 기억과 인식은 변화하기 때문이다.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변화의 속도는 기억 주체들의 권력과 역능 관계 속에서 특정화된

다.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변화하고, 때로는 전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현 공간에 담겨진 내용은 왕왕 지배적 사회질서의 기호와 아이콘으로 채워지곤 한다. 다소 정도가 약하고, 발생 빈도가 낮기는 해도 저항적 기억투쟁의 일환으로 재현이 이루어지는 것에서도 발견된다. 과거의 기억을 재현하는 주체들이 과거와 현재로부터 단절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로부터의 구속은 자기검열과 지배질서 내부로의 포섭 혹은 동화 등으로 나타나며, 현재로부터의 구속은 권력의 획득과 강화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과거의 재현공간에 담겨진 내용은 당시의 인식을 대표하는 사회적 기억이라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를 지지하는 세력의 규모와 힘이 축소되거나 이를 바라보는 정치·사회적 구조와 담론이 변화하게 되면, 재현공간에 투사된 기억은 위기에 봉착한다.

위기는 재현공간의 상징과 물리적 공간 그 자체에 가해지기도 하고, 이를 구성하는 내용과 담론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재현공간 혹은 재현물의 상징성과 의미가 약화되거나 전복됨으로 인해 해체나 변형을 거듭한 사례들은 부지기수이다. 이와 대비적으로 억압되었거나 비공식적이었던 저항기억이 재현공간 혹은 재현물로 등장하는 사례들도 수없이 많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과거청산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구체화하는 구조를 형성해내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기능하고 있다.

저항적 기억투쟁이 역동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사회적 기억과 재현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저항기억이 사회적 집합기억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공식화하려는 제도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재현은 비로소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현할 대상의 선별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아가 어떤 방식과 형태로 재현할 것인가도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민할 겨를도 없이 수많은 저항적 기억이 제도적 영역으로 신속하게 포섭되었고, 재현의 생명력인 공간적 실천은 퇴색해갔다. 역으로 이렇게 재현된 공간은 원초적 저항 기억과는 차이를 둔 새로운 사회적 기억을 생산하고 있어서 제도화의 효과를 실감하게 해준다.

#### 4. 과거청산의 재인식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규명한 진실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며, 사회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조사와 연구를 한 후 국가 기구를 통해 발표된 진실이라는 것이 정말 영향력을 갖기는 한 것일까? 단편적 사례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 질문에 어느 정도 근접한 답을 주는 일이 최근에 발생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사건들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과거청산이 이루어졌던 다수의 사건들에서 종종 벌어지곤 했는데, 이번 사건은 이전과 달리 받아들여진다.

2008년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는 「제60주년 제주4·3사건 희생제 위령제」가 개최되었다. 행사장 전면 우측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내건 플래카드가 게시되어 있었다. 이 플래카드는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는데, 우선 다른 플래카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희소성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플래카드의 글이 주는 메시지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것이었다. 이 플래카드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제60주년 제4·3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하시어 정말 고맙수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 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제주4·3사건이 국가로부터의 긍정적 인정을 얼마나 갈망하는가를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숙고하면 이들이 지향하는 과거청산의 목적과 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하여 공식 사과를 했지만, 국가로부터의 인정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과거청산에 관한 부정적 발언들이 연일 계속되었기 때문에 4·3사건 관련자들로서는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위령제에 대통령의 참석을 공식 청원했으나, 국무총리가 대리 참석하여 추도사를 했다. 국무총리는 추도사에서 “정부는 4·3사건의 진실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나가는데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2달 만인 6월에 국방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에게 4·3사건에 다룬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음이 9월 17일에 드러났다.<sup>9)</sup>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과 정부의 공식 사과 그리고 다양한 명예회복 조치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의 평가와 정의를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약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한국에서의 과거청산, 특히 진실규명이라는 작업의 성과와 효과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제도화를 통해 결정을 아무리 내려도, 그리고 이에 따른 명예회복과 피해 회복 조치들을 담은 권고를 아무리 반복해도, 이를 받아들여야 할 주체들이 생색내는 최소 수준으로 갈무리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반발로 대응한다면 차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대중의 여론과 강력한 사회운동에서 나오고 있는데, 과거청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와 다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영향력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과거청산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도출된다. 제도화의 구조와 형식을 빌려 과거청산을 한 궁극적 의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 기구에 의해 과거청산이 되었다고 해도 그 결과가 사회화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실익과 변화를 획득하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9) 「경향신문」, 2008. 9. 18. 국방부는 ‘제주4·3사건을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 진압 과정 속에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연동하여 과거청산을 재인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볼 지점이 주체의 문제이다. 과거사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했으나, 사회적으로는 ‘사건’으로 인식되어 집합적 성격으로 특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넓게 보면, 한국에서의 과거청산 작업이 중장기화 되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아졌다. 과거청산의 대상과 위원회의 주요 목적 그리고 시기에 따라 평가는 다르겠지만, 공통된 의견은 과거청산 작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 실제 진행 구조 및 과정간의 간극이 컸다는 점이다. 이들은 과거청산이 지연되고 본연의 궤도로 진행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를 법적 조건의 미비와 수행 환경의 열악성에서 찾고 있었고, 현재와 같은 위원회 구조로는 내적·외적 갈등과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는 위원회를 둘러싸고 있는 유족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등에서도 발생했다. 과거청산 법률의 제정과 위원회의 출범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서로 다른 시각과 이해가 표면화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는 급속하게 가시화되었다. 직접적 관련단체들은 과거청산운동에서의 외형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직접 국가 기구인 위원회를 상대하려 했고, 이 경향이 심화되면서 과거사들은 사건과 희생자로 개별화되었다. 여기에 과거청산운동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유족들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공동의 목표에 대한 동의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게 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과거청산운동의 주체들은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자들을 경쟁 상대 또는 장애물로 바라보기도 했다. 그리하여 ‘누구를 용서할 것이며, 무엇을 용서할 것인가’, ‘과거청산을 함으로써 우리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은 희석되고, 화해와 보상 그리고 추모 사업으로의 신속한 진행에만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엄밀하게 보면, 직접적 피해자에게 숙련된 사회운동적 인식과 시선을 요구하는 것은 과욕이었는데도 모른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들의 삶의 궤적은 사회운동과 거리가 멀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주체들과 사회운동적 목표를 갖는 주체들이 연대하여 활동을 했으니,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은 당연했다. 직접적 피해자들은 위기 국면에 봉착하면,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자의 도움을 다시 요청하곤 했다. 그러나 지난 과거청산의 과정과 결과들을 돌이켜볼 때, 운동 역량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공동의 목표가 사라져버렸고, 분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상처가 깊고 컸던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가를 성찰하지 않았고, 운동의 역동성이 무엇인지를 체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법률에 근거한 과거청산이 진행되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었고, 이에 비례하여 시민사회의 연대 및 지원 구조는 급속히 위축되었다. 제도권으로 진입한 시민사회의 역량들은 구조와 활동의 안착 과정에서 관료화되거나 기진맥진한 상태로 전략하곤 했다. 외부의 잔여 시민사회와 연구자 역량은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했고, 한동안 방치되다가 새로운 운동 목표와 일을 찾아 해산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자장을 벗어나지 못한 인적 자원들은 과도한 하중의 집중으로 내파하고 있다.

## 5. 맺음말

한국에서의 과거청산은 대상과 내용 그리고 방법 등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으로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현재에도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과거청산 작업이 힘겹고 복잡한 것은 단지 은폐된 또는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청산의 유형과 수준은 다양하다. 그렇지만 과거청산의 실행이 과거의 사람은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도 법과 제도의 권한으로 호출하고, 이를 계기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말해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긴장과 대립을 유발시킨다. 그리하여 밝혀진 진상에 의거하여 사회적 기억과 역사를 수정 및 재구성하는 것과 재발을 차단하는 다양한 장치들의 제정 및 실현을 감내하는 것이 두렵고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다양한 형태의 기득권과 독점 그리고 권위의 박탈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청산 작업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또는 도달할 지점이 사회통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법률과 제도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과거청산 작업들은 대부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즉 과거청산은 대립의 해소와 타협 그리고 갈등의 봉합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전개되던 과거청산의 요구가 제도권에 진입하여 실행되면, 이러한 경향과 지향은 선명해진다. 사회통합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의 복원에 관한 사안의 실현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가시적 효과와 영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람의 관계 속으로 삼투되어 통계 수치로만 남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익명화되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간에 이루어진 과거청산의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입증해주고 있다.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실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청산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교훈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진행된 과거청산은 자칫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사의 공간적 재현은 사회통합이라는 과거청산 작업의 효과를 증식시키는 방법으로 선호된다. 이는 선별된 기억과 역사를 공간과 장소에 투사시키는 일련의 행위이다. 재현사업은 이중성을 지닌다. 즉, 기억하는 것임과 동시에 망각하는 것이고, 진상을 공공 공간에 펼쳐내는 것임과 동시에 순치시키고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정부(관료), 관련자(단체), 전문가(집단) 그리고 기념 자본의 대립, 타협, 기만 등이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작동한다. 이에 관련된 여러 주체들은 이를 통해 우월적 지위를 획득하고, 이해를 관철시키려 한다. 그리고 기념사업에 투입된 경제적 자원과 사업의 규모에 의거하여 상처에 대한 정치·사회적 관심을 가늠하는 형태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념사업이 지닌 양면성과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또는 기념대상자들의 활동

과 희생을 후손이 오랫동안 기억해 주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기념사업 만큼 가치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

실제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과거청산 작업들은 이것의 제도화를 요구하던 시점과 달리 수많은 문제와 쟁점들에 직면했다.<sup>10)</sup>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근래의 추세를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과거청산은 종반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그러나 세계의 여러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청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항상 유혹의 손짓을 하며, 존재감을 알리려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그 순간이 지나자마자 과거가 되고,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해야 하는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10) 진진성, 2006,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 기억의 문화사로」, 『역사비평』 제76호, 역사비평사, 462쪽.

# 「改造」と「認罪」

## 一 中華人民共和國における「戦犯管理所」の起源と展開

丸川哲史

### 1

日中戦争を振り返る視点として、それを十五年戦争として考察する向きが強かった日本の学術界に対して、中国側は政府民間の区別なく、抗日八年という用語が頻用されていることから(台湾の中華民国政府もそのように表現する)、そこにお互いの戦争観のズレ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十五年戦争という場合は、それは当然満州事変からの年月であり、それを中国への侵略行為の起点とする、それなりの妥当性を有する数え方である一方、中国の八年とは、その前年からの国共合作という政治協力による抗戦体制の確立を暗に示すことになる。つまり、日中戦争というプロセスは、侵略と防衛とが対称的に表裏一体となった軍事現象ではなく、軍事と政治の戦争という非対称的な構図をそこに見出す歴史現象であったと言えるだろう。また別の観点からするならば、日中戦争の相互の非対称性は、非戦闘員への残虐行為という重い歴史現象を起点にして考察することもできる。端的に、中国側戦闘員による日本人非戦闘員への残虐行為が、全く成立し得ない戦争であった。また尚且つこの出来事を日本側に即して言うならば、そういった非戦闘員への集団的な残虐行為それ自体が、日本の戦争史上においても初めてに近い経験だ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世界史的には、非戦闘員を巻き込んだ総力戦への否定的感情が後の「平和に対する罪」「人道に対する罪」といった観念に結実するわけだが、日本による中国への侵略行為は、まさにそのことが問題化する戦争となったわけである。

その意味で、今日注目されている日中戦争にかかわる戦後補償問題は、日本国内の政治陣営における二つの類型を形成せざるを得ないところとなっている。つまり、右翼側の抵抗感は、事後法としての「平和に対する罪」「人道に対する罪」が戦争当時に遡及される不当な裁きとしてそれを否認する行為に現れている。また一方で戦後補償を進める側の論理は、「平和に対する罪」「人道に対する罪」という観念を事後的にでも承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と差し当たり表現できるかもしれない。その意味でも、戦後補償にかかわる問題は、戦争にかかわる歴史観そのもの、さらに言えば戦争によって形成された観念と現実とのタイムラグを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極めて思想的な課題を孕んでいることを認めざるを得ないものであ

る。

蛇足が長すぎたようである。本稿で指し示したいのは、このような問題意識に立った際に派生するもう一つの重要事項である。非戦闘員への残虐行為にかかわる問題の考察については、現在までに様々な識者が歴史的な検証を進めているわけであるが、もう一つここで付け加えたいのは、非戦闘員でなく、戦争の過程の中で戦闘員から非戦闘員に移った人々のこと、つまり捕虜という存在に対する考察である。周知の通り、捕虜の保護にかかわる国際法は、第一次大戦以前、一八九九年の第一回万国平和会議において定められたハーグ陸戦条約として成立しており、一九一一年に日本もそれを批准しており、翌年には「陸戦ノ法規慣例ニ関スル条約」として国内に公布されている。しかしその後、世界史的にこの捕虜にかかわる保護規定は、スペイン内乱から第二次大戦にかけて、ゲリラ戦の登場による正規兵・非正規兵の曖昧化によって、徐々に破られていく。実は、日本の場合も、日露戦争までは守られていた捕虜の保護規定が日中戦争時において守られなくなったと言われてることも、このゲリラ戦という総力戦の裏側に張り付いたもう一つの戦争形態の登場によっているわけである。

もちろん今日の観点からして、農民・市民も協力者としたゲリラ戦による抵抗を受けたからといって、捕虜の保護規定が守られなかったことを正当化することは不可能である。こういった部分も先述したように、歴史に対する見方そのものの難しさを表現しているとは言える。ただここで注意を促したいのは、ゲリラ戦を実行した集団のその捕虜となった日本兵の問題である。つまり論理的に言えば、捕虜虐待へと向わせた動力としてゲリラ戦があったとして、そのゲリラ戦をする側において獲得された捕虜が果たしてどうなった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ずはこの極めて皮肉な歴史のめぐり合わせに驚いてみる必要があるだろう。

本稿は、日本人捕虜という存在、さらに戦犯とされた人々の存在を中心議題とするが、その前に若干の説明を試み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中国側の戦争観である。先のハーグ陸戦条約であるが、それが成立した万国平和会議に中国(清朝)代表は参加しているのだが、その際ハーグ陸戦条約には調印していない。しかしこれは、ハーグ陸戦条約に反対したという意味ではない。当時、中国(清朝)には、近代的な陸軍組織が完成していなかったがために、中国(清朝)の代表者は、傍観者たらざるを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そして次に第一次大戦時での中国の立場であるが、ここでも中国は、實際上、大戦に参加し得るようなアクターではなかった。つまり中国は、世界大戦史の水準においてはずっと「遅れた」側にあったと言えるし、その近代的な隊の未成熟という側面からも、ゲリラ戦を採用することになったと言え

るわけである(特に共産党側の場合、国際的な援助が十分に得られなかった)。毛沢東も、実は黄軍官学校の教官や学生を通じて、ソ連式の軍事技術の知識を有していたと言われているが、実はゲリラ戦にかかわる知識は、彼の育った環境に規定されたところの太平天国の乱や農民暴動、またそれを抑える軍閥軍などへの見聞が元にな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総じて、中国共産党のゲリラ戦にかかわる方法論は、中国独自の歴史的地盤から派生した面が大きかったと言えるだろう。

## 2

こういった前提を踏まえた上で、ここから考えたいことは、まさに八路軍(新四軍も含む第十八集團軍というべきだが、それらを総称した慣用語として「八路軍」を使用する)が行った捕虜政策の歴史的な意味である。さて先述したように、中国は独自の近代的軍隊を持つことが中々できない「遅れ」の中にあつたという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ことである。その意味で、ハーグ陸戦条約にも調印できなかったし、また非戦闘員を巻き込んだ総力戦への嫌悪から潜在的に意識化されつつあつた「平和に対する罪」「人道に対する罪」についても、八路軍は、事実上それらの文脈の外に置かれていたと考えることが至当であろうと思われる。何故なら、事実上「平和に対する罪」「人道に対する罪」は、ヨーロッパ帝国主義国家同士の総力戦の経験から抽出されたものであり、中国はその外側にあらざるを得ないわけである。そのことは、だから毛沢東の戦争観にも如実に現れている。「持久戦論」(一九三八)の中で毛沢東は、この戦争について日本軍国主義による反動的な戦争と中国による進歩的な戦争という構図の正統性を主張する限りにおいて、抽象的な平和の観念とは無縁であつたことがまた当然のこと受け取れる。しかして問題は、「人道に対する罪」に近い発想があつたかどうかということである。先んじて結論を言えば、捕虜に対する優遇政策は、ヨーロッパとは別の文脈において成立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る(後に詳述)。日中戦争は、紛れもなく第二次大戦の一部である必然性を持ちつつも、その文脈とは一定程度切り離された独自のコースを作っていたかを承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意味で、なぜ特に八路軍において捕虜優遇政策が成立し得たのか、さらにその捕虜優遇政策がまた、後の撫順及び太原における戦犯管理所におけるその独特の活動——「改造」と「認罪」に繋がったのかを知ることが重要な作業となる。

共産党の指導下の捕虜優遇政策について考察を進める際の研究態度として、抗日戦争、国共内戦の帰趨などから事後的に作られた国家イデオロギーから離れた叙述が必要であり、またそのような資料に当たるべきことが必要とされるだろう。その意味で、当時、日本との戦争にかかわって有効な宣伝の方策を探求しようとしてい

たアメリカ戦時情報局の延安への軍事視察団(United States Army Observer Group)の派遣の事跡は、大いにその資料的価値が認められるところとなっている。以下、それらミッションが残した『延安リポート』(岩波書店山本武利編訳)の報告と、またこの「延安リポート」を分析評価した山極晃の『米戦時情報局の「延安報告」と日本人民解放連盟』(大月書店)の叙述に沿いながら、捕虜優遇政策の由来を探ることにしたい。

「延安リポート」は、アメリカ戦時情報局が主に南方戦線における日本軍に対する宣伝活動の参考にするために、当時延安にいた敵軍工作副部長の李初梨や岡野進(野坂参三)などへの聴き取りや、またそこで得られた資料などを通じて作成されたものである。リポートの内容は、八路軍の対日心理作戦から捕虜政策、さらに実際のピラの内容の報告、また日本人民解放同盟や捕虜を反戦活動に従事させるための日本労農学校への調査など、実に多岐に渡っている。興味深いのは、それらアメリカ側のミッションにとって、八路軍の捕虜政策から学ぶことは多かったものの、実際に、八路軍が実施した捕虜優遇政策は現に南方で戦う米軍には適応できなかった、という事実がある。アメリカの軍人は、一般として捕虜政策や心理戦を軽視しがちであったし、また兵士たちも一発でも多くの弾丸や爆弾を日本軍に放ちたがっていた。それは実に米軍が軍事的に日本軍に勝っている自信から来る心的傾向と考えられる。捕虜優遇政策は、軍事的な劣勢を補う手段であった、という側面を見る必要がある。その意味でも、支那方面軍を指揮していた島貫武大佐が八路軍に対して、「彼らは思想、軍事、政治、経済の諸施策を巧みに統合して、その努力を政治七分、軍事三分においている。従って我もまた軍事力のみでは鎮圧することはできず、これら多元的、複合的施策を統合発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評していたことは、興味深い。軍政学的な見地で言えば、まさに八路軍の捕虜優遇政策も含んだ戦争戦略は、軍事的力量を補わんがための方法論として、軍事に対する政治の優位を志向したものだと言えるだろう。

しかしてこの「延安リポート」が日本人にとって最も興味深く読まれる部分とは、まさに米軍には適応できなかったとされる部分、捕虜優遇政策の由来である。まず抗日戦争初期においては、八路軍の捕虜政策は十分な成果を収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まず、日本の兵士は捕虜を不名誉なこととする心理が大きく、また日本軍内の教育の結果、捕まれば拷問を受けたり、殺されると信じていたようである。この初期の段階において、捕虜に対して示された「軍閥打倒」「天皇制打倒」といったスローガンは、ほとんど見向きもされなかったようである。そのうちいく度もの試行錯誤から、八路軍の工作者は、日本兵が八路軍側の友好的な態度や同情的な扱い

に対して驚くほど敏感に反応を示したことに着目するところとなった。工作者たちは、初期段階として、日本兵の不信や敵対心を取り除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の結論に達したのである。さらに興味深いのは、人間的な接触が重要視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同時に、当時の捕虜収容の限度も問題もあり、さらなる教育を欲する者にはその道が与えられる一方、また釈放されることを望む者には釈放の道が与えられることになった。これは、また大きな成果をもたらした。つまり、敵に捕まれば虐待されまた銃殺されると信じられていた日本軍に、その教育内容を裏切る「証拠」がメッセージとして送り届けられるからである。この「証拠」の送致によって、日本軍内部の教育の正統性に揺らぎが生じていることが内部通報者からの報告として確認され、またその結果として「最後の突撃」が回避され、投降して出て来る事象が増えたと、八路軍側は考えている。

「延安リポート」において、まさにこの捕虜政策にかかわる部分は、日中戦争という戦争全体の性格を再規定する上でも、実に大きな示唆を与えてくれる。捕虜に対して人間的な扱いというものを施し、味方になるものにはさらに教育し、釈放を希望するものは釈放する——このような施策は、まさに戦争という次元に「政治」の次元を挿入したと言える。つまりここでいう「政治」とは、カール・シュミットによっても定式化されたところの、誰を敵とし、誰を友とするかを再編する働きである。八路軍に捕まった捕虜は、武装解除された後は潜在的な友としては扱われ、また釈放のために日本軍の近くまで送り届けるまでその関係が維持されるわけである。そして釈放され自軍に戻った日本兵は、自国の軍隊の内部においてむしろ敵視され、かつて敵に捕まった際にそうされると脅されていた拷問を味方から受け、またある部分は自殺に追い込まれるわけである。結果として、このような敵友関係の再編という「政治」は、まさに日本軍の「最後の突撃」を思いとどまらせる効果において、日本軍側の人命の節約にも繋がっていたと言えるわけである。

ある意味、これこそ中国革命を担った「政治」の真髄とも呼べるものであろう。もちろん中国革命総体を中国共産党の思想それ自体に、また毛沢東の思想自体に局限す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ではある。だがそれにしても、毛沢東が書いた最も早い時期の政治文章である「中国社会各階級の分析」（一九二六）の第一行目が、「だれがわれわれの敵か。だれがわれわれの友か。この問題は革命のいちばん重要な問題である」と始められていることは、それなりに振り返ってみられるものであるかもしれない。つまりこの「政治」というもの、中国共産党の言語からするならば「革命」は、また抗日戦争の期間を通じて、一つの大きな思想的枠組みとして機能することになったと見られるべきだろう。

今日日中戦争全体の性格を見る上で、この「革命」の機能を過大視することは、また歴史学的知見の総合的な深化という目的を考える上でも、慎ま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はあろう。だが、このような日中戦争を通じて「潜在的な新中国」側が作り上げた「革命」というファクターは、むしろ今日においても重視されないものとなってきていることにも注意を傾けるべきであろう。このことは、後に詳述するが、実のところ今日の中国側の日中戦争に対する歴史観は、この「革命」の要素を消去する方向で動いている。新中国側が行った瀋陽裁判が忘れられ、むしろ新中国成立以前の東京裁判への同一化が促進される事態に「革命」の退潮が見て取れるわけである。

こういった中国側の歴史解釈における政治的次元の消去と見合うように、日本側からしても、日中戦争という出来事は、政治的次元を消去する方向に終始しているように見受けられる。象徴的なのは、南京事件にかかわる虐殺の数字をめぐる国内における左右の対立がクローズアップされるなど、日中戦争の歴史的意味は、実証による確認の水準から脱し得ていないようである。このような袋小路の歴史的前提として、内在的批評を伴わない文革の終了に帰結した新中国の革命政治の進展とその挫折が、日本側に跳ね返っていた事態を重く見ざるを得ない。それは例えば、日中友好協会が文革を推進する中国共産党への支持・不支持をめぐる分裂し、果たしてその後もこの分裂を修復できていないことに象徴されるところのものである。そのような日中友好運動の歴史的検証、あるいは新左翼勢力の中で見られた毛沢東思想の受容にかかわる歴史的検証が為されないまま、つまり中国政治に対する歴史感覚が失調したままその失調状態が固着化している、というのが今日の現状ではないだろうか。かかる事態において、そのような失調状態を克服せんとする類稀なケースとして、中婦連(中国婦国者連絡会)の活動には注目されるべき多くの示唆が潜在している。

一つの象徴的な出来事は、中婦連が文革期において日中友好協会と同様の分裂を経験しながらも、しかし撫順や太原の戦犯管理所での経験を元手に、八十年代半ばから後半にかけて再統一を果たし、その後九十年代においてむしろその活動を活発化させたことである。彼の撫順や太原の体験は、煎じ詰めれば新中国の革命政治の中に位置づけられるものである。つまり今日、日中戦争という出来事を如何に日本人が受容していくのかという際に、日中戦争当時に発生した日本軍の残虐行為にかかわる解明だけでは済まない歴史が潜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新中国の革命政治の経験を携えた人間がその後をどのように生きたのかという歴史、またそれら

経験者の思想をどのように受け継ぐのかという課題を含んだ総体として、まさに見つ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 4

さて戦犯たちが新中国の戦犯管理所で得られた歴史的経験を考察する前に、予備的に概観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る。日中戦争が戦闘行為としては終了した後で、日中戦争という経験がどのように表象されることになったのか、特に新中国成立に結びついた勢力に対する日本側の見方がどうなっていたのか、さらに新中国成立以降の中国内部における革命政治の進展がどのようであったのか、瞥見してみたい。当然そこには、冷戦の影が差すであろうことが予知される。

一九四五年八月の終戦から、日本ではGHQ主導による民主主義改革の一部として、日本共産党の再建(一九四五年十二月)があり、翌年の一月には、延安にいた野坂参三(岡野進)の帰国などがあり、GHQと戦中からの反戦勢力との蜜月期が印象付けられる時期が存在した。しかしこのような蜜月期は、一九四七年一月に予定されていた全官公労のストライキへのGHQの干渉に象徴されるように、徐々に冷戦状況の進展とともに破られていくわけである。このようなある意味周知の事実を提出しながら探してみたいのは、当時の復員した人々にとって、日中戦争における敵の表象、取り分け八路軍のイメージがそれによって干渉された節があるからである。

敗戦直後に流行した大衆小説として、田村泰次郎の『春婦伝』(一九四六)を上げるとは、一つの代表的な例として妥当性を持つものと言えよう。作品の中で主人公の慰安婦春美とその恋人三上等兵が八路軍の襲撃によって捕虜となった後の展開を取り出してみたい。戦闘によって負傷した三上の様子を見に来た政治部の人間は彼に、元の部隊に戻ったとしても軍法会議にかけられるか死刑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説明するものの、三上は隊へ戻ると言明し部隊に戻る。しかし隊に戻った後、三上は独房へ押し込まれ、三上は春美とともに結局を自殺するのである。こういったストーリーが大衆小説として表現されていたこと自体に興味がそそられるが、まさにこの内容が「延安リポート」を正確になぞっていることは驚きである。だが、問題はその後である。この『春婦伝』は、映画フィルムとして再登場することになる。『春婦伝』を原作とした『暁の脱走』(一九五〇)が、谷口千吉督(黒澤明脚本)によって撮られることになる。中国から帰った山口淑子(李香蘭)がヒロインを務めたことなど、話題性もあるこのフィルムは、しかしGHQ傘下の情報機関による数度の脚本に対する修正を余儀なくされた産物であった。かくして例の主人公たちが捕虜となる場面では、八路軍ではなく、国民党の政治部員へと変更されているのである。

これは一つの小さい例に過ぎないとも言えようが、確かに冷戦の影は、日中戦争の中で生じていた「政治」の次元を捻じ曲げ、日本人の文化記憶に干渉していたことになる。それはまた、戦犯管理所から帰還した元戦犯たちに対するマスメディアレベルでの反応、つまり「アカ」や「洗脳」といったレッテル張りにも直結していないとは言い切れない。少なくとも、八路軍で受けた捕虜優遇政策に対する文化記憶が、日本社会の中である程度共有され、また一般化していたならば、さほどの酷い反応は起こらなかったはずではないだろうか。「洗脳 brain washing」という用語そのものが、朝鮮戦争中にアメリカの情報機関によって作られた概念であった。それは、朝鮮戦争下において、捕虜となった米軍兵士が短期間に敵側の宣伝工作に携わることになったことへの警戒心から進められた研究の「成果」である。これほど左様に、日本社会における日中戦争の記憶は、冷戦文化によって(あるいは日本人自身によって)歪められ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からうと思われる。

さて、もう一方の側面として予備的に知っておかねばならないことは、一九四九年に成立した新中国において前景化することになった「思想改造」である。朝鮮戦争下において進められた「思想改造」の由来は、基本的には四〇年代の延安におけるいわゆる整風運動に存するわけであるが、その対象は主に都市に住まう中間層・インテリであったことには注目する必要がある。当時の模様は、日本においては延安時代の文献の紹介も含めて、『中共の人間革命—わたしは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を発見した—』(一九五〇 中国研究所)、『整風文献—中共の人間革命—』(一九五一 五月書房)、『人間革命—中国知識人の思想改造—』(中国資料社)などの資料によって窺い知ることができる。煎じ詰めれば、新中国におけるこの時期は、旧解放区以外の都市部で育ったインテリに対して、革命政治の作風を学ばせることを主眼と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が、さらに当時、新中国全体が朝鮮戦争における緊張状態に置かれていたことも考慮されるべきである。つまり朝鮮戦争は、国連軍(米軍)との物理的な戦争に反映されながら、いわゆる西側陣営の「自由主義思想」に対する思想戦をも含むことにな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る。

それら「思想改造」にかかわる文献において、旧国民党側の軍人や大学内の知識人(及び学生)、在野の知識人たちが、会議や学習活動、さらに生産現場への視察などによって、如何に「思想改造」を受け入れていくか、というそのプロセスがかなり見てとれる。今日的な観点からして、それら「思想改造」には、多分に革命政治を学ばせる革命政治が働いていたことは事実であった。法的な強制はなかったとしても、それら「思想改造」運動が強い心理的圧迫下において展開されていたことは明白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こには単に国家イデオロギーの外部注入とは言い切れない真実性も宿っていた。それは「思想改造」という作業が決して楽なもので

はなかったこと、強い内面の葛藤を伴っていたことがそのまま正確に書きとめられていることから論証しえる。ただそこから、一九五七年に招来される反右派闘争など、今日的な観点からは、半ば意図的な捏造も含む露骨な権力政治への落ち込みへと転落していったのかという問いが当然のことながら惹起されようが、到底本稿の紙幅ではカバーしきれぬ課題であり、丸山昇氏の『文化大革命に至る道』（二〇〇一 岩波書店）を参照されたい。

ただ最低限言えるのは、ソ連におけるスターリン批判(一九五六)を画期とする社会主義国家圏に端を発する思想動揺の以前は、毛沢東の言う「新民主主義」の理念(社会主義への転化を時間をかけたプロセスとして認識する枠組み)が留保されていた時期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比喩的に表現すれば、この時期の新中国では如何に「友」を見出すか、という心理的傾向が強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一方反右派闘争が始まる時期においては、それ以前との比較で言えば、如何に「敵」を見出すか、にその心理傾向がシフトしていたこととなるだろう。

## 5

つまり、戦犯管理所における日本兵が「思想改造」と、そして残虐行為の罪を認め告白していく「認罪」運動を経験していたころの新中国とは、まさに新中国が「友」を見出そうとしていた時期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それは彼ら戦犯とともに、中国人のいわゆる対日協力者が(代表的な人物としては満州国皇帝であった溥儀が)ともに「改造」に参加し、また「認罪」を経験していた時期であったことから論証し得るものである。つまり、当時の日本戦犯への働きかけは、決して日本人だけに特定されていたこととではなく、新中国全般の革命政治の中に位置づけられるものだ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このような一九五〇年代前半の新中国における「思想改造」は、系譜的な理解からすれば、中国人に対するそれは、延安における整風運動にその来源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一方、日本人戦犯に対するそれは、抗日戦争時における捕虜優遇政策とほとんど直接的に繋がっている。戦犯管理を担当した公安部の責任者として、延安の抗日軍政大学校副校長として日本人捕虜に関する規律を整備し教育を推進していた羅瑞卿が部長となったことによっても、それは明らかである。この二つの「改造」がある時期、並列しつつ実行されていたと言えるわけである。

だが、日本人戦犯の受け入れの経緯に遡るならば、明らかに抗日戦争時の論理には

、また別の次元の「政治」が存していたことを加味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ソ連に留められていた約千名の日本人戦犯を成立したばかりの新中国(撫順)へと移送することになった経緯は、新中国成立後、モスクワを訪問していた毛沢東に対するスターリンの提案によるものだった(一方山西省の太原戦犯管理所に収容された戦犯百四十名は、中国内部で捕捉された戦犯である)。スターリンは、以前に国民政府を支持し続けていたこと、また中国共産党の方針に介入していたことへの謝罪の気持ちから、これら約千名の戦犯を首尾よく処理するならば、それは成立したばかりの新中国の国際社会に対する威信を高める作用があると提案し、毛がそれを受け入れるところとなった。つまり、抗日戦争中の捕虜政策においても、そこに「政治」が機能していたにせよ、明らかに軍事的目的から動機づけられたものであった。それに比すならば、新中国の日本人戦犯の受け入れの動機は、いわば国際政治というより高度な「政治」によって決定されていたことが認識されねばならない。

だが、日本人戦犯の処理によって人民中国の国際的威信が高まる、その具体的方策とは一体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実はソ連の側も、また新中国の側も、曖昧なままであったと言える。だからこそその初期の段階では、かつての捕虜優遇政策に沿って、食事や運動や娯楽などの好待遇を施すにとどまり、後に展開される罪状調査に基づく厳格な「認罪」運動の予兆はなかった。何故なら、打ち倒すべき日本軍は目前にはおらず、軍事戦略的な見地に立った政策は不要だったのである。幾人かの戦犯管理所における回想録において共通していることとして、いわゆる将官・佐官級の「認罪」のための審問と罪状調査は、一九五四年の二月から始められている、という事実がある。これまでの期間、いわゆる学習活動は、尉官級以下においては積極的に進められてはいたが、中々「改造」を受け入れない将官・佐官級の軍人に狙いが定められ、そして実行されることになった。

雑誌『中帰連』に掲載された様々な回想録やその他の書籍となった回想録から類推されることは、第一に朝鮮戦争の帰趨が決定されるまで、また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形が明らかになるまで、後の積極的な「認罪」運動に通じるような方策は立てられなかったようである。つまり、日本が国際社会に復帰する講和条約のあり方の如何によっては、戦犯たちは、日本に送り返される可能性もあった。しかし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形態は、明らかに新中国にとって戦犯たちを日本に送り返すような条件を満たしていなかったのである。ある意味「改造」教育の成果とは、あるいはその後の「認罪」運動へ進展とは、そのような冷戦政治の展開に左右されたものだった、と考えられるべきである。その意味で、もし仮に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が、新中国にとって満足のできる形態を伴っていたならば、いわゆる「

「認罪」は成立していなかった、とも言えるわけである。ここが歴史を冷徹に見る眼差しの必要となるところである。つまり先述したように、かつて抗戦中の捕虜優遇政策にしても、様々な偶然と思考錯誤の結果として得られたスタイルとパターンだ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先験的・本質主義的に八路軍がそういった捕虜優遇政策を用意していたわけではなかった。しかしそこにおいてこそ、革命政治の次元が立ち現れることになった。つまり、アルチュセールが指摘するところの、偶然が規則となり、規則が規則となる革命政治である。

だがこの偶然が規則となる歴史のプロセスそのものは、また全く神頼み、あるいは確率論的なパースペクティブにおいて考えられるものではない。例えばかつての捕虜政策における「釈放」の成果は、日本軍における内部教育(敵に捕まれば拷問され殺される)の徹底が生み出した弁証法的な効果である。つまり圧倒的軍事力を誇りながら、しかし圧倒的多数の中国人民の包囲の中に突入した日本軍によって行われていた恐怖の否認の教育が、いわば裏目となって出来たことである。革命政治は、必ずそれを生み出す固有の歴史条件を備え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戦犯管理所における「認罪」運動を通じた人間の心からの改心という奇跡的な出来事にしても、実はそうなのだ。中国革命の進展(抗日戦争の処理も含む)が新中国を生み出し、またその新中国の成立を背景とした歴史状況においてそれは生まれた。つまり、国際政治においてはほとんど弱い立場でありつつ、しかし成立したばかりの新中国の革命道徳の生命力によって辛うじて激しい報復感情を制御し得た、ある意味では稀な歴史条件が新中国の働きかけを生み出し、またそれに日本人戦犯が応える形で「認罪」が成立したわけである。

## 6

「改造」と「認罪」——概念として提出するとは、ある意味では易しいことではある。それが成立した磁場を私たちは、今ほとんど追体験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も思われる。それはまた、一九五〇年代前半における新中国の状況を想像する困難にも繋がることであろう。私は研究者として、例えば五十年代前半の新中国の雰囲気と、そしてその後の反右派闘争や文革における被害者の声を、書物や資料という形で同時に眺めることができる。ここにあるギャップをどう受け止めればよいのか、しばしば途方に暮れることがある。五十年代前半に行われていた「改造」はそもそも間違いであり、それが後に露になったということなのか、あるいはそうでなく、質的な断絶というものがそこにあり、国際環境の変化が国内政治に反映した革

命道徳の根幹を揺るがしたと言うことなのか…判断のつかない見えない歴史がそこに横たわっている。ただ言えることは、日本の側からするならば、そのような五十年代前半までの革命中国の道義的エッセンスを身体の深いところに蔵した人々が現に帰還し、反戦を訴えて半世紀もの間活動し続けていた、という事実の重みを打ち消す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彼らが受けた「改造」そして実践された「認罪」という出来事は、間違いなく歴史の遺産である。しかしそれは、どのような基準によって評価されるものなのか。彼ら、あるいは当時の新中国を評価する私たちの基準そのものが、彼らの存在によって逆評価される、という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例えばそれは、以下のような出来事への価値判断である。一つに、「認罪」によって判明した罪の重さによって必ずしも量刑されたわけではなく、自身の罪を率直に認めたかどうか大きなポイントとなっていた、という裁きのあり方に端的に現れている。戦争を指導する立場になかった戦犯たちのほとんどは、撫順や太源での特別軍事法廷で起訴免除となり帰還が許され、また戦争指導層にしても、その有名な瀋陽裁判(瀋陽特別軍事法廷)において徒刑が科せられたが、それも最終的には四十五名に絞られることになった。またその有罪者たちにしても、一九四五年から数えられたその最大の量刑はわずか二十年であり、またそのほとんどの者が満期前に釈放されることとなった。

これは、全人代常務委員会第三十四回会議(一九五六)での決定にあるように、後の日中友好の布石として考えられた措置であり、また大きく言えば、連合国が行った「勝者の裁き」による「断罪」ではなく、新中国独自の価値意識に基づいた措置であったという意味で、それは冷戦政治の一部でもあり、なおかつ中国の革命道徳の発露の機会でも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今日的に考えても、罪の深さによって量刑が決定されないその作風は、実は現在の中国の法体系からしてもあり得ないことである。その意味でも、瀋陽の裁判が何を意味したのかは、現在の大半の中国公民にとっても、また曖昧なものとして宙吊りにされたままとなっている。

さてもう一点、強調しておきたいのは、戦犯たちが、自分が直接下したわけでもない命令も、自身が同じ組織に属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その罪を認めていた事跡である。これもまた、近代市民法における罪と処罰の体系からして、あり得ないことである。満州国特務として戦犯になり、一九五九年に帰国した島村三郎は、回想録『中国から帰った戦犯』(一九七五日中出版社)の中で「しかし、事実上日本帝国主義の侵略という膨大な惨事はいたるところでひきおこされるし、それがいつ、どこで発生しようと、私たちはその組織の一員であった以上、責任を感じべきなのである」と述べている。実にこの自己への裁きあり方は、近代市民法が持っている基本構造に対する、例外的な注釈とな

るものかもしれない。もちろん、表面上は、いわゆる百鍊托生であるとか、権力政治を前提とした連帯責任といった発想に似ていて、それを前近代的な価値観の反映として評価することもあるいは可能かもしれない。しかし要となるのは、被害者国の検察官との、あるいは実際の被害者との対面を通じて為された「認罪」とは、根本的に本人の内面からの改心を前提としていたことであり、だからこそ帰国後の彼らの信念は、ほとんど揺らがなかった。

先述した近代市民法に対する例外的な注釈とは、つまりこのようなことである。政治共同体の罪を問題にしたのが第二次大戦後の戦犯法廷であったわけだが、しかしその罪を個人の身体に及ぼすその刑の執行は、実は政治共同体全体の責任を免罪することにも繋がった。だからこそ、東京裁判の被告たちは、無罪を言いつづけたとも言える(実際には、単に欧米の裁判の慣例に則って無罪を主張したわけだが)。その意味で、個人に対する罪と政治的共同体の罪とは、近代市民法上、原理的に交わらないものであるとも言える。しかしそこに、例外が出来たわけである。政治共同体としての罪を負うという姿勢を示し、尚且つ被害者側がその告白された罪に対して寛大な処置を施すという例外的な措置がそれである。それがまさに、二十世紀半ばの東アジアの空間において実現していたのである。私たちは、この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

# ‘개조’와 ‘인죄(認罪)’: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전범관리소’의 기원과 전개

마루카와 데쓰시(丸川哲史)

## 1

중일전쟁을 되돌아볼 때, 그것을 15년전쟁으로 고찰하는 경향이 강했던 일본 학계와 달리, 중국 측은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항일8년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대만의 중화민국 정부도 그렇게 표현한다), 거기서도 서로의 전쟁관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볼 수 있다. 15년전쟁이라고 하는 경우, 그것은 당연히 만주사변으로부터의 시간으로 그것을 중국에 대한 침략의 기점으로 삼는다는,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는 셈인 한편, 중국의 8년이란 그 전해부터의 국공합작이라는 정치 협력에 의한 항진체제 확립을 은연중에 드러내게 된다. 즉, 중일전쟁이라는 과정은 침략과 방위가 대칭적으로 표리일체를 이룬 군사현상이 아니라 군사와 정치의 전쟁이라는 비대칭적인 구도를 찾아볼 수 있는 역사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중일전쟁의 상호비대칭성은 비전투원에 대한 잔학행위라는 무거운 역사현상을 기점으로 고찰할 수도 있다. 단적으로 말해 중국 측 전투원에 의한 일본인 비전투원에 대한 잔학행위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 전쟁이었다. 또한 이 사건을 일본 측에서 보자면, 그러한 비전투원에 대한 집단적인 잔학행위 자체가 일본 전쟁사상에서도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로 경험이었다는 것이다. 세계사적으로는 비전투원을 끌어들이는 총력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나중에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와 같은 관념으로 결실을 보게 되는데,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행위는 바로 그것이 문제화되는 전쟁이 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일전쟁과 관련되는 전후보상문제는 일본 국내의 정치진영에서 두 가지 유형을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우익 측의 저항감은 사후법으로서의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가 전쟁당시로 소급되는 부당한 심판으로서 그것을 부인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인 전후보상을 추진하는 측의 논리는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라는 관념을 사후적으로라도 승인해야만 하는 입장이라고 일단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 의미에서도 전후보상과 관련되는 문제는, 전쟁과 관련되는 역사관 그 자체, 나아가서는 전쟁에 의해 형성된 관념과 현실의 타임래그를 다루어야 한다는, 지극히 사상적인 과제를 잉태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족이 너무 길어졌다. 이 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

했을 때 파생되는 또 하나의 중요 사항이다. 비전투원에 대한 잔학행위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고찰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식자들이 역사적인 검증을 진행해왔는데,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비전투원이 아니라 전쟁 과정 속에서 전투원에서 비전투원으로 위치를 옮긴 사람들, 즉 포로라는 존재에 대한 고찰이다. 주지하듯이 포로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1899년의 제1회 만국평화회의에서 정해진 헤이그육전조약으로서 이루어졌으며 1911년에 일본도 그것을 비준했고 그 다음해에는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조약’으로서 국내에서 공포되었다. 하지만 그 뒤 세계사적으로 이 포로에 관한 보호규정은 스페인내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걸쳐서 게릴라전의 등장에 의한 정규군/비정규군의 애매화로 인해 서서히 깨져나간다. 사실 일본의 경우도 러일전쟁 때까지는 지켜졌던 포로 보호규정이 중일전쟁 때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총력전의 뒷면에 달라붙은 게릴라전이라는 또 다른 전쟁 형태의 등장에 의한 것이었다.

물론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면 농민, 시민도 협력자로 한 게릴라전에 의한 저항을 받았다고 해서 포로의 보호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분 또한 앞서 언급한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지닌 어려움을 표현한다고는 할 수 있겠다. 다만 여기서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것은 게릴라전을 실행한 집단의 포로가 된 일본군의 문제이다. 즉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포로학대로 나아가게 한 동력으로서 게릴라전이 있었다고 치고 그 게릴라전을 치르는 측에서 획득한 포로가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이고, 먼저 일단은 이 지극히 아이러니한 역사적 운명에 놀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일본인 포로라는 존재, 나아가 전범으로 다루어진 사람들의 존재를 중심 의제로 삼지만 그에 앞서 약간의 설명을 시도해야 하는 것은 중국 측의 전쟁관에 대해서이다. 앞서 언급한 헤이그육전조약이 성립한 만국평화회의에 중국(청) 대표는 참가했지만 그때 헤이그육전조약에는 조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헤이그육전조약에 반대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당시 중국(청)에는 근대적인 육군조직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청)의 대표자는 방관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때도 중국은 실제로는 세계대전에 참전할 수 있는 행위자는 아니었다. 즉, 중국은 세계대전사의 수준에서는 아주 ‘후진적인’ 편에 속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근대적인 군대의 미성숙이라는 측면에서도 게릴라전을 채용하게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특히 공산당 측의 경우 국제적인 원조를 충분히 얻을 수 없었다). 모택동도 사실은 황포군관학교의 교관과 학생 등을 통해서 소련식의 군사기술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고 이야기되지만, 사실은 게릴라전에 관한 지식은 그가 성장한 환경에 규정된 바 태평천국의 난이나 농민폭동, 또 그것을 억누르는 군벌군 등에

관해서 보고 들은 것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체로 중국공산당의 게릴라전에 관한 방법론은 중국의 독자적인 역사적 지반에서 파생된 측면이 컸다고 할 수 있겠다.

## 2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깔고 지금부터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팔로군(신4군도 포함된 제18집단군이라고 해야 마땅하지만 그것들을 총칭하는 관용어로서 ‘팔로군’을 사용한다)이 펼친 포로정책의 역사적 의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독자적인 근대적 군대를 좀처럼 가질 수 없는 ‘후진성’ 속에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의미에서 헤이그육전조약에도 조인할 수 없었으며 또 비전투원을 끌어들이는 총력전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잠재적으로 의식화되는 과정에 있던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팔로군은 사실상 그런 맥락 바깥에 놓여 있었다고 보는 것이 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는 유럽 제국주의 국가끼리 치른 총력전 경험에서 추출된 것으로 중국은 그 외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모택동의 전쟁관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구전론」(1938) 속에서 모택동은 이 전쟁에 대해 일본군국주의에 의한 반동적인 전쟁과 중국에 의한 진보적인 전쟁이라는 구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에서 추상적인 평화 관념과는 무관했는데, 그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에 대한 죄’와 유사한 발상이 있었느냐에 있다.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포로에 대한 우대정책은 유럽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뒤에서 상세히 논하겠다). 중일전쟁은 틀림없이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라는 필연성을 지니면서도 그 맥락과는 일정정도 떨어진 독자적인 코스를 만들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 의미에서 왜 특히 팔로군에서 포로 우대정책이 성립할 수 있었는지, 나아가 그 포로 우대정책이 또 나중에 무순(撫順) 및 태원(太原)에서 전범관리소의 독특한 활동, 즉 ‘개조’와 ‘인죄’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알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된다.

공산당 지도 아래서 이루어진 포로 우대정책에 대해 고찰을 진행시킬 때의 연구 태도로서 항일전쟁, 국공내전의 귀추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이데올로기에서 거리를 둔 서술이 필요하며 또 그런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의미에서 당시 일본과의 전쟁과 관련해서 유효한 선전 방책을 탐구하려 하던 미 전략정보국(OSS)이 연안(延安)으로 파견한 군사시찰단(United States Army Observer Group)의 사적(事跡)은 크게 그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들의 미션이 남긴 『연안 리포트』(岩波書店, 山本武利편역)의 보고와 이 ‘연안 리포트’를 분석 평가한 야마기와 아키라(山極晃)의 『미 전시정보

국의 ‘연안 보고’와 『일본인민해방연맹』(大月書店)의 서술을 따르면서 포로 우대 정책의 유래를 찾아보고자 한다.

‘연안 리포트’는 미 전략정보국이 주로 남방전선에서 일본군에 대한 선전활동의 참고로 하기 위해서 당시 연안에 있던 적군공작 부부장인 이초리(李初梨)와 노사카 산조(野坂參三) 등에 대한 인터뷰 및 거기서 얻은 자료 등을 통해서 작성된 것이다. 리포트의 내용은 팔로군의 대일심리작전부터 포로정책, 나아가 실제 뼈라 내용의 보고, 또 일본인민해방연맹과 포로를 반전활동에 종사하게 하기 위한 일본노동학교에 대한 조사 등 참으로 다양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미국 측 미션에게 팔로군의 포로정책에서 배울 것은 많았지만, 실제로 팔로군이 실시한 포로 우대정책은 현재 남방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미군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군은 일반적으로 포로정책이나 심리전을 경시하기 일췌였고 또 군인들 또한 한발이라도 많은 탄환이나 폭탄을 일본군에게 쏘고 싶어 했다. 그것은 미군이 군사적으로 일본군에 이기고 있는 자신감에서 오는 심적 경향으로 생각된다. 포로 우대정책은 군사적인 열세를 보완하는 수단이었다는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 그 의미에서도 지나방면군을 지휘하고 있던 시마누키 다케시(島貫武) 대령이 팔로군에 대해서 “그들은 사상, 군사, 정치, 경제의 시책들을 교묘히 통합해서 그 노력을 정치 70%, 군사 30%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군사력만으로는 진압할 수 없고 이 다원적, 복합적 시책을 통합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평가했던 것은 흥미롭다. 군정학적인 견지에서 말하자면 바로 팔로군의 포로 우대정책을 포함한 전쟁 전략은 군사적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군사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지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연안 리포트’가 일본인 입장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히는 부분이란 바로 미군에게는 적용할 수 없었다는 부분, 즉 포로정책의 유래이다. 먼저 항일전쟁 초기에는 팔로군의 포로정책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선 일본 병사는 포로를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심리가 컸고 또 일본군 내의 교육의 결과 잡히면 고문을 받거나 살해당한다고 믿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 초기 단계에서 포로들에게 제시된 ‘군벌 타도’, ‘천황제 타도’와 같은 구호를 일본 병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팔로군의 공작자는 일본군이 팔로군 측의 우호적인 태도나 동정적인 취급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에 착안하게 되었다. 공작자들은 초기 단계로서 일본군의 불신과 적대심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인간적인 접촉이 중요시됨과 동시에, 당시 포로 수용의 한도 문제도 있어서 더 교육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길이 주어지는 한편, 또 석방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석방의 길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아주 큰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즉 적에게 잡히면 학대받고 총살당한다고 믿고 있던 일본군에게 그

교육내용을 배반하는 ‘증거’가 메시지로서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증거’가 보내짐으로써 일본군 내부의 교육의 정통성이 흔들렸다는 것이 내부 체보자의 보고에서 확인되고 또 그 결과로서 ‘마지막 돌격’이 회피되어 투항하는 일이 늘어났다고 팔로군 측은 생각했다.

‘연안 리포트’에서 바로 이 포로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은 중일전쟁이라는 전쟁 전체의 성격을 다시 규정하는 데에도 참으로 큰 시사를 준다. 포로에게 인간적인 취급을 베풀고 자기 편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더 교육을 시키고 석방을 희망하는 사람은 석방한다는 이러한 시책은 바로 전쟁이라는 차원에 ‘정치’의 차원을 삽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여기서 말하는 ‘정치’란 칼 슈미트에 의해 정식화된, 누구를 적으로 삼고 누구를 동지로 삼느냐를 재편하는 작용이다. 팔로군에게 붙잡힌 포로는 무장해제된 뒤에는 잠재적인 동지로 다루어지며 또 석방을 위해 일본군 주변으로 보내질 때까지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석방되어 자기 부대로 돌아간 일본군은 자국의 군대 내부에서 오히려 적대시되며 과거에 적에게 잡히면 그렇게 된다고 협박받았던 고문을 동지들로부터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살로 몰린다. 결과로서 이러한 적-동지 관계의 재편이라는 ‘정치’는 바로 일본군의 ‘마지막 돌격’을 단념하게 만드는 효과로 일본군 측의 인명 절약에도 이어졌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중국혁명을 담지한 ‘정치’의 진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혁명 총체를 중국공산당의 사상 자체로, 또 모택동의 사상 자체로 국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택동이 쓴 가장 초기의 정치적 글인 「중국사회 각 계급의 분석」(1926)의 첫 줄이 “누가 우리의 적인가. 누가 우리 벗인가. 이 문제는 혁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시작되는 것은 나름대로 돌이켜볼 만한 것인지도 모른다. 즉, 이 ‘정치’라는 것, 중국공산당의 언어로 말하자면 ‘혁명’은 항일전쟁 기간을 통해서 하나의 큰 사상적 테두리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오늘날 중일전쟁 전체의 성격을 보는 데 있어 이 ‘혁명’의 기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역사학적 지견의 종합적 심화라는 목적을 생각하더라도 삼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일전쟁을 통해 ‘잠재적인 신 중국’ 측이 만들어낸 ‘혁명’이라는 요소는 오히려 오늘날에 중요시되지 않은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논하겠지만, 사실 오늘날 중국 측의 중일전쟁에 대한 역사관은 이 ‘혁명’의 요소를 지워버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신 중국 측이 행한 심양(瀋陽)재판이 망각되고 오히려 신 중국

성립 이전의 도쿄재판으로의 동일화가 촉진되는 사태에서 '혁명'의 퇴조를 간취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측의 역사 해석에서의 정치적 차원의 소실에 대응하듯이 일본 측에서도 중일전쟁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차원을 지워버리는 방향으로 시종 일관한 것처럼 보인다. 상징적으로 남경사건과 관련되는 학살의 숫자를 둘러싼 국내의 좌우대립이 부각되는 등, 중일전쟁의 역사적 의미는 실증을 통한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빠진 상황의 역사적 전제로서 내재적 비평을 동반하지 않은 문화대혁명 종료로 귀결된 신 중국의 혁명정치의 진전과 좌절이 일본 측으로 영향을 미친 사태를 중요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가령 일중우호협회가 문화대혁명을 추진하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둘러싸고 분열했으며 과연 그 후에도 이 분열을 수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상징된다. 그러한 일중우호운동의 역사적 검증, 혹은 신좌파 세력 안에서 볼 수 있었던 모택동사상 수용에 관한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즉 중국 정치에 대한 역사적 감각이 실조된 채로 그 실조 상태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 아닐까. 이러한 사태에서 그런 실조상태를 극복하려는 보기 드문 사례로 중귀련(중국귀국자연락회)의 활동에는 주목할 만한 많은 시사점이 잠재되어 있다.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은 중귀련이 문화대혁명 시기에 일중우호협회와 마찬가지로 분열을 겪으면서도 무순이나 태원의 전범관리소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8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재통일을 이루어내고 그 후 90년대에 오히려 그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일이다. 그들의 무순이나 태원에서의 체험은 따져보면 신 중국의 혁명정치 속에 위치지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오늘날 중일전쟁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일본인이 수용하느냐를 생각할 때 중일전쟁 당시 발생한 일본군의 잔학행위에 관한 해명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역사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 중국의 혁명정치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 후로 어떻게 살았느냐는 역사, 또 그 경험자들의 사상을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는 과제를 포함한 총체로서 바로 직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 4

전범들이 신 중국의 전범관리소에서 얻은 역사적 경험을 고찰하기에 앞서 예비적으로 개관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중일전쟁이 전투행위로서는 끝난 뒤에 중일전쟁이라는 경험이 어떻게 재현되게 되었는지, 특히 신 중국 성립에 결부된 세력에 대한 일본 측의 시선이 어땠는지, 나아가 신 중국 성립 이후 중국 내부에서 혁명정치의 진전이 어땠는지 별견해보고자 한다. 당연히 거기에는 냉전의 그림자

가 드리워질 것이 예지된다.

1945년 8월의 종전부터 일본에서는 연합군총사령부(GHQ)가 주도하는 민주개혁의 일부로서 일본공산당의 재건(1945년 12월)이 있었고 이듬해 1월에는 연안에 있었던 노사카 산조(=오카노 스스무[岡野進])의 귀국 등이 있었으며 GHQ와 전쟁시기부터 반전운동을 했던 세력과의 인상적인 밀월기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러한 밀월기는, 1947년 1월에 예정되었던 전관공노(全官公勞)의 파업에 대한 GHQ의 간섭으로 상징되듯이 서서히 냉전 상황의 진전과 더불어 깨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을 제출하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당시 제대한 사람들에게 중일전쟁에서의 적의 재현, 특히 팔로군의 이미지가 그것에 의해 간섭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패전 직후에 유행한 대중소설로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郎)의 『춘부전』(1947)을 드는 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중에서 주인공인 위안부 하루미(春美)와 그 애인 미카미(三上) 상등병이 팔로군의 습격에 의해 포로가 된 뒤의 전개를 살펴보자. 전투로 인해 부상당한 미카미의 상태를 보러 온 정치부원이 원래 부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군법회의에 회부되거나 사형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에게 설명하지만 미카미는 부대로 돌아가겠다고 밝히고 부대로 돌아간다. 하지만 부대로 돌아간 뒤 미카미는 독방에 수감되고 미카미는 하루미와 함께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된다. 이러한 줄거리가 대중소설로 표현되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지만, 바로 이 내용이 ‘연안 리포트’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놀랍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이 『춘부전』은 영화필름으로 재등장하게 된다. 『춘부전』을 원작으로 한 <새벽의 탈주>(1950)를 다니구치 센키치(谷口千吉) 감독(구로사와 아키라 각본)이 찍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돌아온 야마구치 요시코(山口淑子=李香蘭)가 여주인공을 맡은 것 등, 화제성도 있는 이 필름은 그러나 GHQ 산하의 정보기관에 의해 몇 번의 각본 수정을 강요당한 작품이었다. 이리하여 주인공들이 포로가 되는 장면에서는 팔로군이 국민당의 정치부원으로 변경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의 사소한 사례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확실히 냉전의 그림자는 중일전쟁 속에서 생겨난 ‘정치’의 차원을 왜곡시키고 일본인의 문화적 기억에 간섭했다. 그것 또한 진범관리소에서 귀환한 전 전범들에 대한 대중언론 차원에서의 반응, 즉 ‘빨갱이’나 ‘세뇌’와 같은 딱지붙이기와도 직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적어도 팔로군에서 받은 포로 우대정책에 대한 문화적 기억이 일본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공유되고 또 일반화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심한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세뇌(brain washing)’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전쟁 중에 미 정보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었다. 그것은 한국전쟁에서 포로가 된 미군이 단기간에 적의 선전공작에 관여하게 된 것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추

진된 연구의 ‘성과’이다. 이렇듯 일본사회에서 중일전쟁의 기억은 냉전문화에 의해(또는 일본인 스스로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또 하나의 측면으로서 예비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1949년에 성립된 신 중국에서 부각된 ‘사상 개조’이다. 한국전쟁 하에서 추진된 ‘사상 개조’의 유래는 기본적으로는 40년대 연안에서의 소위 정풍(整風)운동에 있지만 그 대상이 주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중간층·인텔리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상황은 일본에서는 연안 시절의 문헌 소개도 포함해서 『중공의 인간혁명: 나는 맑스레닌주의를 발견했다』(1950, 중국연구소), 『정풍문헌: 중공의 인간혁명』(1950, 오월서방), 『인간혁명: 중국 지식인의 사상 개조』(1952, 중국자료사)와 같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따져보면 신 중국에서 이 시기는 구 해방구 외의 도시부에서 성장한 인텔리들에 대해 혁명정치의 작풍을 배우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았다고 생각되지만, 나아가 당시 신 중국 전체가 한국전쟁에 의한 긴장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한국전쟁은 유엔군(미군)과의 물리적인 전쟁에 반영되면서 소위 서방진영의 ‘자유주의사상’에 대한 사상전도 포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사상 개조’와 관련되는 문헌들에서 구 국민당 측의 군인이나 대학 내 지식인(및 학생), 재야 지식인 등이 회의와 학습활동, 나아가 생산현장 시찰 등을 통해 어떻게 ‘사상 개조’를 받아들이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상 개조’에는 다분히 혁명정치를 배우게 하는 혁명정치가 작동했던 것은 사실이다. 법적인 강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상 개조’운동이 강한 심리적 압박 아래서 전개되었음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단순히 국가이데올로기의 외부주입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진실성 또한 깃들여 있었다. 그것은 ‘사상 개조’라는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강한 내면의 갈등을 동반했다는 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도 논증할 수 있다. 다만 거기서 1957년에 초래되는 반우파투쟁 등 거의 의도적인 날조도 포함한 노골적인 권력정치로의 전략에 대한 질문이 현재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야기되었지만, 도저히 이 글의 분량으로는 다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마루야마 노보루(丸山昇) 씨의 『문화대혁명으로 이르는 길』(2001, 岩波書店)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만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련에서의 스탈린 비판(1956)을 계기로 한 사회주의국가권에서 시작된 사상 동요 이전에는, 모택동이 말하는 ‘신민주주의’ 이념(사회주의로의 전화를 시간이 걸리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테두리)이 유지되었던 시기라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시기 신 중국에서는 어떻게 ‘동지’를 찾아낼 것인가 하는 심리적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며, 한편 반우파투쟁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그 이전과 비교하자면 어떻게 ‘적’을 찾아낼 것인가에 그 심리적 경

향이 옮겨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

즉 전범관리소에서 일본군이 '사상 개조'와 잔학행위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인죄'운동을 경험했던 무렵의 신 중국이란 바로 신 중국이 '동지'를 찾아내려 했던 시기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 전범들과 더불어 중국인의 소위 대일협력자(대표적인 인물로서는 만주국 황제였던 부의[溥儀]가 있다)가 함께 '개조'에 참여하고 또 '인죄'를 경험했던 시기라는 것으로도 논증할 수 있다. 즉 당시 일본 전범에 대한 공작은 결코 일본인만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신 중국 전반의 혁명정치 속에 위치지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1950년대 전반 신 중국에서의 '사상 개조'는 계보학적인 이해에서 보면, 중국인에 대한 그것은 연안에서의 정풍운동에서 그 내원을 찾을 수 있는 한편, 일본인 전범에 대한 것은 항일전쟁 시기의 포로 우대정책과 거의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다. 전범 관리를 담당한 공안부 책임자로, 연안의 항일군정대학교 부교장으로 일본인 포로에 대한 규율을 정비하고 교육을 추진했던 나서경(羅瑞卿)이 부장이 된 것으로도 그것은 분명하다. 이 두 가지 '개조'가 어떤 시기에 병렬되면서 실행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일본인 전범 수용의 경위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분명히 항일전쟁 시기의 논리에는 아직 다른 차원의 '정치'가 존재했었음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소련에 억류된 약 천 명의 일본인 정치범을 갖 성립된 신 중국(무순)으로 이송하게 된 경위는 신 중국 성립 후 모스크바를 방문한 모택동에 대한 스탈린의 제안에 의한 것이었다(한편 산서성의 태원전범관리소에 수용된 전범 140명은 중국 내부에서 붙잡힌 전범이다). 스탈린은 예전에 계속 국민정부를 지지했다는 것, 또 중국 공산당의 방침에 개입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는 마음으로, 이 약 천 명의 전범을 잘 처리하면 갖 성립된 신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신을 높일 작용이 있다고 제안하고 모택동이 그것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즉 항일전쟁의 포로정책은, 거기서 '정치'가 기능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군사적 목적에서 동기부여된 것이었다. 그것에 비하면 신 중국의 일본인 전범 수용 동기는 말하자면 국제정치라는 보다 고도의 '정치'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인 전범의 처리에 의해 인민중국의 국제적 위신이 높아지는, 그 구체적 방책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소련 측도, 또 신 중국 측도 계속 애매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과거의 포로 우대정책을 따라 식사와 운동, 오락 등 좋은 대우를 해주는 데 머물렀으며 나중에 전개될 죄상조사에 기초한 엄격한 '인죄'운동의 조짐은 없었다. 왜냐하면 타도해야 할 일

본군은 눈앞에 없고 군사전략적인 견지에 선 정책은 불필요했던 것이다. 몇 가지 전범관리소 회고록에 공통적인 것으로 소위 장관(將官)·영관(領官)급의 ‘인죄’를 위한 심문과 죄상조사는 1954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 소위 학습활동은 위관급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좀처럼 ‘개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장관·영관급 군인들이 표적이 되어 실행되게 되었다. 잡지 『중귀련』에 실린 다양한 회고록이나 기타 책으로 출간된 회고록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한국전쟁의 귀추가 결정될 때까지, 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나중에 적극적인 ‘인죄’운동으로 이어질 만한 방법은 세워지지 않은 것 같다. 즉 일본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강화조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전범들은 일본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형태는 분명히 신 중국이 전범들을 일본으로 송환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어쩌면 ‘개조’ 교육의 성과란, 혹은 그 후 ‘인죄’운동으로의 진전이란 그러한 냉전 정치의 전개에 좌우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의미에서 만약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신 중국 입장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형태를 띠었다면 소위 ‘인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곳이 역사를 냉철하게 바라볼 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앞서 말했듯이 과거 항전 중의 포로 우대정책만 하더라도 여러 우연과 시행착오의 결과 얻어진 스타일과 패턴이었다는 것이며 선협적·본질주의적으로 팔로군이 그러한 포로 우대정책을 마련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혁명정치와 차원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알튀세르가 지적하는, 우연이 규칙이 되는 혁명정치이다.

그런데 이 우연이 규칙이 되는 역사의 과정 그 자체는 또 완전히 신의 뜻에 맡겨지거나 확률론적인 전망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포로정책에서 얻어진 ‘석방’의 성과는 일본군에서의 내부교육(적에게 잡히면 고문 받고 살해당한다)의 철저화가 낳은 변증법적인 효과였다. 즉, 압도적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그러나 압도적 다수의 중국 인민의 포위 속으로 돌입한 일본군에 의해 실시된 공포를 부인하는 교육이 말하자면 뒤집어져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혁명정치는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내는 고유한 역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범관리소에서의 ‘인죄’운동을 통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의 회개라는 기적적인 사건 역시 사실은 그런 것이다. 중국혁명의 진전(항일전쟁 처리도 포함)이 신 중국을 만들어내고 또 그 신 중국의 성립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 상황에서 그것은 생겨났다. 즉, 국제정치에서는 거의 약한 입장이면서, 그러나 갓 성립된 신 중국의 혁명도덕의 생명력에 의해 겨우 격한 보복감정을 제어할 수 있었던, 어쩌면 드문 역사적 조건이 신 중국의 시도를 낳았고 또 그것에 일본인 전범이 호응하는 형태로 ‘인죄’가 성립된 것이다.

## 6

‘개조’와 ‘인죄’-개념으로 제출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긴 하다. 그것이 성립된 자장을 우리는 지금 거의 추체험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든다. 그것은 또한 1950년대 전반의 신 중국의 상황을 상상하는 어려움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나는 연구자로서, 가령 50년대 전반의 신 중국의 분위기와 그 후 반우파투쟁이나 문화대혁명의 피해자 목소리를 책이나 자료라는 형태로 동시에 바라볼 수 있다. 여기에 있는 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종종 사고가 멈추는 일이 있다. 50년대 전반에 이루어졌던 ‘개조’는 원래부터가 잘못된 것이었고 그것이 나중에 드러났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질적인 단절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고 국제적 환경의 변화가 국내정치에 반영되어 혁명도덕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것인가... 판단을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역사가 거기에 가로놓여 있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측에서 보자면 그러한 50년대 전반까지 진행된 혁명중국의 도의적 정수를 몸 깊은 곳에 간직한 사람들이 실제로 귀환하고 반전을 호소하면서 반세기나 되는 동안 활동을 계속했다는 사실의 무게를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받은 ‘개조’, 그리고 실천된 ‘인죄’라는 사건은 틀림없이 역사의 유산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그들, 또는 당시의 신 중국을 평가하는 우리의 기준 자체가 그들의 존재에 의해 거꾸로 평가받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예컨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이다. 하나는, 형량이 꼭 ‘인죄’에 의해 판명된 죄의 무게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느냐 여부가 큰 포인트였다는 심판 방식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전쟁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지 않았던 전범들 대부분은 무순이나 태원의 특별군사법정에서 기소 면제되어 귀환이 허락되었으며 또 전쟁 지도층에 대해서도 유명한 심양재판(심양특별군사법정)에서 도형이 부과되었지만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45명으로 좁혀지게 되었다. 또 그 유죄자들을 보더라도 1945년부터 계산된 그 최대 형량은 불과 20년이며 또 그 거의 대부분이 만기 전에 석방되었다.

이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4차 회의(1956) 결정에 있듯이 후일의 중일우호를 위한 포석으로 생각된 조치이며, 또 크게 말하자면 연합국이 치른 ‘승자의 심판’에 의한 ‘단죄’가 아니라 신 중국의 독자적인 가치의식에 기초한 조치였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냉전정치의 일부이기도 하고 동시에 중국의 혁명도덕의 발로의 기회기도 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아도 죄의 깊이로 인해 형량이 결정되지 않는 그 작품은 사실 현재 중국의 법체계에서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의미에서 심양의 재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현재 태반의 중국 공민들에게도 역시 애매한 것으로 유보된 채 남아 있다.

또 한 가지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전범들이 스스로가 직접 내린 것도 아닌 명령도 자신이 같은 조직에 속했다고 해서 그 죄를 인정했던 사적이다. 이것 역시 근대 시민법의 죄와 처벌의 체계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주국 특무로서 전범이 됐다가 1959년에 귀국한 시마무라 사부로(島村三郎)는 회고록 『중국에서 돌아온 전범』(1975, 일중출판사)에서 “그러나 사실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커다란 참사는 도처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것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든 우리는 그 조직의 일원이었던 이상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스스로에 대한 심판의 양태는 근대 시민법이 지닌 기본구조에 대한 예외적인 주석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겉으로는 소위 일련탄생이라든가 권력정치를 전제로 한 연대책임이라는 발상과 유사해서 그것을 전근대적인 가치관의 반영으로 평가하는 것도 어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요점은 피해자국의 검찰관과의, 혹은 실제 피해자와의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죄’란 근본적으로 본인의 내면으로부터의 회개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귀국 후 그들의 신념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앞서 말한 근대 시민법에 대한 예외적인 주석이란 요컨대 이런 것이다. 정치공동체의 죄를 문제 삼은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법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죄를 개인의 신체에 미치는 형 집행은 사실은 정치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면죄하는 것으로도 이어졌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쿄재판의 피고들이 계속 무죄를 주장했다고도 할 수 있다(실제로는 단순히 구미 재판의 관례를 따라 무죄를 주장했지만 말이다). 그 의미에서 개인에 대한 죄와 정치적 공동체의 죄란 근대 시민법상 원리적으로 교차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예외가 나타난 것이다. 정치공동체로서 죄를 짊어진다는 자세를 보이고 동시에 피해자 측이 그 고백받은 죄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베푼다는 예외적인 조치가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20세기 중엽의 동아시아 공간에서 실현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후지이 다케시 옮김]

## **“Re education” and “Confessi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War Criminal Management Centre” in China**

Tetsusi Marukawa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theoretical historical analysis of the “re education” and “confession” which took place in the Fushun War Criminal Management Centr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ere approximately one thousand Japanese army officers and soldiers were transported from Siberia after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 in 1947.

First of all, the policy of the Centre that gave privileged treatment to the Japanese prisoners of war traces its origin in the measures taken by the Communist army during the Sino Japanese war. We could argue that it derives from China’s own experience, not the European experience of the two World Wars, in particular, that of the guerrilla war.

The “Yan’an reports” of America’s Office of War Information tell us that the Communists’ humane treatment of the Japanese prisoners of war was in fact the strategy of overcoming their military inferiority at the time. Whilst the Japanese soldiers did not lend their ears to the ideological pronouncement of the Communists, it was reported, they were heartened by the benevolent attitude of the Communist troops and showed no rebellious gesture. Moreover, China’s decision to repatriate the prisoners to Japan resulted in revealing the fallacy of anti China propaganda by the Japanese army.

The Japanese veteran officers and soldiers who had spent some years in the “War Criminal Management Centre” formed the “Returned Soldiers from China Network” (Chukiren) after their repatriation, and have since made a ceaseless effort to promote the anti war activity. Although it suffered from the internal conflict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the unity of the Network was restored later on. Behind these veteran soldiers’ strong determination and motivation lies their experience of “re education” and “confession” in Fushun. The members of Chukiren were repatriated to Japan in the late 1950s, many of whom, labelled as “Communists” or “the brainwashed,” had to face varying difficulties in everyday life. This is due to the rising anti Communist atmosphere in Japan in the wake of the Korean War.

It is important to situate and understand China’s “re education” policy in the

particular context of its revolutionary politics. For instance, Puyi, known as the “Emperor of Manchukuo”, who also went through the “re education” process, turned into a Chinese civilian in this political landscape of the Chinese revolution.

The “confession” process in Fushun, which was based upon the strict interrogation of the prisoners, seems to be also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old War politics of that time. The observation of the “confession” process makes us understand that China was then trying to create a different concept of “judgment” to that of the Tokyo War Crimes Tribunal and the Nanjing Military Tribunal. Its distinctive concept of judgement that granted pardon to those who confessed their crimes, nevertheless, could be explained in relation to China’s motive to produce its reliable allies who could possibly work for the country’s security and survival in the time of the Cold War.

# How to come to terms with a burdening past - the German example

Jörn Rüsen

## 1. The challenge

History is a medium, within which a person, a social group, a people, a nation and a whole culture formulate and discuss their identity. Identity is a self-relationship in human subjectivity, which synthesizes the experience of the past and the expectation of the future. It is the temporal face, by which humans express peculiarity and their difference from others. In order to bring about liveable historical identity the presentation of the past must include experiences the people can identify with. Identity always asks for strong elements of self-affirmation. Therefore history which presents an image of one's own self has always self in store positive features of this.

This elementary shape of identity is clearly expressed in the following quotation of a comic strip:



A negative self-image disturbs human life and is a source for mental illness, suffering and self-destruction.

Negative historical experiences, however, are a challenge for historical identity formation. Their negative assessment strictly runs against the need for a positive self relationship in historical culture. Therefore those who had to struggle with this contradiction have developed mental strategies of historical sense generation enabling them to inspire

their future life perspectives with an encouraging reference to their past.

## **2. Possible answ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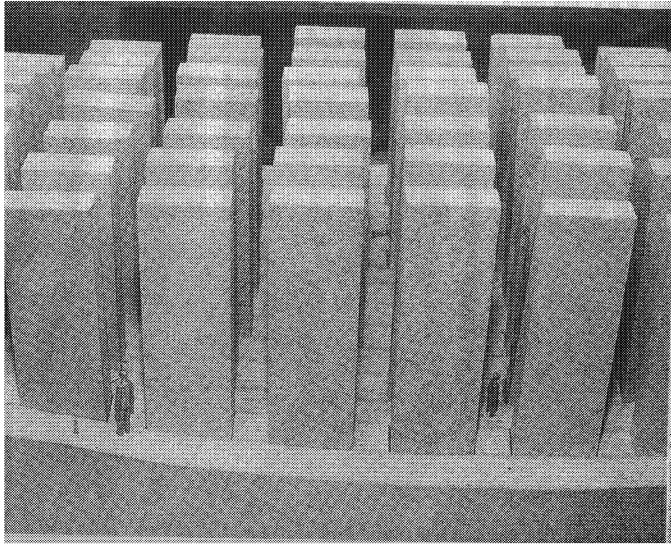
There are quite a lot of possibilities of fulfilling this need to come to terms with negative elements in the past.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two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es to the past: (a) rejecting it, i.e. not giving it a place in the historical culture of one's own identity or (b) accepting it, i.e. giving it a place in the historical image of oneself.

(a) Rejection can be brought about by suppression, concealment, exterritorialization, relativization and by chang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Relativization means to weake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negative events by emphasizing positive ones within the same history. Exterritorialization means to place the challenging historical event outside the realm of one's own history by assigning it to the realm of somebody else's history. Changing historical significance means to interpret the burdening past in such a way that its burdening negative character has vanished or is turned into a positive one, so that the perpetrator can appear as a vict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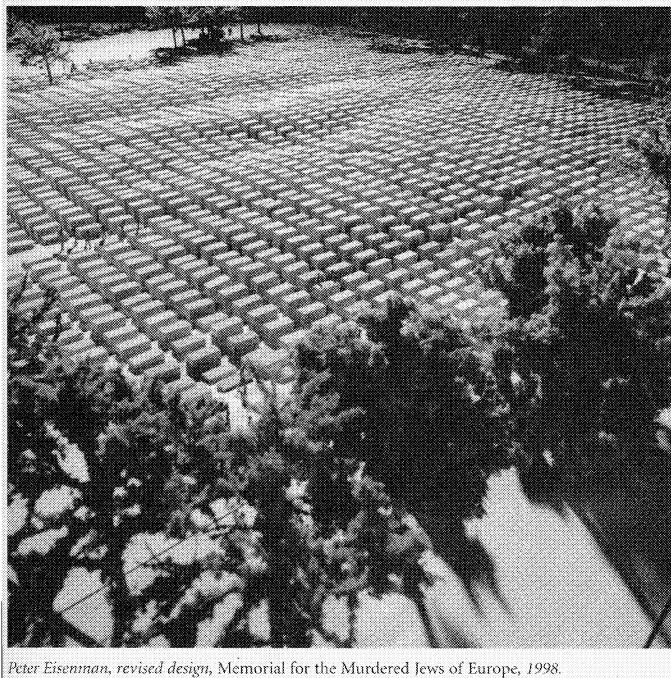
(b) The burdening past can be accepted by moral condemnation. Here the values ruling this condemnation are placed into the centre of one's self image. Another possibility – I think it is the most elaborated one – is to integrate the negative events into one's own history thus giving it elements of ambivalence and heterogeneity.

## **3. The German case**

The German nation is - as far as I know - the only one which has erected a monument for its victims. In 1999, the German Parliament, the Bundestag, decided to build a "monument for the murdered Jews in Europe", and in May 2005 it was opened.



Holocaust Memorial in Berlin, first design by Peter Eisenman and Richard Serra



Holocaust Memorial in Berlin, later design by Peter Eisenman<sup>1)</sup>

---

1) Young, James E.: *at Memory's Edge. After-Images of the Holocaust in Contemporary Art and Architecture.* New Haven (Yale UP) 2000), p. 213



Holocaust Memorial in Berlin, detail<sup>2)</sup>

This is a unique event in the history of historical culture in the West, if not worldwide. Has this any relevance beyond the specific situation of the German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I think that this specific, if not unique case has a general relevance. It does not only indicate a future-directed Holocaust memory of the Germans, but it addresses a general turn of the logic of historical memory. It is a turn which makes the German case interesting and worthwhile to be discussed, not only for the West, but for non-western countries as well. For all places and contexts wherever the question is raised how to come to terms with a burdening past, the case of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culture in Germany might be interesting.

In Germany, the different mental strategies mentioned above can be observed. I would like to bring them into a temporal order by constructing ideal types and by ascribing these ideal types to the three different generations of post-war German history. (For the following

---

<sup>2)</sup>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AZ) Nr. 159, 12. Juli 2004, p. 29

argumentation I mainly refer to the West German case.)

The first generation consisted of people, who lived in the Nazi time and had to build up the destroyed country after the war. Suppressing the memory of the Nazi crimes was rather impossible. The evidence was too strong, and the victors who occupied Germany confronted the Germans with their atrocities in the context of a re-education programme. The publicly dominant reaction to the Nazi past was concealment.

In order to build up a new democratic German state, there was no alternative but to refer to the elite of the Nazi system except for its prominent representatives who had fled, been executed or were in prison. The involvement of this elite in the Nazi-system was not really an issue in post-war Germany (except for the weak attempts of de-Nazifying the German people in the first years directly after the war). In some cases the suffering of the Germans during and after the war was used to attribute victimhood to the Germans thus avoiding their responsibility for the Nazi crimes. Moreover this responsibility was exterritorialized: the Nazi leadership was separated from the normal and ordinary German people who were seduced by these aliens. The Germans concentrated their mental efforts on surviving the hardships of massive destruction by the Allied bombing and of mass expulsion of millions of Germans from the eastern parts of the country.

The mental structure of the Cold War helped the Germans to hide their historical involvement in the Nazi-crimes. In the framework of a theory of totalitarianism they could again –in an intellectually rather attractive way - exterritorialize these crimes into the realm of communism. The East German state did the same by attributing Nazism to capitalism, thus transferring the whole blame of the recent German past to West Germany. The official ideology of anti-fascism

rendered the East-Germans innocent.

Under the veil of concealment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was transferred to the next generation. Indeed, this generation accepted its responsibility and changed the historical culture of concealment into a highly moralizing attitude towards the recent German past. By moralization self-affirmation was gained. Doing so the young Germans referred to the principles of a universalistic morality, and they inscribed these principles into the fundamentals of the historical and, of course, the political culture of West Germany. At the same time they pushed the German past into a fundamental distance from themselves defining their historical identity by this distance and by an identification with the victims.

The Holocaust memorial in Berlin is a speaking symbol for this taking over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the Nazi past and it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for identifying with the victims.

However, there remained the unsolved problem of this generation. It was the question of how to mediate their genealogical connection, their being a part of German history, which critically kept the past in distance.

The third generation had to find an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answer has characterized the historical culture of Germany ever since the late 80s up to our days. It can be addressed by the category of historization.

Historization does not mean that the burdening past is losing its threatening challenge to the cultural orientation of the Germans in the realm of historical memory. On the contrary: the power of the memory of the Nazi-crimes has increased with the temporal distance to its occurrence. The German nation of today is an outcome of the history which includes the Nazi barbarism and - now after unification also the inhumanity of the communist system - the Germans are now trying to

re-integrate the past hitherto kept in distance from their identity into it. By doing so they have not given up the moral standards which have been inscribed into the fundamentals of their historical and political culture.

This process of re-integrating the burdening past into the historical frame of cultural orientation is still going on, and the end of it is still open. Nevertheless, some features of this new German historical culture have already become visible. Its main characteristics are a growing heterogeneity and ambivalence of the historical features which define German identity. The dark parts, the shadow of inhumanity are being integrated into a highly complex historical self-understanding. The spatial proximity of the Holocaust memorial to the monuments of other and older German history in the centre of Berlin signifies this new ambivalence.

It is in this new pledge for ambivalence that the German historical culture now can integrate historical experiences which had been excluded in favour of a clear moral judgement. Since the late 80s the Germans felt able to say "we" meaning the perpetrators and they could thematize their own victimization and their suffering in and after the war at the same time. The Allied bombing and the mass expulsion, which did not fit into the morally condemned recent past have now become a part of it. This took place, of course, without blurring the clear lines of responsibility.

#### **4. The significance of the German case**

Has the described German case any paradigmatic significance for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culture in other countries? There is some evidence for a positive answer to this question. We can observe, for instance, that in other European countries similar changes of the structure of collective memory have taken place. Clear distinctions

between the positive view on one's own past in contrast to the negative past of the other peoples (mainly the Germans) are given up in favour of more complex traits of one's own historical self-understanding. In this respect e.g. the collaboration with the German aggressor has got growing attendance. Responsibility to the inhumanity and barbarism of Nazi rule were attributed to a wider range of historical experience than that of Germany. The European dimension of racism and anti-Semitism is systematically taken into account. A higher degree of ambivalence is realized by the insight of the German neighbours into their own involvement in the inhumane ideology and activities culminating in the Holocaust; thus the innocence of one's own people is being blurred.

This growing complexity or heterogeneity and ambivalence seems to become an essential element of the emerging European historical culture which includes and synthesizes the various national and regional historical memories of the European countries and peoples. The distinction between victims and perpetrators has not been given up, but it is gaining more complexity. Perpetrators can be victims at the same time and vice versa.

This tendency is of great importance for overcoming the traditional powerful ethnocentrism in historical culture, which is still prevailing all over the world. The described ambivalence may dissolve the strict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evil, which always occurs when drawing a historical line of definition concerning the image of oneself in difference to the otherness of the others. (Even the widespread moralistic attitude of dividing the world of historical memory into that of perpetrators and victims -- not to speak of the profiteers and bystanders -- is based on the logic of ethnocentrism and its unbalanced distribution of values between the positive self and the less positive or negative otherness of the others.) Allowing the shadow of one's own history a place in the cultural processes of identity building opens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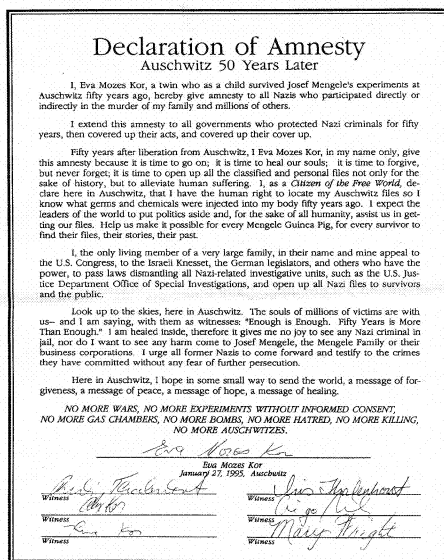
door to a new approach to the otherness of the others beyond the clear mutual exclusion of good and evil. Ambivalence makes it possible to keep up the peculiarity of one's own historical identity and to recognize the peculiarity of the others on the same normative level of being human. The ethnocentric division of peoples, nations, and cultures is overcome by sharing the values of humaneness as well as the potential of inhumanity in every human being.

If this basic humanism is achieved in the fundamentals of historical culture a further step can be done to overcome the lasting compulsion to repeat the struggles and conflicts of the past by the way they are commemorated. This step is the step of forgiving. Forgiving introduces a new power of humanism into the mental activities of forming historical identity.

There are not many examples for this humanizing historical memory. But nevertheless, they exist. Let me mention only three: the first is the remarkable announcement of Eva Kor at the occas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of Auschwitz; here she announced her manifesto of forgiving: "Fifty years after liberation from Auschwitz, I Eva Mozes Kor, in my name only, give this amnesty because it is time to go on; it is time to heal our souls; it is time to forgive; but never forget..."<sup>3)</sup>

---

3) <http://users.abcs.com/candles/amnesty.htm>



This act of forgiving was an act of liberation for herself: "A burden of pain was lifted from my shoulders. I was no longer a victim of Auschwitz. I was no longer a prisoner of my tragic past. I was finally free."<sup>4)</sup>

My second example is the truth-and-reconciliation-commission in South Africa. The black female author Pumla Gbodo-Madizikela has published a book about her experience and engagement in the context of the work of this commission.<sup>5)</sup> This book is a speaking example for the idea and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forgiveness as an element of historical culture.

The third example is a Korean one. I think of a dialogue between a stu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im Dae Jung,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 after the latter had delivered a lecture at Seoul National

4) <http://www.departments.bucknell.edu/pr/releases/Archives%202002/fall%20semester/kor%20talk%2010-28-02.htm>

5) Gobodo-Madizikela, Pumla: A human being died that night. A story of forgiveness. Clarmont: David Philip Publishers 2003

University on 26 September 1997. When he was asked for his relation to those politician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Kwangju* massacre he said : “To be able to reconcile is the most desirable situation. However, even if the offenders do not apologize, the victim can still forgive.”<sup>6)</sup>

With this last example I would like to conclude. The steps from concealment to moralization and from moralization to historization can and should be pursued into the direction of this growth of humaneness in historical culture. We should carry our necessary moral judgement of past events into a mental process of mourning.<sup>7)</sup> By this process the loss of humanity in the past can create a chance of gaining it back in a new way. The chain of atrocities usually binds the past to the present by the compulsive power of repetition., This chain can be broken in coming to terms with the burdening past. Forgiving can liberate us from the burden of the past.

---

6) Han, S.-J. (ed.) 1998. Looking out from the East towards the world: Kim Dae Jung's Lec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ebate on Human Rights. Seoul, 54-58; republished in: Diawara, Mamadou; Lategan, Bernard; Rösen, Jörn (Eds): Memory in Africa. Forthcoming New York: Berghahn Books 2009.

7) Cf. Rösen, Jörn: Trauma and Mourning in Historical Thinking, i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History and Archeology, vol. 1, no. 1, Summer 2004, pp. 10-2

# 어떻게 부담스러운 과거와 대면할 것인가? - 독일의 사례

Jörn Rüsen (Kulturwissenschaftliches Institut)

## 1. 도전

역사(history)란 한 인간, 사회집단, 국민, 민족, 전체 문화가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논의하는 매체이다. 정체성(identity)은 인간의 주관 속에서 형성되는 자기연관(self-relationship)으로서,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종합한다. 정체성은 인간들이 자신의 독특성과 타자와의 차이를 표현하는 *temporal face*이다. 생동적인 역사적 정체성을 산출하려면 과거를 재현할 때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험들을 포함해야만 한다. 정체성은 언제나 강력한 자기 확신의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제시해주는 역사는 항상 수많은 자기 이미지의 긍정적 측면들 속에서 구성된다. 이 초보적 형태의 정체성은 아래에 인용된 연재만화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림 1. 연재만화>

- “월요일 아침에 일한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저 불쌍한 얼굴이들 좀 봐.”
- “하하하. 이 불쌍한 얼굴이들아. 너희들은 일하러가야 하지만,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나는 고양이니까.’”
- “만약에 내가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나를 이처럼 좋아하지 않겠지.”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는 인간의 삶을 교란하고, 정신적 질병, 고통, 자기 파괴의 원천이 된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들은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도전(challenge)이 된다.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역사문화

안에서 긍정적 자기 연관에 대한 필요와 충돌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순과 씨름해야 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생활을 전망할 때 자신의 과거를 대범하게 참조하도록 고무할 수 있는 역사적 감각을 갖춘 세대의 정신적 전략을 발전시켜왔다.

## 2. 가능한 답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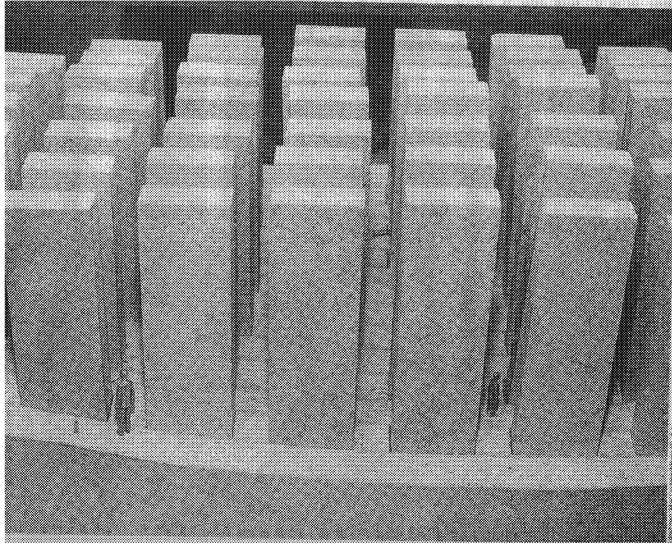
과거 속에는 부정적 요소들과 대면해야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담겨있다. 이 가능성은 과거에 대한 완전히 상이한 두 개의 접근방법으로 범주화될 수 (rejecting)있다. 첫째 방법은 부정적 과거에 대한 거부이다. 이것은 곧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역사문화 속에 부정적 과거가 자리 잡을 여지를 아예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방법은 부정적 과거의 수용(accepting)이다. 이것은 곧 자신의 역사적 이미지 속에 부정적 과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자리를 할애하는 것이다.

첫째 경우를 살펴보자. 거부는 억압(suppression), 은폐(concealment), 치외법권화(exterritorialization), 상대화(relativization), 역사적 의미의 변화(chang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상대화는 동일한 역사 안에서 긍정적 과거사를 강조함으로써 부정적 사건들의 역사적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치외법권화란 도전적인 역사적 사건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역사 영역에 할당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역사 바깥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도전적인 역사의 의미란 과거의 부담스러운 부정적 성격이 사라지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긍정적 사건으로 전회시키는 방식으로 부담스러운 과거사를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하면 가해자가 희생자로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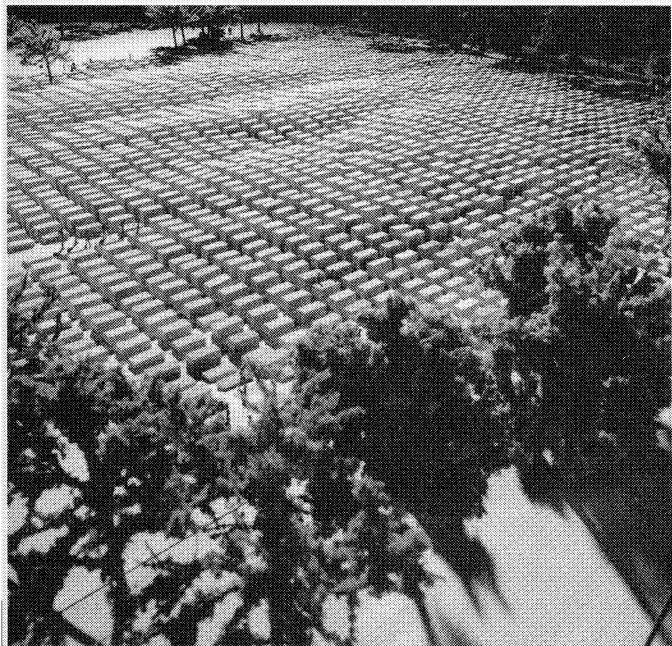
둘째 경우를 보자. 부담스러운 과거는 도덕적 정죄를 통해 수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정죄를 지배하는 가치들이 자기 이미지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부정적 사건들을 자기 자신의 역사에 통합함으로써, 자기 역사에 양가적 성격(ambivalence)과 이질적 성격(heterogeneity)을 띤 요소들을 부과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가장 정교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 3. 독일의 사례

내가 아는 한, 독일 국민은 자신들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기념물을 세운 유일한 국민이다. 1999년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살해된 유럽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물(monument for the murdered Jews in Europe)”의 조성을 결정하였다. 이 기념물은 2005년 5월에 완공되었다.



<그림 2. 페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과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가 설계한 최초의 베를린 홀로코스트 상기기념물>



*Peter Eisenman, revised design, Memorial for the Murdered Jews of Europe, 1998.*

<그림 3. 그 후에 페터 아이젠만이 설계한 베를린 홀로코스트 상기기념물><sup>1)</sup>

1) James E. Young, *At Memory's Edge. After-Images of the Holocaust in Contemporary Art*



<그림 4. 베를린 홀로코스트 상기기념물, 세부 모습><sup>2)</sup>

이 기념물의 조성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구 역사문화의 역사에서 보면 유일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이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인들이 처한 특수 상황을 초월하는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유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독특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이 기념물이 하나의 일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기념물이 가리키는 것은 독일인들이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 홀로코스트 기억만이 아니다. 이 기념물은 역사적 기억 논리의 일반적 전환을 천명하고 있다. 이 기념물은 서구 국가들만이 아니라 비서구 국가들까지도 마찬가지로 독일 사례에 흥미를 갖고 논의할 가치가 있도록 만든 하나의 전환적 사건이다. 독일에서 진행되었던 역사문화의 발전 사례는 “부담스러운 과거와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모든 장소, 모든 상황에서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상이한 정신적 전략들이 독일의 사례에서 관찰될 수 있다. 나는 이념형들을 구성하고 이 이념형들을 전후(戰後) 독일 역사에서 세 개의 서로 다른 세대와 연결지어, 이 상이한 전략들에 시간적 질서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하의 논증에서는 주로 서독의 사례에 국한하여 언급할 것이다.)

첫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나치 치하에서 살았고, 전후에는 파괴된 나라를 재건

*and Architecture*(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 213.

2)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AZ), Nr. 159(2004년 7월 12일), p. 29.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다. 이 세대가 나치 범죄들에 관한 기억을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하였다. 증거 자체가 너무 강력했고, 독일을 점령한 승전국들도 재교육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독일인들을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만행과 대면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치 과거에 대해 이 세대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보인 반응은 은폐였다.

새로운 민주주의적 독일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처형되거나 투옥되었던 저명한 대표적 인물들을 제외하고 나면 나치 체제를 장악했던 엘리트에 관해 언급하는 것 이외의 대안이 있을 수 없었다. 이 엘리트들이 나치체제에 연루되었던 점은 (전쟁 직후 몇 년 동안 독일 국민들을 탈나치화시키기 위한 미약한 시도들을 제외하면) 전후 독일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지 않았다. 몇몇 경우에는 전쟁 동안과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인들이 겪었던 고통이 독일인들을 희생자로 묘사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나치 범죄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나치 범죄에 대한 독일인의 책임이 치외법권화되었다는 점이다. 정상적이고 평범한 독일인들은 나치 지도부와 분리되었다. 정상적이고 평범한 독일인들은 이 이질적 분자들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다. 독일인들은 연합군 폭격에 의한 대량 파괴와 동유럽 지역에서 대량으로 추방된 수백 만 명이 겪은 고난을 이겨내고 생존하는 데 정신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냉전의 정신적 구조는 독일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나치 범죄와 역사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도록 도와주었다. 전체주의 이론의 틀 속에서 독일인들은 다시 지적인 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방식으로 이 범죄들을 공산주의 영역에 전가함으로써 치외법권화할 수 있었다. 동독은 나치즘의 원인을 자본주의로 돌리고, 그리하여 독일의 최근 과거사에 담겨있는 모든 죄과를 서독에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였다. 공식적인 반파시즘 이데올로기는 동독인들을 순결한 존재로 만들었다.

은폐의 장막 아래서 책임의 중압감은 다음 세대로 전승되었다. 실로 이 세대는 자기 책임을 수용하고 은폐의 역사문화를 독일의 최근 과거사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도덕적 태도로 변화시켰다. 도덕화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은 자기 확신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젊은 독일인들은 보편주의적인 도덕성의 원리들에 관해 언급하고, 이 원리들을 서독의 역사문화는 물론 정치문화의 토대에까지 각인시켰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과 독일의 과거 사이에 현저한 거리를 두었으며, 그들의 정체성은 이렇게 현저한 거리감과 더불어 희생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방식을 통해 규정되었다.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상기기념물은 나치 과거와 나치 체제 하에서 자행된 반인도범죄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더불어 희생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역사적 책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드러내주는 상징이다. 그

렇지만 이 세대에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이 남아있다. 그것은 곧 그들의 계보적 연결 관계를 어떻게 중재하고, 그들의 존재를 독일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 세대는 과거사에 대해 거리를 두고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세 번째 세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하였다. 이 해답이야말로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독일의 역사문화를 특징짓는다. 이러한 특징은 역사화(historization)라는 범주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

역사화가 역사적 기억의 영역에서 독일인들의 문화적 지향에 부담스러운 과거가 가했던 위협적 도전의 힘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와는 정 반대로 나치 범죄에 대한 기억의 힘은 그 범위가 발생했던 시점과 멀어질수록 증가하였다. 오늘날 독일 국민은 나치의 야만적 행위는 물론 통일 이후인 지금에 와서는 공산주의 체제의 반인도성까지 포함하는 역사의 산물이므로, 독일인들은 이제 지금까지 거리를 두어왔던 과거사를 다시 자신들의 정체성 속에 재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문화와 정치문화의 토대에 각인되어 온 도덕적 표준을 포기하지 않았다.

부담스러운 과거를 문화적 지향의 역사적 틀 속에 다시 통합하는 이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끝은 아직도 열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새로운 독일의 역사문화에 담겨있는 몇 가지 특징은 이미 가시화되었다. 그 주요한 특징은 독일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역사적 특성들 속에 담겨있는 이질성과 양가성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어두운 부분들, 즉 비인간성의 그림자는 매우 복잡한 역사적 자기이해 속에 통합되고 있다. 홀로코스트 상기기념물이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한 좀 더 오래된 여타 독일사의 기념물들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 야말로 이 새로운 양가적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양가성에 대한 이 새로운 보증 속에는 독일의 역사문화가 이제 명백한 도덕적 판단을 선호하는 가운데 배제했던 역사적 경험들을 통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담겨있다. 1980년대 후반 이래로 독일인들은 “우리”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전쟁 기간과 그 후에 그들 자신이 겪었던 희생과 고난을 논의의 주제로 삼을 수 있었다. 연합군의 공습과 (동유럽 지역에 거주했던 독일인들의) 대량 추방이 예전에는 도덕적으로 정죄된 최근의 과거사에 어울리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 일부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일은 명확한 책임의 선을 모호하게 만들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 4. 독일 사례의 중요성

이제껏 다른 독일의 사례가 다른 나라들의 역사문화 발전에 패러다임적인 의

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몇 개의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집단기억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란 자신의 역사적 자기 이해(self-understanding) 속에 담겨있는 좀 더 복잡한 특성에 주목하기 위해 다른 민족들(주로 독일인들)의 부정적 과거와 대비시키면서 자기 국민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명백하게 차이를 강조하는 태도를 포기함을 뜻한다. 이 점에서 보자면, 예컨대 독일 침략자들에 대한 부역행위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나치 지배의 비인도성과 야만성에 대한 책임은 독일의 역사적 경험보다 더 폭넓은 범위의 역사적 경험에 귀속되고 있다. 유럽 차원의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가 체계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 주변 국가들이 홀로코스트 기간에 극에 달했던 비인간적 이데올로기와 활동에 관여했던 사실을 통찰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양가성이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자기 민족의 결백성은 점차 훼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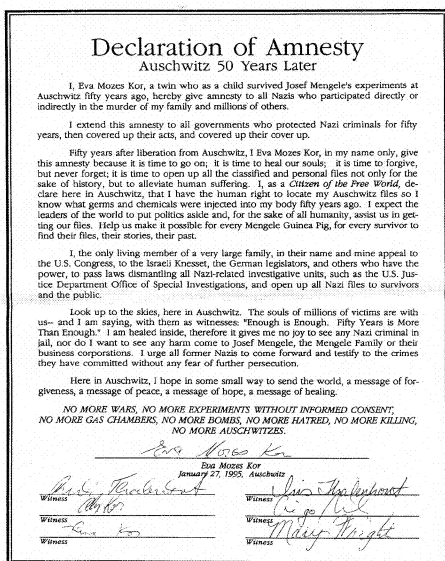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질성과 양가성이야말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민족들의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역사적 기억들을 아우르고 종합하는 유럽 역사문화가 출현하는 데 있어 본질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와 가해자의 구분 자체가 포기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다. 가해자가 동시에 희생자가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역사문화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또 아직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말한 양가성은 선악 간의 명확한 구분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언제나 타자의 타자성과 대비되는 자기 이미지와 관련하여 명확한 역사적 규정의 선을 그을 때 일어난다. (역사적 기억의 세계를 수혜자-방관자의 세계나 가해자-희생자의 세계로 양분하는, 널리 퍼져있는 도덕주의적 태도는 자민족중심주의와 더불어 긍정적인 자신과 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타자의 타자성 사이에서 균형 없이 가치를 배분하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과정에 자기 역사의 그림자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함으로써 선악 간의 명백한 상호배제를 넘어 타자의 타자성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 양가성은 자기 역사적 정체성의 특수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일한 인간의 규범적 수준에서 타자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여러 민족, 국민, 문화에 대한 자민족중심주의적 구분은 인간다움의 가치와 모든 인간 속에 담겨있는 잠재적 성격의 비인간성을 공유함으로써 극복되고 있다.

이 근원적 휴머니즘(basic humanism)이 역사문화의 토대 속에서 성취된다면, 기념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거의 투쟁과 갈등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지속

적 강압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가 용서(forgiving)의 단계이다. 용서는 역사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정신적 활동 속에 휴머니즘의 새로운 힘을 도입한다.

이처럼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역사적 기억의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례들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사례만 언급하도록 하자. 첫째 사례는 아우슈비츠 해방 50주년을 맞아 에바 코어(Eva Kor)가 했던 주목할 만한 언사이다. 여기에서 그녀는 용서에 관한 자신의 테제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아우슈비츠에서 해방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 나 에바 모세스 코어(Eva Moses Kor)는 오직 나의 이름으로 이 사면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야 할 시간이며, 용서해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sup>3)</sup>



이 용서의 행동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였다. “나의 어깨에서 고통의 짐이 치워졌다. 나는 더 이상 아우슈비츠의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비극적인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다. 마침내 나는 자유를 얻었다.”<sup>4)</sup>

내가 말하는 두 번째 사례는 남아프리카의 진실화해위원회(the truth-and-reconciliation-commission)이다. 흑인 여성작가인 풀라 그보도-마디지 켈라(Pumla Gbodo-Madizikela)는 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던 자신의 경험을 담

3) <http://users.abcs.com/candles/amnesty.htm>

4) <http://www.departments.bucknell.edu/pr/releases/Archives%202002/fall%20semester/kor%20talk%2010-28-02.htm>

아 한 권의 책을 출간하였다.<sup>5)</sup> 이 책은 역사문화의 한 요소로서 용서가 갖고 있는 이념과 실천적 의미를 보여주는 웅변적 사례이다.

세 번째 사례는 한국의 경우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학생 한 명과 한국의 전직 대통령 김대중과의 대화이다. 이 대화는 1997년 9월 26일 서울대학교에서 김대중이 강연을 마친 후에 마련된 질문과 답변 시간에 이루어졌다. 김대중은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과 자신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하였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화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희생자는 용서할 수 있다.”<sup>6)</sup>

이 마지막 사례를 들면서 나는 결론을 맺고 싶다. 은폐에서 도덕화로, 도덕화에서 역사화로 나아가는 단계는 역사문화 속에서 이렇게 인감다움이 자라가는 방향으로 추구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추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필요한 수준의 과거사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애도의 정신적 과정에까지 깊어지고 가야 한다.<sup>7)</sup> 이 과정을 통해 과거에 상실된 인간성이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만행의 사슬은 늘 되풀이되는 강력한 힘을 통해 과거를 현재와 결속시킨다. 이 사슬은 부담스러운 과거와 대면할 때에 비로소 끊을 수 있다. 우리를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용서이다.

---

5) Gobodo-Madikizela, Pumla: A human being died that night. A story of forgiveness. Clarmont: David Philip Publishers 2003

6) S.-J. Han(ed.), *Looking out from the East towards the World: Kim Dae Jung's Lec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ebate on Human Rights*(Seoul 1998), pp. 54-58. 이 글은 다음 책에 재수록되었다. Mamadou Diawara, Bernard Latagan, HJörn Rüsen(eds.), *Memory in Africa*. Forthcoming New York: Berghahn Books 2009.

7) Jörn Rüsen, “Trauma und Mourning in Historical Thinking”,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History and Archeology*, Vol. 1, No. 1(Summer 2004), pp. 10-12를 참조하라.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는 함께 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한 국 제 노 사 이 드 연 구 회

(<http://www.genocide.co.kr>)

서울 용산구 후암동 445-8번지 3층 (140-190) 전화 : 02-773-6158  
문의 : 홍순권(회장) 016-525-1054, 최호근(운영위원장) 011-205-4568  
한정숙(편집위원장) 02-880-6200, 김학재(총무간사)010-4590-1871

회비/후원금 입금 계좌

국민은행 760701-04-182430 김학재(제노사이드연구회)  
(일반회원 5만원, 학생 3만원)